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6. 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의안검토보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9호 및 제10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자	서초구청장(재무과)	제출연월일	2026. 7. 24.
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민희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및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세입·세출결산

(1) 일반회계

- 세입 결산액	1,208,810백만원
- 세출 결산액	1,085,085백만원
- 결산상잉여금	123,725백만원

결산상잉여금 123,725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액 25,875백만원, 사고이월액 11,620백만원, 계속비이월액 8,266백만원 등 이월사업비 45,760백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3,219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4,746백만원임.

(2) 특별회계

- 세입 결산액	62,289백만원
- 세출 결산액	25,249백만원
- 결산상잉여금	37,040백만원

결산상잉여금 37,040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액 555백만원, 사고이월액 110백만원, 계속비이월액 26,816백만원 등 이월사업비 27,482백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47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11백만원임.

나. 기금결산

2025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345,913백만원으로 2024년말에 비하여 63,58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9개 기금(계정포함)의 종류 및 현재액 내역은 아래와 같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38,621백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631백만원
- 문화예술진흥기금	2,363백만원
- 고향사랑기금	205백만원
-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2,087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2,743백만원
-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	300백만원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1,194백만원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060백만원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665백만원
- 보육기금	1,201백만원
- 양성평등기금	2,641백만원
-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731백만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29,049백만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2,280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15,779백만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13,060백만원
- 청사건립기금	128,920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1,383백만원

다. 예비비지출

(1) 일반회계의 예비비집행현황은

- 예비비예산액	4,999백만원
- 지출결정액	1,654백만원
- 지출액	1,197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390백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66백만원이며
그 사용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등 총 11건임.	

(2) 특별회계의 예비비집행현황은

- 예비비예산액	378백만원
- 지출결정액	0원
- 지출액	0원
- 다음연도 이월액	0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0원

라. 재무제표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제12조·13조·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함.

(1) 재무제표의 구성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보충정보
- 부속명세서
- 첨부서류(채권현재액 보고서)

(2) 재무제표의 주요내용

○ 재정상태표

- 총 자산 :	5,995,764백만원
- 총 부채 :	38,172백만원
- 순 자산 :	5,957,593백만원

○ 재정운영표

- 총 비용 :	987,512백만원
- 총 수익 :	1,009,357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	(21,845)백만원

○ 순자산 변동표

- 기초 순자산 :	5,891,368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	(21,845)백만원
- 순자산 증가 :	66,814백만원
- 순자산 감소 :	22,435백만원
- 기말 순자산 :	5,957,593백만원

마. 성과보고서

○ 성과지표 달성현황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6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5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달성 22개, 달성 119개, 미달성 13개로 달성률 91.6%임.

바. 채권의 결산

2025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5,927백만원으로서 2024년말에 비하여 2,96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현재액 내역은

- 일반회계	8,173백만원
- 특별회계	278백만원
- 기 금	17,476백만원

사. 채무의 결산

2025회계연도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음.

3. 따로붙임

-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감사의견서 각 1부. 끝.

II. 검토사항

결 산 총 괄

1. 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결산상 잉여금
	예산현액	결산액	비율	예산현액	결산액	비율	
합 계	1,246,232,331	1,271,098,947	102%	1,246,232,331	1,110,333,076	89%	160,765,871
일반회계	1,183,057,151	1,208,810,185	102%	1,183,057,151	1,085,084,502	92%	123,725,683
특별회계	63,175,180	62,288,762	99%	63,175,180	25,248,574	40%	37,040,188

-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예산액 1조 1,471억 2,053만 4천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991억 1,179만 7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2,462억 3,233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930억 9,898만 5천원(8.1%)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1,830억 5,715만 1천원, 특별회계는 631억 7,518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1조 2,710억 9,894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02%이며, 전년대비 1,991억 4,128만 4천원(18.6%)이 증가했음.
- 세출결산액은 1조 1,103억 3,307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207억 7,291만 8천원(24.8%)이 증가했고, 예산현액의 89%를 집행하였음.
-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세출 결산의 차감액으로 총 1,607억 6,587만 1천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12.6%이며, 2024년보다 216억 3,163만 3천원 감소함.
-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264억 3,019만 7천원, 사고이월 117억 2,982만원, 계속비이월 350억 8,183만 4천원, (국·시·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132억 6,664만 1천원을 공제한 742억 5,737만 9천원이며, 2024년도 705억 2,340만 5천원 보다 37억 3,397만 4천원 (5.3%) 증가함.

※ 2025회계연도 결산서 I 21~34쪽, 결산검사의견서 8쪽, 결산서 첨부서류 7쪽

2.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정리 보류액 (라)	미수납액 (마=나-다-라)	진도율 (%) (다/가)	징수율 (%) (다/나)
계	1,246,232,331	1,334,055,766	1,271,098,947	5,380,851	57,575,967	102.0	95.3
일반회계	1,183,057,151	1,246,904,596	1,208,810,185	3,307,891	34,786,519	102.2	96.9
지방세수입	350,881,655	361,905,040	354,477,188	517,171	6,910,681	101.0	97.9
세외수입	193,457,526	249,295,115	218,629,476	2,790,720	27,874,919	113.0	87.7
지방교부세	12,340,000	16,275,881	16,275,881	-	-	131.9	100.0
조정교부금등	35,448,990	36,195,553	36,195,553	-	-	102.1	100.0
보조금	398,718,819	393,465,219	393,465,219	-	-	98.7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2,210,161	189,767,788	189,766,868	-	919	98.7	100.0
특별회계	63,175,180	87,151,170	62,288,762	2,072,960	22,789,448	98.6	71.5
세외수입	19,084,981	43,096,123	18,233,715	2,072,960	22,789,448	95.5	42.3
보조금	514,003	478,903	478,903	-	-	93.2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3,576,196	43,576,144	43,576,144	-	-	100.0	100.0

○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조 1,830억 5,715만 1천원과 특별회계 631억 7,518만원을 합한 1조 2,462억 3,233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930억 9,898만 5천원(8.1%)이 증가함.

○ 실제 수납액은 1조 2,710억 9,894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8억 6,661만 6천원을 초과 수납하여 진도율은 102.0%로 전년도(93.0%)보다 9.0%p 높아졌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629억 5,681만 8천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95.3%로 전년도(93.0%)보다 2.3%p 높아짐.

○ 정리보류액은 53억 8,085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4%이며, 전년 대비 9억 7,707만 9천원이 감소함.

정리보류 사유

■ 소멸시효완성	40억 4,455만 5천원(75.2%)	■ 체납처분중지	6억 6,179만 7천원(12.3%)
■ 무재산	5억 1,905만 9천원(9.6%)	■ 평가액 부족	1억 3,626만 1천원(2.5%)
■ 기 타	1,235만 8천원(0.2%)	■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	682만 1천원(0.1%)
■ 행방불명	0천원(0.0%)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5~19쪽 참고

○ 세입금 미수납액은 575억 7,596만 7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4.3%이며, 전년 대비 △165억 3,694만 7천원 감소함.

미수납 사유

■ 납세태만	283억 9,267만 6천원(49.3%)	■ 폐업또는부도	96억 3,005만 1천원(16.7%)
■ 자금압박	89억 5,269만 9천원(15.5%)	■ 무재산	93억 1,415만 3천원(16.2%)
■ 행방불명	8억 9,398만 8천원(1.6%)	■ 소송계류	351만 5천원(0.01%)
■ 국외이주	1억 1,488만 1천원(0.2%)	■ 기타	3,990만 1천원(0.1%)
■ 납기미도래	1억 8,293만 1천원(0.3%)	■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5,142만 9천원(0.1%)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1~28쪽 참고

3. 세출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마=가-나- 다-라)	불용률 (%)
			계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계	1,246,232,331	1,110,333,076	73,241,851	26,430,197	11,729,820	35,081,834	13,247,859	49,409,545	4.0
일반 회계	1,183,057,151	1,085,084,502	45,760,107	25,874,897	11,619,587	8,265,623	13,200,361	39,012,181	3.3
특별 회계	63,175,180	25,248,574	27,481,744	555,300	110,233	26,816,211	47,498	10,397,364	16.5

○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9.1%이고, 지출액은 1조 1,103억 3,307만 6천원으로 2024년도 집행률 77.1%보다 12.0%p 증가함.

- 회계별 집행률은 일반회계가 91.7%, 특별회계는 40.0%이며, 2024년도 보다 일반회계는 11.8%p, 특별회계는 15.2%p 증가함.

집행률 변동			
(%)			
구분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5회계연도	89.1	91.7	40.0
2024회계연도	77.1	79.9	24.8
2023회계연도	80.4	82.6	49.1

○ 다음연도 이월액은 732억 4,185만 1천원으로 2024년 991억 1,179만 7천원보다 △258억 6,994만 6천원 감소함.

- 명시이월은 264억 3,019만 7천원, 사고이월은 117억 2,982만원, 계속비이월은 350억 8,183만 4천원임.

○ 집행잔액(불용액)은 494억 954만 5천원이며 불용률은 4.0%로 전년도(13.2%) 대비 △9.2%p 감소함.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90억 1,218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3%이며, 전년도(12.5%) 대비 △9.2%p 감소함.
-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03억 9,736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6.5%이며, 전년도(24.6%) 대비 △8.1%p 감소함.

집행잔액 원인

- 보조금 정산잔액: 62억 277만 4천원
(일반회계 61억 2,234만 8천원, 특별회계 8,042만 6천원)
- 예산절감액: 30억 9,164만 8천원
(일반회계 28억 9,779만 7천원, 특별회계 1억 9,385만 1천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6억 4,186만 6천원
(일반회계 86억 4,186만 6천원, 특별회계 없음)
- 낙찰차액: 40억 7,021만 9천원
(일반회계 36억 3,849만 8천원, 특별회계 4억 3,172만 1천원)
- 지출잔액: 236억 7,925만원
(일반회계 143억 6,606만 5천원, 특별회계 93억 1,318만 5천원)
- 예비비: 37억 2,378만 7천원
(일반회계 33억 4,560만 6천원, 특별회계 3억 7,818만 1천원)

※ 2025회계연도 결산서 I 29, 117~234쪽(일반회계), 252~269쪽(특별회계) 참고

4. 예비비 집행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지출잔액
계	5,377,306	1,653,519	1,197,417	390,000	66,102
일반회계	4,999,125	1,653,519	1,197,417	390,000	66,102
일반예비비	4,599,125	1,653,519	1,197,417	390,000	66,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00,000	-	-	-	-
특별회계	378,181	-	-	-	-
건축안전특별회계	278,181	-	-	-	-
일반예비비	11,351	-	-	-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66,830	-	-	-	-
주차장특별회계	100,000	-	-	-	-
일반예비비	100,000	-	-	-	-

○ 예비비 예산액은 53억 7,730만 6천원으로

- 일반회계 예비비 49억 9,912만 5천원 중 총 11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8건) 16억 5,351만 9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 9,741만 7천원을 지출하고 6,610만 2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3억 7,818만 1천원 중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지출잔액은 0원임.

※ 2025회계연도 결산서 I 285~288쪽 참고

5.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

○ 예산의 이용은 총 4건 31억 7,664만 3천원

- 일반회계 4건 31억 7,664만 3천원, 특별회계 0건

○ 예산의 전용은 총 44건 14억 3,102만원

- 일반회계 41건 13억 6,630만 3천원, 특별회계 3건 6,471만 7천원

○ 예산의 이체는 총 52건 163억 3,482만 7천원

- 일반회계 52건 163억 3,482만 7천원, 특별회계 0건

※ 2025회계연도 결산서 I 271~284쪽 참고

6. 계속사업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소관부서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다)	집행잔액 (라=가-나-다)
계	10건	64,355,791	26,174,701	35,081,834	3,099,255
일반회계	6건	25,933,580	14,568,824	8,265,623	3,099,132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자치행정과	845,958	86,000	759,958	-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	체육진흥과	3,581,997	-	2,109,500	1,472,497
우면주민편의시설 건립	어르신행복과	13,927,545	12,900,910	-	1,026,635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	어르신행복과	4,678,080	-	4,678,080	-
GTX-C 양재정거장 환승코어 조성	공공인프라과	2,300,000	1,581,914	718,085	-
내곡보건지소 건립	건강정책과	600,000	-	-	600,000
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	4건	38,422,211	11,605,877	26,816,211	123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주차관리과	14,850,964	7,099,123	7,751,769	71
구룡공영주차장 신축	주차관리과	18,562,034	3,359,376	15,202,607	52
구룡 공영주차장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주차관리과	632,892	609,382	23,510	-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주차관리과	4,376,321	537,996	3,838,325	-

○ 2025년도 계속사업비는 총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643억 5,579만 1천원 중에서 261억 7,470만 1천원을 지출하고 350억 8,183만 4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됨.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83~99쪽 참고

7. 기금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282,330,016	63,583,137	118,741,200	55,158,063	345,913,15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		72,786,908	65,833,617	87,308,151	21,474,534	138,620,52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		4,854,893	△3,224,259	75,741	3,300,000	1,630,634
문화예술진흥기금		4,878,833	△2,515,498	1,631,302	4,146,800	2,363,334
고향사랑기금		161,517	43,623	89,926	46,303	205,139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1,405,913	681,435	1,385,447	704,012	2,087,348
중소기업육성기금		4,776,305	△2,033,084	6,225,836	8,258,920	2,743,221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	306,257	△5,797	11,100	16,897	300,460
	자활계정	1,201,641	△7,762	42,238	50,000	1,193,879
	장애인복지계정	1,129,746	△69,721	42,809	112,530	1,060,026
	노인복지계정	705,583	△40,168	26,220	66,388	665,416
보육기금		2,828,079	△1,627,566	2,189,095	3,816,661	1,200,512
양성평등기금		2,789,220	△148,231	99,938	248,169	2,640,988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692,696	38,109	59,739	21,630	730,80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27,967,985	1,081,051	1,081,051	-	29,049,037
옥외광고발전기금		2,128,139	151,499	896,779	745,280	2,279,638
재난관리기금		14,324,938	1,454,529	3,955,248	2,500,719	15,779,466
도로굴착복구기금		13,795,345	△735,129	8,597,130	9,332,259	13,060,217
청사건립기금		124,126,292	4,793,476	4,793,476	-	128,919,768
식품진흥기금		1,469,726	△86,987	229,974	316,961	1,382,740

○ 2025년도 현재 총 19종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2,823억 3,001만 6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187억 4,120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551억 5,806만 3천원을 공제한 **3,459억 1,315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35억 8,313만 7천원이 증가함.

※ 2025회계연도 결산서 I 293~361쪽 참고

8.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 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재 운영결과	
2025년	5,995,764	38,172	5,957,593	987,512	1,009,357	(21,845)	
2024년	5,924,075	32,706	5,891,368	872,118	830,821	41,297	
증 감	71,689	5,466	66,225	115,394	178,536	63,142	

○ 순자산이 5,957,59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6,225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12% 개선되었으며,

· 총자산은 5,995,764백만원이고 전년대비 71,689백만원(1.21%) 증가

· 총부채는 38,17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466백만원(16.71%) 증가

○ 재정운영결과¹⁾(총비용-총수익)는 (21,84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3,142백만원 감소하였음.

※ 재정운영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투입된 원가보다 수익이 초과함을 표시

○ 재정 상태로는

- 총 자산 5조 9,957억 6천 4백만원 중에서 유동자산이 8.83%인 5,295억 2천 4백만원, 유동자산을 제외한 투자자산 등 비유동자산은 91.17%로 5조 4,662억 4천만원이고,

- 총 부채 381억 7천 2백만원 중에서 유동부채는 53.20%인 203억 8백만원이고, 기타비유동성부채는 46.80%로 178억 4천 4백만원임.

※ 2025회계연도 결산서Ⅱ 5~15쪽 참고

1)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은 경영성적을 표시하는 지표이지만 정부회계 특히 행정회계에서 재정운영 결과는 유입된 자원에서 사용·소모를 나타내는 자원의 절약이나 선사용의 의미임(재정집행결과 성과물로서 나타나는 잉여금의 의미, 성과판단의 지수는 아님)

9. 채권·채무 결산

가. 채권

-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9억 2,734만 5천원으로 종류별 구성내용은
- 일반회계 : 공무원학자대여금 외 3건 81억 7,295만 9천원
 - 특별회계 : 의료급여부당이득금 2억 7,826만 8천원
 - 기 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2건 174억 7,611만 8천원으로
- 2024년말에 비해 총 29억 6,606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22,961,277	8,727,620	5,761,552	25,927,345
일반회계	8,172,959	140,000	140,000	8,172,959
특별회계	72,690	266,651	61,073	278,268
기 금	14,715,628	8,320,969	5,560,479	17,476,118

나. 채무

- 2025회계연도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음.

※ 2025회계연도 결산서 II 119~127쪽 참고

10. 재산의 총괄

○ 공유재산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5,076,760,722	192,621,636	164,030,310	5,105,352,048
행정 재산	소 계	5,039,163,647	179,331,395	143,027,280	5,075,467,762
	공 용 재 산	913,685,545	1,065,000	15,894,270	898,856,275
	공 공 용 재 산	4,125,436,161	178,266,395	127,133,009	4,176,569,546
	보 존 재 산	41,941	-	-	41,941
일 반 재 산		37,597,075	13,290,241	21,003,030	29,884,286

○ 2025년도 말 공유재산은 총 5조 1,053억 5,204만 8천원 상당의 금액이며, 2024년도 말에 비해 285억 9,132만 5천원 상당이 증가하였음.

- 토 지	2,736건	4,440,261,901천원
- 건 물	181건	549,634,907천원
- 입목축	24,978건	541,353천원
- 공작물	7,270건	112,820,658천원
- 기계기구	1건	9,504천원
- 무체재산	23건	293,725천원
- 유가증권	1건	290,000천원
- 용익물권	10건	1,500,000천원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481~484쪽 참고

○ 물 품

(단위 : 수량-개 / 금액-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수 량	1,796	180	40	1,936
금 액	18,888,153	1,063,602	372,942	19,578,813

○ 2025년도 말 정수물품은 수량 1,936개, 금액 195억 7,881만 3천원으로 2024년도 말 대비 수량은 140개가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6억 9,066만 원이 증가하였음.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485~492쪽 참고

11. 세입 · 세출외 현금의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
		계 (B)=(C-D)	증가액 (C)	지출액 (D)	
합 계	4,638,278	△933,692	29,952,259	30,885,951	3,704,586
보 증 금	36,426	△14,617	-	14,617	21,809
보 관 금	4,442,814	△913,965	29,682,616	30,596,581	3,528,849
잡종금등 기타	159,038	△5,110	269,643	274,753	153,927

○ 2025년도 말 세입 · 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37억 458만 6천원으로 2024년도 말의 46억 3,827만 9천원에 비하여 9억 3,369만 3천원이 감소함.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73~76쪽 참고

12. 금고의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 회 계 별	세입 결산액 ㉔	세출 결산액 ㉕	잔액(금고보관액) (㉔ - ㉕)
합 계	1,271,098,947	1,110,333,076	160,765,871
일 반 회 계	1,208,810,185	1,085,084,502	123,725,683
특 별 회 계	62,288,762	25,248,574	37,040,188
건 축 안 전 특 별 회 계	1,398,541	803,222	595,319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469,690	385,381	84,309
주 차 장 특 별 회 계	60,420,531	24,059,971	36,360,559

○ 서초구 금고(신한은행 서초구청지점)에서 통보된 2025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되었음.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쪽 참고

13. 성인지 결산

(단위 : 개, 천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률
총 계	42	27,871,795	26,381,265	94.65%
일 반 회 계	40	24,625,277	23,447,250	95.22%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 금	2	3,246,518	2,934,015	90.37%

○ 서초구 2025년도 성인지 예산현액은 총 42개 사업 278억 7,179만 5천원으로, 263억 8,126만 5천원을 집행하여 94.65%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을 함양하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사회를 위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강조하였으며, 육아의 사회적 책임강화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 및 대응력 제고와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사업을 중점으로 운영하였음.

○ 사업별로 결산현황은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1개 220억 9,675만 2천원
- 성별영향평가사업 11개 42억 8,451만 3천원 집행함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29~246쪽 참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1. 일반회계 결산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추경반영)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정리보류액 (라)	미수납액 (마=나-다-라)
일반회계	771,124,977	839,749,099	801,973,879	3,307,891	34,467,329
지방세	350,881,655	361,905,040	354,477,188	517,171	6,910,681
세외수입	169,283,734	222,631,299	192,283,930	2,790,720	27,556,648
의존수입	250,959,588	255,212,760	255,212,760	0	0

※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를 합산한 금액임

○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액(실제수납액)은

801,973,879천원으로 징수율 95.5%임

(1) 지방세 수입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환급액	실제수납액 (다)	미수납액 처리		비율 (%)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부과율 (나/가)	진도율 (다/가)	징수율 (다/나)
계	350,881,655	361,905,040	538,577	354,477,188	517,171	6,910,681	103.1	101.0	97.9
등 록 면허세	45,035,915	44,435,757	282,897	44,234,360	55	201,341	98.7	98.2	99.5
재산세	298,677,740	305,035,850	255,402	302,323,418	346	2,712,085	102.1	101.2	99.1
지 방 소비세	5,700,000	5,564,858	-	5,564,858	-	-	97.6	97.6	100.0
지난연도 수입	1,468,000	6,868,575	278	2,354,551	516,770	3,997,254	467.9	160.4	34.3

- 지방세 결산액(실제수납액)은 354,477,18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9,870,099천원 증가함
- 부과율(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3.1%로 전년도 대비 $\Delta 0.2\%p$ 감소
- 진도율(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01.0%로 전년도 대비 $\Delta 0.3\%p$ 감소
- 징수율(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7.9%로 전년도 대비 $\Delta 0.1\%p$ 감소
 - 등록면허세는 44,234,36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78,693천원 감소함
 - 재산세는 302,323,41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9,714,067천원 증가함
- 과오납 환급액은 538,57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2,924천원 감소하고,
실제수납액 대비 0.15%로 전년도 대비 0.55%p 감소함
- 정리보류액은 517,171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14%이며, 전년도 대비 234,972천원 증가함

정리보류액 발생사유			
■ 무재산	391,051천원	■ 소멸시효완성	98,030천원
■ 기 타	12,358천원	■ 평가액 부족	8,605천원
■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	6,821천원	■ 체납처분중지	306천원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8쪽 참고

※ 정리보류의 법적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²⁾

2)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 :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³⁾

○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은 6,910,68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9%이며, 전년도 대비 367,965천원
증가함

미수납액 발생사유			
■ 납세태만	3,375,298천원	■ 무재산	2,862,861천원
■ 폐업 또는 부도	214,225천원	■ 행방불명	173,718천원
■ 자금압박	154,450천원	■ 국외이주	55,713천원
■ 채무자 회생법에의한유예	51,430천원	■ 납기미도래	22,986천원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4쪽 참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정리보류)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리보류를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3)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2) 세외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비 율 (%)		
						부과율 (나/가)	진도율 (다/가)	징수율 (다/나)
구 전 체	193,457,526	249,295,115	218,629,476	2,790,720	27,874,919	128.9	113.0	87.7
재 정 건 설 위 원 회 소 관	169,283,734	222,631,299	192,283,930	2,790,720	27,556,648	131.5	113.6	86.4
기획재정국	152,153,765	182,506,816	154,123,099	2,790,720	25,592,997	120.0	101.3	84.4
공간혁신국	4,600,001	5,691,526	4,775,716	-	915,809	123.7	103.8	83.9
도시관리국	2,570,637	21,760,394	21,110,412	-	649,982	846.1	821.4	97.0
안전건설국	8,844,810	11,446,293	11,177,202	-	269,091	129.4	126.4	97.6
보 건 소	1,114,521	1,226,270	1,097,501	-	128,769	110.0	98.5	89.5

※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결산액(실제수납액)은 구 전체 세외수입의 87.9% 규모임.

○ 세외수입 결산액(실제수납액)은 구 전체 218,629,476천원 중 87.9%인 192,283,930천원으로 전년도(78,975,286천원) 대비 113,308,644천원 증가

-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진도율)은 113.6%로 전년도(49.7%) 대비 63.9%p 증가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징수율)은 86.4%로 전년도(63.1%) 대비 23.3%p 증가

<최근 3년간 진도율 및 징수율의 변화>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진도율	징수율	진도율	징수율	진도율	징수율
구 전 체	120.9	71.9	100.0	67.3	57.7	69.5
재정건설위원회	129.1	66.8	98.7	61.6	49.7	63.1
기획재정국	141.7	62.6	100.6	57.4	42.1	57.5
도시관리국	91.4	75.5	68.2	62.2	89.7	81.6
안전건설국	102.4	95.2	106.7	94.5	129.8	94.6
보 건 소	82.3	88.2	79.5	87.2	92.0	86.8

※ 2025회계연도는 조직개편에 따라 공간혁신국이 신설되는 등 국별 소관이 변경

○ 정리보류액은 2,790,720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율은 1.3%로 전년도 대비 △1.5%p 감소

○ 미수납액(체납액)은 27,556,64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률은 12.4%로 전년도 대비 △21.7%p 감소

○ 세외수입 체납액 1억원 이상

- (세무관리과) 지난년도수입 25,585,330천원
- (교통행정과)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357,638천원
- (교통행정과)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269,408천원
- (푸른도시과)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172,230천원
- (건축과)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196,366천원
- (공동주택관리과)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430,909천원
- (가로행정과) 도로사용료 114,220천원

(3) 의존 수입(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부과율 (나/가)	진도율 (다/가)	징수율 (다/나)
구 전 체	638,717,970	635,704,441	635,703,521	-	919	99.5	99.5	99.9
재 정 건 설 위 원 회 소 관	250,959,588	255,212,760	255,212,760	-	-	101.7	101.7	100.0
지 방 교 부 세	12,004,000	15,739,881	15,739,881	-	-	131.1	131.1	100.0
조 정 교 부 금 등	30,379,157	31,125,720	31,125,720	-	-	102.5	102.5	100.0
보 조 금	21,091,741	21,074,502	21,074,502	-	-	99.9	99.9	100.0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187,484,690	187,272,657	187,272,657	-	-	99.9	99.9	100.0

○ 지방교부세 결산액(실제수납액)은 15,739,881천원

○ 조정교부금등(실제수납액)은 31,125,720천원

○ 보조금 결산액(실제수납액)은 21,074,502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결산액(실제수납액)은 187,272,657천원으로,
구 전체 의존수입 중 재정건설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40.1%임.

※ 2025회계연도 결산서 I 78~115쪽 참고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마=가-나-다-라)	불용률(%)
구 전 체	1,183,057,151	1,085,084,502	45,760,107	13,200,361	39,012,181	3.3%
재 정 건 설 위 원 회 소 관	304,201,606	263,258,002	28,154,474	1,629,720	11,159,409	3.7%
기획재정국	102,122,556	98,151,968	44,000	5,784	3,920,804	3.8%
공간혁신국	49,396,672	38,877,219	9,179,538	47,320	1,292,595	2.6%
도시관리국	5,624,900	4,615,094	320,821	97,540	591,445	10.5%
안전건설국	94,697,871	73,383,082	18,180,006	47,374	3,087,409	3.3%
보 건 소	52,359,607	48,230,639	430,109	1,431,702	2,267,156	4.3%

○ 세출예산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6.5%로 전년도(60.2%)
보다 26.3%p 증가함.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률

■ 2022년 64.2% ■ 2023년 71.5% ■ 2024년 60.2% ■ 2025년 86.5%

○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281억 5,447만 4천원으로

전년도(353억 59만 9천원)보다 △71억 4,612만 5천원 감소함.

○ **집행잔액(불용액)**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총 111억 5,940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이며, 전년도(28.4%)보다 △24.7%p 감소함.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잔액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보조금 정산잔액	예 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①+②+③ +④+⑤+⑥	①	②	③	④	⑤	⑥
구 전 체	39,012,181	6,122,348	2,897,798	8,641,866	3,638,497	14,366,066	3,345,606
재정건설 위원회 소관	11,159,409	884,139	875,462	971,680	1,146,180	3,936,342	3,345,606
기획재정국	3,920,804	22,529	157,683	3,253	13,326	378,407	3,345,606
공간혁신국	1,292,595	56,229	198,446	78,167	561,454	398,299	-
도시관리국	591,445	37,655	43,922	14,910	14,230	480,728	-
안전건설국	3,087,409	11,984	328,013	666,217	477,487	1,603,707	-
보 건 소	2,267,156	755,742	147,398	209,133	79,683	1,075,201	-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집행잔액 발생원인

■ 보조금 정산잔액	8억 8,413만 9천원	■ 예산절감액	8억 7,546만 2천원
■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9억 7,168만원	■ 낙찰차액	11억 4,618만원
■ 지출잔액	39억 3,634만 2천원	■ 예비비	33억 4,560만 6천원

【집행잔액 1억원이상 또는 불용률 50%이상인 사업 - 27건】

조직 - 세부사업		집행잔액(천원)	불용률(%)
기획재정국 - 3건			
기획예산과(2건)			
예비비		3,345,606	100.0
기본경비		133,904	31.0
세무관리과(1건)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		117,808	20.4
공간혁신국 - 6건			
교통행정과(1건)			
대중교통 환경개선		130,100	11.1
도시계획과(2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운영		16,795	51.0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높이계획 재정비		25,000	100.0
푸른도시과(1건)			
공원유지관리		138,999	1.7
정원여가과(2건)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수목식재 사후관리)		330,939	2.3
하천녹지 유지관리		131,762	6.4
도시관리국 - 2건			
재건축사업과(1건)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		140,846	61.8
부동산정보과(1건)			
주거약자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서비스		5,874	59.3
안전건설국 - 10건			
안전도시과(2건)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144,910	37.0
기본경비		152,947	28.1
가로행정과(2건)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116,028	14.7
효령로(서울고) 지중화 사업		230,991	79.4

조직 - 세부사업		집행잔액(천원)	불용률(%)
도로과(4건)			
	조명시설물 운영관리	229,722	9.8
	제설 대책 업무	180,959	8.7
	인력운영비	152,754	19.8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236,351	96.5
물관리과(2건)			
	악취없는 맑은 서초만들기	104,929	5.9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260,257	1.7
보건소 - 6건			
건강정책과(3건)			
	서초구 선별진료소 유지 관리	8,375	59.3
	금연관리	132,358	20.3
	인력운영비	913,818	5.4
건강관리과(3건)			
	난청 조기진단	6,962	60.5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02,718	3.7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04,594	40.1

다. 예비비 집행

-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1건에 11억 9,741만 7천원이며, 재정 건설위원회 소관은 총 8건에 지출액은 7억 3,666만 4천원으로 기획예산과 2건(3억 2,699만 3천원), 재무과 1건(1억 412만원), 교통행정과 1건(4,503만원), 건강관리과 1건(2억 707만원), 의료지원과 1건(5,345만원)임. 도시계획과와 공공인프라과는 예비비를 지출결정 하였으나 당해연도 집행되지 않았으며, 도시계획과는 3억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지결 정액	지출액	지출사유	지출일
계			1,191,811	736,664		
기획예산과	소송배상금	배상금등	322,991	322,991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24나2055281) 종결과 관련, 지급판결에 대한 배상금 부족 예산 확보	2025-08-29
기획예산과	소송배상금	배상금등	4,003	4,003	우리구를 상대로 하는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확정결정 지급과 관련하여 부족 예산 확보	2025-10-20
재무과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104,121	104,120	일반회계 자금 수급을 위해 구금고 일시차입에 대한 상환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부족 예산 확보	2025-09-26
교통 행정과	교통소통 대책	기타 보상금	45,210	45,030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관련, 근무일수 증가에 따라 부족 예산 확보	2025-12-19
도시 계획과	서초구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공간재구조 화계획 수립	시설비	400,000	-	서초구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이 시급함에 따라 용역에 필요한 부족 예산 확보	
공공 인프라과	상습정체 지역 해소	연구 용역비	54,966	-	위례과천선 내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분석 용역 시행 확보를 위한 부족 예산 확보	
건강 관리과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회 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207,070	207,070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관련, 지원대상 증가로 금년도 미지급된 부족 예산 확보	2025-12-24
의료 지원과	양·한방 진료사업	의료 및 회복비	53,450	53,450	2025년 설 연휴기간 문여는 병의원·약국 지원사업의 시비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분 추가 예산 확보	2025-03-24

라. 세출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

(1) 예산 이용 : 없음

(2) 예산 전용 : 일반회계 총 41건 13억 6,630만 3천원 중에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15건 2억 3,947만 7천원으로,
2024년도 7건에 1억 2,142만 3천원보다 건수는
8건 증가, 전용액은 1억 1,805만 4천원 증가함.

○ 부서별 전용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건수	사	유	금	액
계	-		15건	-		239,477	
1	교통행정과	3건		교통소통대책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증가로 모범운전자 보상금 부족 예산 확보		8,800	
2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관련, 근무일수 증가에 따라 부족 예산 확보		2,400	
3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공공요금 추가 지출을 위한 부족 예산 확보		2,000	
4	공동주택관리과	1건		공공개방시설의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한 부족 예산 확보		22,000	
5	안전도시과	2건		25년 서리풀원두막 동절기 활용(서리풀트리)에 따른 부족 예산 확보		5,050	
6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우려 작업장의 안전시스템 구축이 시급하여 재해예방 물품 구입을 위한 부족 예산 확보		11,198	
7	가로행정과	1건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사업』관련,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부족 예산 확보		5,000	
8	건강관리과	8건		신청자 증가로 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매칭 구비분 부족 예산 확보		96,219	
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관련, 보조금 확정내시 증가로 구비 매칭분 부족 예산 확보		19,833	
10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관련, 보조금 확정내시 증가로 구비 매칭분 부족 예산 확보		4,200	
1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분 예산 확보		13,675	
12				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구비 매칭분 부족 예산 확보		22,751	
1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분 예산 확보		16,325	
14				예방접종 사업에 필요한 무정전 전원장치(ups) 구매를 위한 부족 예산 확보		5,026	
15				서초구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개소 및 운영관련 홍보물품 제작 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부족 예산 확보		5,000	

※ 2025회계연도 결산서 I 273~277쪽 참고

(3) 예산 이체 : 일반회계 총 52건, 163억 3,482만 7천원으로,
모두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이며 202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임.

※ 2025회계연도 결산서 I 280~284쪽 참고

마. 계속사업비

- 2025년도 계속사업비 일반회계 총 6개 사업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2건
으로 예산현액 29억원 중 15억 8,191만 4천원을 지출하고, 7억
1,808만 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원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소관부서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다)	집행잔액 (라=가-나-다)
일반회계	2건	2,900,000	1,581,914	718,086	600,000
GTX-C 양재정거장 환승 코어 조성	공공인프라과	2,300,000	1,581,914	718,086	0
내곡보건지소 건립	건강정책과	600,000	0	0	600,000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83, 85쪽 참고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

(1) 명시이월사업

-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해당
되며, 총 30건 188억 8,264만 7천원으로 2024년도 26건
176억 9,733만 8천원 대비 건수는 4건 증가, 이월액은 11억
8,530만 9천원 증가함.

○ 부서별 내역

(단위 : 천 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30건		41,870,092	26,196,447	19,234,056	18,882,647	
공 공 인프라 (2 건)	공공건축물 리 뉴 얼	시설비	150,000	-	-	150,000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요청 (12월에 다른 연구진 결성 (KD)/한달 이상 소요 예정 등으로 인한 민자적격성 의뢰 비용 청구 발송의 소요기간에 따라 금년 내 KD 적격성조사 수수료 집행 불가
	기부채납 통합 시스템을 통한 미 래 수 요 맞춤형 공공 시설 공급	시설비	365,330	332,463	149,723	140,000	7월 교부로 12개월 진행예정인 용역을 기한 내 완수할 수 없어 명시이월 요구함
푸 른 도 시 과 (2 건)	공 원 유 지 관 리	시설비	5,192,906	4,169,937	3,852,786	1,235,620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이 '25년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
	공 원 유 지 관 리	자산 및 물 품 취 득 비	41,200	21,352	13,703	27,045	정원지원센터 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내부 물품 구매비용 이월
정 원 여 가 과 (4 건)	녹 지 대 ·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수목 식재 사 후 관 리)	시설비	12,150,557	10,153,944	7,312,706	1,750,000	[양재]C 관문녹지 환영의 정원 조성 사업 예산안 의회 제출 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2026년에 추진하고자 함
	양재천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 성	시설비	1,000,000	763,794	296,123	700,000	특별조정교부금이 2025년 6월에 교부된 후, 현장여건을 반영한 설계보완이 10월에 완수되어 연내 공사 추진 불가능
	여의천 휴게 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543,000	492,219	-	543,000	특별조정교부금이 2025년 10월에 교부된 후, 사전 행정절차 추진으로 연내사업 불가함
	꽃모 식재 및 유 지 관 리	사 무 관 리 비	168,600	63,419	63,419	100,000	정원지원센터 개관 지연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이월
재 건 축 사 업 과 (1 건)	주택재건축 공 공 지 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43,385	211,545	121,287	24,313	사비 보조금이 '25.12.22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
도 시 디자인과 (1 건)	공공디자인 인 식 확 산	연 구 용 역 비	150,000	135,200	40,560	105,000	용역기간이 '25.10월~'26.8월까지로 준공기한 미도래
가 로 행정과 (3 건)	강남대로27길 (양재말죽거리근린공원) 지중화 사업	시설비	1,616,237	-	-	1,616,237	한전 본사 지중화사업 승인절차 지연으로 연내 실시설계 및 공사비 납부 불가
	사 임 당 로 (서 이 초) 지중화 사업	시설비	395,000	73,778	73,778	300,000	교통소통대책(서울시) 마련 등 관련 용역 발주가 지연되며 착공 또한 2026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관련 예산 이월
	이 면 도 로 지중화사업 부대공사비	시설비	400,890	102,863	47,699	296,123	한전통신사 실시설계 지연 등의 사유로 지중화 부대공사비 연내집행 불가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도 로 과 (7 건)	관내보도육교 보 행 환 경 개 선 사 업	시설비	880,000	393,840	393,840	480,000	노후된 보도육교 정비를 위한 안전성 등 검토사항을 센트럴시티보도육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후 추진 가능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
	우 면 1 구 립 다 리 승강기 교체	시설비	410,000	-	-	410,000	2025년 특별교부금이 12월 24일에 교부 결정되어 당해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이 어려워 해당 사업 예산의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임
	방배동1555 등 6 필지 도 로 부 지 매 입	시설비	2,321,375	1,775,095	1,775,095	546,279	토지보상에 필요한 소요시간 및 보상비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후 사업 추진하고자 함
	제 설 대 책 무	사 무 관리비	227,190	199,573	157,816	40,700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이 '25.11.15.~'26.3.15.까지 2개년에 시행됨에 따라 용역이 '26.3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불가
	제 설 대 책 민 간 용 역	시설비	2,358,408	2,183,385	700,840	1,402,568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이 '25.11.15.~'26.3.15.까지 2개년에 시행됨에 따라 용역이 '26.3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불가
	열 선 설 치 공 사	시설비	4,008,014	3,167,778	3,162,443	840,000	2025년 특별교부금이 12월 24일에 교부 결정되어 당해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이 어려워 해당 사업 예산의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임
	도 로 열 선 설치(강남 대로39길)	시설비	210,000	-	-	210,000	특별조정교부금이 '25.10월 교부되어 공법선정 진행 기간이 60일이 소요되므로 연내 사업진행 불가
물관리과 (4 건)	30년 도래 노 후 불 량 하 수 관 로 정 비 공 사	시설비	4,543,000	1,072,238	1,072,238	3,470,762	특별조정교부금이 '25.10월 교부되어 공사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 불가
	30년 도래 노 후 불 량 하 수 관 로 정 비 공 사	감리비	3,000,000	-	-	3,000,000	특별조정교부금이 '25.10월 교부되어 공사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 불가
	방배로 270 주변외27개소 원 형 관 로 보 강 공 사	시설비	1,000,000	884,024	-	1,000,000	특별조정교부금이 '25.10월 교부되어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 불가
	반포천 둔치 산책로 정비 사업	시설비	200,000	-	-	200,000	특별조정교부금이 '25.12.24.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
건 강 정 책 과 (4 건)	서초구 건강 장 수 센 터 윤 영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51,300	-	-	51,300	특별조정교부금이 '25.11.26.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
	서초구 건강 장 수 센 터 윤 영	사 무 관리비	15,000	-	-	15,000	특별조정교부금이 '25.11.26.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서초구 건강 장 수 센 터 운 영	행 사 운 영비	7,000	-	-	7,000	특별조정교부금이 '25.11.26.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
	서초구 건강 장 수 센 터 운 영	의료 및 회복비	9,700	-	-	9,700	특별조정교부금이 '25.11.26.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
건 강 관 리 과 (2 건)	서초구 서울 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 사업	사 무 관 리비	5,000	-	-	5,000	특별조정교부금이 '25.11.26교부되어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
	서초구 서울 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 사업	민 간 위 탁금	207,000	-	-	207,000	특별조정교부금이 '25.11.26교부되어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12~114쪽 참고

(2) 사고이월

- 일반회계 총 44건 116억 1,958만 7천원 중에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27건에 85억 5,374만 2천원으로 2024년도 사고이월 22건 170억 326만 1천원 대비 건수는 5건이 증가하고 △84억 4,951만 9천원이 감소함.

○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27건		50,292,268	46,199,708	36,205,626	8,553,742	
기 획 예 산 과 (1 건)	과 학 적 이 고 체 계 적 인 통 계 조 사	연 구 용역비	120,000	110,000	66,000	44,000	용역 완수기한(26.3.31.)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
도 시 계 획 과 (2 건)	서 초 구 청 사 복 합 개 발 을 위 한 공 간 재구조화계획 수 립	시 설비	400,000	390,000	-	390,000	용역기간에 따른 준공기한('25.11.) 미도래로 이월하고자 함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서초구 지구 단 위 계 획 용 적 륜 체 계 재 정 비	시설비	500,000	475,000	332,500	142,500	용역기간에 따른 준공기한('26.2.12.) 미도래로 이월하고자 함
공 공 인프라 (2 건)	기 부 채 납 통합시스템을 통한 미래수요 맞춤형 공공 시 설 공 급	시설비	365,330	332,463	149,723	46,240	준공기한('26년 1월) 미도래로 사업비 이월
	상승정체지역 해 소	연 구 용역비	112,966	112,241	57,275	54,966	행정절차(재공고, 평가위원회 개최 등) 및 과업수행을 관계기관 협의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이월
푸 른 도 시 과 (1 건)	산 지 형 공 원 조 성 및 유 지 관 리	시설비	6,333,253	6,295,230	5,896,597	396,811	2025년 4월에 교부된 특교금 사업으로 연내 사업사행이 곤란하여 사고이월
정 원 여 가 과 (1 건)	녹 지 대 · 가 로 수 조 성 및 유 지 관 리 (수 목 식 재 사 후 관 리)	시설비	12,150,557	10,153,944	7,312,706	2,785,271	길마중길 이용주민 민원사항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 이행으로 하반기에 착공된 사업으로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이월 후 내년도 사업 추진
재 건 축 사 업 과 (2 건)	주 택 재 건 축 공 공 지 원	민 간 경 상 사업보조	243,385	211,545	121,287	90,258	사비 보조금 교부(25년 8월에 따라 계약(25년 10월)을 체결하였으나 과업기간이 5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연내 준공이 어려워 사고이월하고자 함
	주 택 재 건 축 전략적 정비 사 업 추 진	시설비	450,000	337,500	236,250	101,250	'25.11.3. 용역이 착수 후 용역기간(10개월)을 고려하여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함
안 전 도 시 과 (1 건)	재 난 예 방 및 관 리 능 력 강 화	시설비	240,000	142,330	94,380	47,950	용역기간이 '26.1.27.까지로 연내 용역 완수가 불가능하여 사업비 이월
가 로 행 정 과 (2 건)	이 면 도 로 지 중 화 사 업 부 대 공 사 비	시설비	400,890	102,863	47,699	55,164	지중화 관로공사와 연계하여 보안등 및 CCTV 자가통신망 공사 시행 예정이나 설계변경 및 선행 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 후 사업추진하고자 함
	지상배전기기 (분 전 함) 외함 개선 및 관 리	시설비	906,424	833,245	673,561	159,684	'25.9.16. 착수 후 용역기간이 120일('25.9.16. ~ '26.1.13.) 임에도 연내 완수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이월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도 로 과 (8 건)	도 로 사 면 (급 경 사 지) 안전점검 용역	시설비	150,000	142,500	99,750	42,750	동절기(강설) 도로사면 점검에 따른 준공기한이 연기되어 사업비 이월
	누 에 다 리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설비	64,300	64,300	56,742	7,558	중간보고(자문)회에 내진성능평가 추가 과업 실시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에 따라 과업기간 필요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움
	방배카페골목 특 색 있 는 보행로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50,000	47,500	-	47,500	보도 기본구상 디자인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설계도서 작성에 시간이 소요됨
	센 트 럽 시 티 보도육교 외 1 개 소 정 밀 안전진단 용역	시설비	130,000	114,447	-	114,447	과업대상이 특수교비대칭 사장교에 해당하여 일반교량 대비 안전성 평가 산정을 위한 구조해석 검토기간 추가 소요
	가로등 시설물 정 비 공 사 (연 간 단 가)	시설비	337,426	335,990	291,857	44,133	'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이 9.30 교부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내사업완료가 어려워 공사 기성 준공 후 잔액을 사고이월 하고자 함
	서초문화벨트 내 노후 도로 조 명 개 선 (특 교 금)	시설비	980,000	979,661	785,274	194,386	'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이 9.30 교부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내사업완료가 어려워 공사 기성 준공 후 잔액을 사고이월 하고자 함
	제 설 대 책 민 간 용 역	시설비	2,358,408	2,183,385	700,840	255,000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25.11.15. ~ '26.3.15.)에 따라 2개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 종료 시점이 '26년 3월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열 설 선 치 공 사	시설비	4,008,014	3,167,778	3,162,443	5,335	사업이 '26년 1월 완료될 예정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물관리과 (5 건)	수 방 대 책 운 영	시설비	385,396	385,397	277,132	100,000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26.3월까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이 요구되므로 이월하고자 함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시설비	2,586,430	2,585,661	2,531,127	54,535	'26년 압체 선정 전 하수 악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고이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악 취 없 는 맑 은 서 초 만 들 기	시설비	1,650,831	1,581,219	1,576,638	4,581	'25. 6. 악취저감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동절기 추가 공장배수로 설치 등의 어려움으로 이월하고자 함
	하천시설물 유 지 관 리	시설비	14,807,191	14,665,591	11,520,256	3,135,094	토지토지 보상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등으로 연내 사업 완료(예산집행)가 어려워 사고이월 하고자 함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우면천·형촌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시설비	200,000	198,341	99,121	99,220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완수기한 미도래
건 강 정 책 과 (2 건)	금 연 관 리	시설비	341,467	232,217	116,468	115,749	동절기 자재 물량공급 어려움 도로굴착 통제 등으로 개방형 제연 흡연부스 설치 완수가 '26.4월경 가능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
	설 치 류 (주) 방재 활동 지원	사 무 관리비	20,000	19,360	-	19,360	특별조정교부금이 '25년 10월 교부되어 사업기간이 '26년 10월까지로 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이월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16~118쪽 참고

(3) 계속비 이월

○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은 총 4건 82억 6,562만 4천원이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총 1건임.

○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1건		2,300,000	1,581,914	1,581,914	718,086	
공 공 인프라 (1 건)	GTX-C 양재 정거장 환승 코 어 조 성	시설비	2,300,000	1,581,914	1,581,914	718,086	환승코어 기본구상 용역 완료 후 시공사(5공구(주한화) 참여 여부 검토 및 실시설계 위수탁 협약 체결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이월사전 행정 절차 이행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21쪽 참고

2. 특별회계 결산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정리보류액 (라)	미수납액 (마=나-다-라)	진도율 (%) (다/가)	징수율 (%) (다/나)
계	62,789,557	86,483,562	61,819,072	2,072,960	22,591,530	98.5	71.5
건축안전 특별회계	1,148,540	1,400,806	1,398,541	-	2,265	121.8	99.8
세 외 수 입	497,539	749,855	747,590	-	2,265	150.3	99.7
보 조 금	39,305	39,305	39,305	-	-	100.0	1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611,696	611,646	611,646	-	-	100.0	100.0
주차장 특별회계	61,641,017	85,082,756	60,420,531	2,072,960	22,589,265	98.0	71.0
세 외 수 입	18,587,442	42,064,281	17,402,056	2,072,960	22,589,265	93.6	41.4
보 조 금	124,588	89,488	89,488	-	-	71.8	1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2,928,987	42,928,987	42,928,987	-	-	100.0	100.0

○ 건축안전특별회계 진도율(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21.8%, 징수율은 99.8%임.

○ 주차장특별회계 진도율(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8.0%로 전년도(134.4%)보다 △36.4%p 감소함.

- 징수율은 71.0%로 전년도(67.4%) 대비 3.6%p 증가

- 정리보류액은 20억 7,296만원으로
전년도(25억 2,124만 3천원) 대비 △4억 4,828만 3천원 감소함.

○ 특별회계 체납액(미수납액)

- (주차관리과) 차량관련과태료 1,366,060천원
(전년1,666,632천원, 전년대비 △300,572천원 감소)

- (주차관리과) 지난연도수입 21,223,205천원
(전년22,976,217천원, 전년대비 △1,753,012천원 감소)

※ 2025회계연도 결산서 I 235~251쪽 참고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마=가-나-다-라)	불용율(%)	
						2025	2024
계	62,789,557	24,863,193	27,481,744	47,259	10,397,361	16.6	24.8
건축안전특별회계	1,148,540	803,222	18,098	12,903	314,318	27.4	28.9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806,990	476,411	18,098	12,903	299,579	37.1	44.8
행정운영경비 (건 축 과)	340,109	325,371	-	-	14,738	4.3	7.8
재 무 활 동 (건 축 과)	1,441	1,440	-	-	1	0.1	0.1
주차장특별회계	61,641,017	24,059,971	27,463,646	34,356	10,083,043	16.4	24.7
미 래 지 향 적 도시교통 정착 (교통 행정과)	288,000	288,000	-	-	-	0.0	14.5
주차장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 (주차 관리과)	48,355,466	19,303,328	27,463,646	34,356	1,554,136	3.2	5.4
행정운영경비 (주차 관리과)	4,907,133	4,442,613	-	-	464,520	9.5	7.3
재 무 활 동 (주차 관리과)	8,090,418	26,030	-	-	8,064,387	99.7	99.8

○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억 4,854만원 대비 8억 322만 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69.9%로 전년도(71.1%) 대비 △1.2%p 감소하였으며, 불용률은 27.4%로 전년도(28.9%) 대비 △1.5%p 감소함.

○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16억 4,101만 7천원 대비 240억 5,997만 1천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39.0%로 전년도(23.2%) 대비 15.8%p 증가하고, 불용률은 16.4%로서 전년도(24.7%) 대비 △8.3%p 감소함.

【집행잔액 1억원이상 또는 불용률 50%이상인 사업 - 9건】

조직 - 세부사업		집행잔액(천원)	불용률(%)
건축안전특별회계(1건)			
건축 안전센터 운영		282,960	95.7
주차장특별회계(8건)			
예비비		100,000	100.0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296,040	9.1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용역		171,973	16.1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		322,370	20.8
교통법규 위반(주정차등) 단속 CCTV 운영		264,156	14.1
인력운영비		384,992	8.3
공영주차장 건설		7,679,118	100.0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385,270	93.7

※ 2025회계연도 결산서 I 252~269쪽 참고

다. 예비비 집행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지출잔액
특별회계	378,181	-	-	-	-
건축안전특별회계	278,181	-	-	-	-
일반예비비	11,351	-	-	-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66,830	-	-	-	-
주차장특별회계	100,000	-	-	-	-
일반예비비	100,000	-	-	-	-

-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비비예산** 3억 7,818만 1천원 중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지출잔액은 0원임.

※ 2025회계연도 결산서 I 285~287쪽 참고

라.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

(1) 예산 이용 : 없음

(2) 예산 전용 : 특별회계 총 3건 6,471만 7천원 중에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1건 5,621만 7천원임.

○ 주차장특별회계 전용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건수	사	유	금	액
계	-		1건	-		56,217	
	주차관리과		1건	직영 공영주차장 2개소 신규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증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 예산 확보		56,217	

(3) 예산 이체 : 없음

※ 2025회계연도 결산서 I 271~284쪽 참고

마. 계속사업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소관부서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다)	집행잔액 (라=가-나-다)
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	4건	38,422,211	11,605,877	26,816,211	123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신축	주차관리과	14,850,964	7,099,123	7,751,769	71
구룡공영주차장신축	주차관리과	18,562,034	3,359,376	15,202,607	52
구룡공영주차장생활 SOC복합화사업	주차관리과	632,892	609,382	23,510	-
서래마을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주차관리과	4,376,321	537,996	3,838,325	-

○ 2025년도 계속사업비 특별회계 총 4개 사업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4건으로 예산현액 384억 2,221만 1천원 중에서 116억 587만 7천원을 지출하고 268억 1,621만 1천원이 이월됨.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83~99쪽 참고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

(1) 명시이월사업 :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1개 부서(주차관리과)에 해당되며, 총 1건 5억 5,530만원임.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1건		793,400	641,499	221,856	555,300	
주 차 관 리 과 (1 건)	공 영 주 차 장 시 설 물 관 리 및 운 영	전 산 개 발 비	793,400	641,499	221,856	555,300	2025년 추가경정예산 확보 이후 사업 추진 용역 사업기간이 2026년 상반기까지로 계획되어 있어 금년도 내 예산 집행 불가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15쪽 참고

(2) 사고이월 : 특별회계 사고이월사업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개 부서 (건축과, 주차관리과)에 해당되며, 총 3건 1억 1,023만 3천원임.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1건		736,209	652,300	541,667	110,233	
건 축 과 (1 건)	공 사 장 및 건 축 물 안 전 점	시 설 비	481,209	454,036	435,939	18,09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홈페이지 개설 용역 완수가 '26년도 3월로 예상되어 선금 50%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이월하고자 함
주 차 관 리 과 (2 건)	건 축 물 부 설 주 차 장 관 리	시 설 비	105,000	53,989	33,591	19,998	공사범위와 업체선정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 및 주차관리시스템 제작착공까지 장시간 소요로 준공 지연되어 이월함
	교 통 법 규 위 반(주정차 등) 단 속 CCTV 운 영	전 산 개 발 비	150,000	144,275	72,137	72,137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26.2월 준공 예정으로 연도 내 집행이 아래월 이월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19~120쪽 참고

(3) 계속비 이월

- 특별회계 계속비이월사업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1개 부서(주차관리과)에 해당되며, 총 10건 268억 1,621만 1천원으로 2024년도 계속비이월 10건 294억 88만 1천원 대비 이월액은 △25억 8,467만원 감소함.

○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10건		38,420,211	23,441,159	11,604,018	26,816,211	
주 차 관 리 과 (10 건)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 축 (전 환 사 업)	시설비	13,627,542	7,411,619	6,370,415	7,257,127	계속비 사업 추진 중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 축 (전 환 사 업)	감리비	1,176,678	1,176,678	700,000	476,678	계속비 사업 추진 중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 축 (전 환 사 업)	시 설 부대비	45,744	27,779	27,779	17,964	계속비 사업 추진 중
	구룡공영주차장 신 축 (전 환 사 업)	시설비	17,111,440	10,127,124	2,413,428	14,698,031	대년간 공사로 2027년 6월 준공예정임
	구룡공영주차장 신 축 (전 환 사 업)	감리비	1,329,806	945,018	945,018	384,788	대년간 걸친 공사로써 2027년 6월 준공 예정
	구룡공영주차장 신 축 (전 환 사 업)	시 설 부대비	119,788	-	-	119,788	대년간 걸친 공사로써 2027년 6월 준공 예정
	구룡 공영주차장 생 활 S O C 복합화 사업 (전 환 사 업)	시설비	632,892	632,892	609,382	23,510	대년간 공사로 2027년 6월 준공예정임
	서 래 마 을 공 영 주 차 장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4,307,002	3,064,479	537,996	3,769,006	계속비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공사 준공시 집행 예정
	서 래 마 을 공 영 주 차 장 환경개선공사	감리비	58,050	55,570	-	58,050	계속비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공사 준공시 집행 예정
	서 래 마 을 공 영 주 차 장 환경개선공사	시 설 부대비	11,269	-	-	11,269	계속비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공사 준공시 집행 예정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22쪽 참고

3. 기금 결산

○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5년도말 현재의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기금총액은 3,016억 7,298만 7천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기금조성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33,486,241	68,186,746	105,856,499	37,669,753	301,672,987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7,641,800	62,609,358	87,383,892	24,774,534	140,251,159
		통합계정	72,786,908	65,833,617	87,308,151	21,474,534	138,620,525
		재정안정화계정	4,854,893	△3,224,259	75,741	3,300,000	1,630,634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128,139	151,499	896,779	745,280	2,279,638
안전도시과	재난관리기금		14,324,938	1,454,528	3,955,248	2,500,719	15,779,466
도 로 과	도로굴착복구기금		13,795,345	△735,,129	8,597,130	9,332,259	13,060,216
공공인프라과	청사건립기금		124,126,293	4,793,475	4,793,476	-	128,919,768
위 생 과	식품진흥기금		1,469,726	△86,986	229,974	316,961	1,382,740

○ 기금운용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기 금 명	전년도이월	수입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0	323,502,530	323,158,721	343,809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149,185,482	149,185,482	-
	통 합 계 정	0	144,254,848	144,254,848	-
	재 정 안 정 화 계 정	0	4,930,634	4,930,634	-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발전기금	0	3,024,918	3,024,918	-
안전도시과	재난관리기금	0	18,280,186	17,936,377	343,809
도 로 과	도로굴착복구기금	0	22,392,475	22,392,475	-
공공인프라과	청사건립기금	0	128,919,768	128,919,768	-
위 생 과	식품진흥기금	0	1,699,701	1,699,701	-

※ 2025회계연도 결산서 I 293~370쪽 참고

Ⅲ. 검토 의견

1. 관계법령 검토

-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제150조(결산),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2. 결산검사 의견

- 서초구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김지훈의원 외 6명)은 서초구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2026. 3. 23. ~ 2026. 4. 21.)하였으며, 총 12건의 개선권고사항을 지적하였음.
- 주요 개선권고사항으로는 「세부사업의 집행률 관리 필요」,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및 집행 관리 준수」, 「성과지표 목표점의 객관적인 측정단위 설정」, 「주택재건축 전략적 정비사업 추진 용역의 반복적 이월 및 집행 부적정」, 「반포종합운동장 다목적 체육 시설 건립의 안정적 추진」,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사업 지연」 등이며 이러한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향후 예산의 편성시 고려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 동일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재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3. 분야별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재정건설위원회 세입 결산 현황

- 2025년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2,462억 3,233만 1천원 대비 248억 6,661만 6천원이 더 수납된 1조 2,710억 9,894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102%(일반회계 102.2%, 특별회계 98.6%)이고, 징수결정액 1조 3,340억 5,576만 6천원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5.3%(일반회계 96.9%, 특별회계 71.5%)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p,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2.3%p 상승하였음.
- 2025년회계연도 총괄 세입의 재원별 비율은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46.5%, 이전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교부금+보조금)이 35.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8.4%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총괄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의 비율은 전년대비 0.3%p 증가하였고, 이전수입의 비율은 전년대비 3.4%p 증가한 반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7%p 감소하였음.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7~14쪽 참고

< 최근 3년간 총괄 세입 재원별 현황 ('25~'23)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구성비)	2024(구성비)	2023(구성비)
계		1,271,099	1,153,133	1,118,810
자체수입	지방세	354,477(27.9%)	330,461(28.7%)	317,007(28.3%)

	세외수입	236,863(18.6%)	202,810(17.6%)	120,064(10.7%)
	소 계	591,340(46.5%)	533,271(46.2%)	437,071(39.0%)
이전수입	지방교부세	16,276(1.3%)	22,232(1.9%)	25,722(2.3%)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6,196(2.8%)	26,549(2.3%)	27,938(2.5%)
	보조금	393,944(31.0%)	316,617(27.5%)	315,913(28.2%)
	소 계	446,416(35.1%)	365,398(31.7%)	369,573(33.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3,343(18.4%)	254,464(22.1%)	312,166(27.9%)

○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실제수납액)은 801,973,879천원으로
전년도(695,395,457천원) 대비 106,578,422천원 증가
-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실제수납액)은 61,819,072천원으로
전년도(57,204,975천원) 대비 4,614,097천원 증가

○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외수입(실제수납액)은 우리 구 전체 세외수입의 87.9%의 규모를 차지하며, 주요 세외수입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세입과목	실제수납액 (2025년)	실제수납액 (2024년)	증가금액
재 무 과	공유재산매각수입금	86,916,031	6,890,661	80,025,370
재 무 과	불용품매각대금	79,521	18,586	60,935
재 무 과	기타이자수입	78,286	58,071	20,215
세 무 관 리 과	지난년도수입	15,315,538	2,893,140	12,422,398
세 무 관 리 과	징수교부금수입	45,280,253	42,177,031	3,103,222
교 통 행 정 과	차량관련과태료	1,030,058	789,758	240,300
교 통 행 정 과	기타사용료	25,832	25,000	832
푸 른 도 시 과	이행강제금	2,071,800	26,010	2,045,790
건 축 과	이행강제금	1,182,386	546,091	636,295
공 동 주 택 관 리 과	기타과태료	364,600	336,600	28,000
부 동 산 정 보 과	기타과태료	189,100	144,131	44,969
부 동 산 정 보 과	그외수입	39,358	25,549	13,809

가 로 행 정 과	징수교부금수입	4,150,571	3,644,869	505,702
가 로 행 정 과	그외수입	358,641	74,004	284,637
가 로 행 정 과	도로사용료	4,219,495	4,010,835	208,660
가 로 행 정 과	변상금	916,951	898,198	18,753
가 로 행 정 과	공유재산임대료	128,407	124,751	3,656
가 로 행 정 과	공유수면사용료	674,549	672,079	2,470
물 관 리 과	그외수입	542,491	46,913	495,578
건 강 정 책 과	그외수입	57,996	11,254	46,742
건 강 관 리 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14,956	54,274	60,682
의 료 지 원 과	보건의료수수료	229,239	181,722	47,517
의 료 지 원 과	기타과태료	49,230	17,440	31,790
의 료 지 원 과	과징금	34,147	24,375	9,772
방 배 보 건 지 소	증지수입	40,589	39,739	850
서 초 보 건 지 소	보건의료수수료	12,270	10,748	1,522

<세외수입의 주요 감소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세입과목	실제수납액 (2025년)	실제수납액 (2024년)	감소금액
재 무 과	위약금	390	6,261	△5,871
재 무 과	공유재산임대료	157,902	335,339	△177,437
재 무 과	그외수입	3,552,028	4,189,795	△637,767
재 무 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460,875	3,317,615	△856,740
세 무 관 리 과	그외수입	170,467	214,177	△43,710
교 통 행 정 과	징수교부금수입	2,267,138	2,284,983	△17,845
도 시 계 획 과	징수교부금수입	159,348	331,849	△172,501
도 시 계 획 과	그외수입	4,518	14,224	△9,706
푸 른 도 시 과	징수교부금수입	47,833	75,524	△27,691
건 축 과	기타과태료	8,640	19,120	△10,480
공 동 주 택 관 리 과	이행강제금	1,357,172	1,366,515	△9,343
가 로 행 정 과	기타사용료	21,117	21,974	△857
가 로 행 정 과	증지수입	76,124	399,059	△322,935
가 로 행 정 과	과징금	-	566,512	△566,512
건 강 정 책 과	증지수입	105,834	106,787	△953
건 강 정 책 과	기타과태료	302,656	386,342	△83,686
건 강 관 리 과	보건의료수수료	18,419	22,693	△4,274
위 생 과	기타과태료	77,274	83,978	△6,704

< 구 전체 세입결산 중 미수납 현황 ('25~'23) >

(단위 : 천원, %)

회계연도	징 수 결 정 액	실 제 수 납 액	미 수 납 액	징수결정액대비 수 납 액 비 율
2025	1,334,055,766	1,271,098,947	57,575,967	95.3
2024	1,152,428,507	1,071,957,663	74,112,914	93.0
2023	1,218,631,331	1,133,458,845	77,997,763	93.0

< 정리보류액 현황 ('25~'23) >

(단위 : 천원, %)

회계연도	미 수 납 액	정 리 보 류 액	정 리 보 류 액 비 율
2025	57,575,967	5,380,851	9.3
2024	74,112,914	6,357,930	8.5
2023	77,997,763	7,174,721	9.2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9쪽 참고

<지방세 체납액 세부 내역>

(단위: 천원)

세 목 명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체납금액	징수율 (%)	비 고
합 계	361,905,040	354,477,187	517,172	6,910,681	97.9	
등 록 면 허 세	44,435,757	44,234,360	56	201,341	99.5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재 산 세	305,035,850	302,323,418	346	2,712,085	99.1	재산세과
지 방 소 비 세	5,564,858	5,564,858	-	-	100.0	세무관리과
지난연도수입	6,868,575	2,354,551	516,770	3,997,254	34.3	세무관리과

<지방세 체납 사유>

(단위: 천원)

체납사유		체납액	점유비율
계		6,910,681	100.0%
경제여건 악화		3,282,966	47.5%
	무재산	2,862,861	41.4%
	폐업 또는 부도	214,225	3.1%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51,430	0.7%
	자금압박	154,450	2.2%
행방불명		173,718	2.5%
납기미도래		22,986	0.3%
납세태만		3,375,298	48.9%
국외이주		55,713	0.8%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4쪽 참고

◆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서별 체납현황
<세외수입 부서별 체납현황(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서명	세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재 무 과	구유재산임대료	147,466	160,514	157,902	2,612
	구유재산변상금	6,285	6,541	1,610	4,931
세 무 관 리 과	체 납 처 분 비	-	123	-	123
	지 난 연 도 수 입	15,339,728	43,691,588	15,315,538	25,585,330
교 통 행 정 과	자동차관리법위반과 태료(신규, 임시운행 허가, 말소, 변경)	72,000	76,737	66,369	10,368
	자동차관리법위반과 태료(안전기준부적합, 자동차등록번호판)	3,488	4,532	4,032	500
	자동차정기검사 과 태 료	356,219	988,304	630,666	357,638
	자동차의무보험 과 태 료	232,679	587,494	318,087	269,408
	이 룬 자 동 차 과 태 료	5,950	4,992	4,651	341
	운수사업법위반 (운전자)과태료	6,750	5,370	3,974	1,396
	이 룬 자 동 차 정기검사과태료	-	5,052	3,385	1,667
	자 동 차 관 리 법 위반범칙금(소유 권 이 전 등 록)	12,000	22,170	22,010	160
	개 발 제 한 구 역 이 행 강 제 금	50,931	174,301	2,072	172,230
푸 른 도 시 과	건축이행강제금	-	81,082	-	81,082
	구유재산변상금	-	13,601	-	13,601
정 원 여 가 과	가 로 수 원 인 자 부 담 금	199,693	125,332	117,913	7,419
건 축 과	위 법 건 축 물 건축이행강제금	448,576	1,378,752	1,182,386	196,366
	무 허 가 건 축 물 이 행 강 제 금	1,489,541	1,788,081	1,357,172	430,909
부 동 산 정 보 과	지적측량기준점 복 구 비	3,000	34,084	22,177	11,906
	소 송 비 용	-	21,610	17,181	4,429
	공 인 중 개 사 법 위 반 과 태 료	115,000	128,722	125,865	2,857
	부동산실거래신고 위 반 과 태 료	60,000	53,384	49,869	3,515
안 전 도 시 과	민 방 위 기 본 법 위 반 과 태 료	1,500	2,779	1,567	1,212

부서명	세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가 로 행 정 과	도 로 사 용 료	3,560,531	4,332,385	4,218,165	114,220
	국·공유재산변상금	135,284	84,915	77,121	7,794
	시유재산변상금	-	13,229	10,886	2,344
	공유수면변상금	-	66,121	46,387	19,735
	도로법위반과태료	27,830	55,388	40,388	15,000
	건설산업기본법 위 반 과 태 료	25,912	34,514	29,780	4,734
	건설기계관리법 위 반 과 태 료	16,874	44,236	11,791	32,445
도 로 과	가로등및보안등 원 인 자 부 담 금	6,400	5,475	1,115	4,360
물 관 리 과	기 타 잡 수 입	-	609,738	542,491	67,247
건 강 정 책 과	국민건강증진법 위 반 과 태 료	424,641	375,832	302,656	73,176
건 강 관 리 과	기타보조금사용 잔 액 반 환 금	110,584	114,975	114,956	20
위 생 과	식 품 위 생 법 위 반 과 태 료	40,500	77,543	48,830	28,714
	농수산물의원산지 표시에관한법률 위 반 과 태 료	1,600	1,374	720	654
	건강기능식품에 관 한 법 률 위 반 과 태 료	12,000	31,560	15,960	15,600
	공 중 위 생 법 위 반 과 태 료	10,000	16,456	11,060	5,396
	의 료 법 위 반 과 태 료	2,500	53,640	48,430	5,210

◆ 특별회계 세외수입 부서별 체납현황

<세외수입 부서별 체납현황(특별회계)>

(단위: 천원)

부서명	세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건축과	이 행 강 제 금	484,529	741,992	739,727	2,265
주차관리과	차 량 관 련 료 과 태 료	4,499,200	5,488,926	4,122,866	1,366,060
	지 난 연 도 수 입	2,160,000	24,598,395	1,302,230	21,223,205

기획재정국

【재무과】

■ 공유재산변상금: 미수납액 4,931,460원(징수율 24.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계산한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을 징수함.
- 총 징수결정액은 6,285,000원으로 8건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수납액은 3건에 대한 1,609,930원으로 징수율은 24.6%이며, 총 5건이 체납되어 체납액은 4,931,460원임.

<최근 3년간 공유재산변상금 부과·징수·체납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체납액		징수율 (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년	6,285	8	6,541	3	1,610	5	4,931	24.6%
2024년	6,214	8	6,438	3	1,779	5	4,659	27.6%
2023년	11,174	9	10,775	3	1,688	6	9,086	15.6%

- 주거용으로 무단점유 중인 5명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 곤란 및 납부 거부 등으로 미수납 상태임.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 및 체납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말까지 미납된 체납액은 차기

회계연도에 세무관리과로 이관됨.

- 한편 공유재산변상금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서초구 소유의 재산에 대한 관리 소홀 및 무단 점유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정당한 사용권원이 없는 자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세무관리과】

■ 징수촉탁수수료: 징수결정액 168,345천원(예산현액 278,198천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데, 이 때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해야 함.
-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데, 이 때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이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징수를 촉탁 받은 경우

에는 그 체납징수액의 70%를 축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송금하고, 30%를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함.

- 2025년도 징수결정액은 타 시·도 자동차세 512건, 타 자치구 과태료 502건으로 168,345천원이며, 실제수납액과 동일하여 미수납액은 없고 징수율은 100%임.
- 다만, 당초 세입예산을 278,198천원으로 추계하였는데, 이는 최근 5년간('19~'23년) 평균 징수축탁수수료 245,758천원에 평균 증감률 13.2%를 반영하여 추계한 것임. 그러나 징수결정액은 168,345천원으로 예산액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실제수납액과도 212,893천원과도 차이가 큼.
- 이는 '25.9.~'26.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및 복구작업의 여파로 변호관 영치 활동에 제약이 생긴 것이 징수축탁수수료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또한 코로나19 시기('20~'21년)와 코로나19 이후의 징수액 및 증감률의 편차가 컸으며, 2024. 7. 징수축탁업무 협약의 개정으로 변호관 영치예고가 징수축탁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징수축탁수수료의 세입예산 추계 시에는 이러한 제도적·환경적 요인과 우리구 부과율 및 납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하게 편성해야 할 것임.
- 한편 우리 구는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가능 문구가 표시된 사전안내문 및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경우 신규 체납자에게는 매월, 기존 체납자에게는 연 5회 안내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에게는 매월 안내하고 있음. 특히 과태료 총액 30만원 이상이거나 자동차세 1매당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반송 시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고 있으며, 사전 납부예고 시 체납액

과 가상제좌 등 납부방법을 함께 고지함으로써 다양하고 반복적인 안내를 통해 체납 차량 자발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따라서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의 강화로 의도치 않은 체납이 예방되는 점도 주요 감소 요인으로 판단됨.

공간혁신국

【교통행정과】

■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미수납액 357,638천원(징수율 64%)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검사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는 정기검사 지연기간 30일까지는 4만원, 이후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14일까지 2만원씩 추가되며,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최근 3년간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부과·징수·체납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체납액		진도율 (C/A)	징수율 (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년	356,219	6,304	988,304	5,467	630,666	837	357,638	177%	64%
2024년	291,500	5,126	637,583	4,483	428,390	643	209,193	147%	67%
2023년	261,000	4,204	677,208	3,534	409,341	670	267,867	157%	60%

- 2025년도에는 총 6,304건의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징수결정액은 988,304천원이며, 이 중 837건에 대한 357,638천원이 체납되어 징수율은 64%임.
- 최근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과태료의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60%를 웃도는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개인의 주민등록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 법인의 폐업 및 주소지 변동으로 인해 과기 송달 후 반송되는 경우가 30~4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밖에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록 때까지 과태료 납부를 미루는 관행, 청산 또는 폐업된 법인 차량의 체납 증가 등이 주된 요인으로 보임.
-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및 지연에 따른 과태료부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운전자가 정기검사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반면에 과태료 징수 건수만 봤을때는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 미인지 상황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징수결정액은 988,304천원이나 예산현액이 356,219천원으로 차이가 큼. 물론 예산현액이란 예산상 미리 예측하여 계획한 금액으로 과태료의 경우 예측과 실제 부과하는 건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액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함.
- 다만, 202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징수결정액 637,583천원과 비교하더라도 큰 격차가 있는데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의 상한액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예산현액의 산출시 인상 전 금액이 적용된 2021년 실적이 그대로 추계되어 과태료 수입이

실제보다 낮게 추계되어 예산이 과소하게 편성된 것으로 추정됨.

-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과태료 인상분 및 과태료 부과건수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미수납액 269,408천원(징수율 54.1%)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1만 5천원, 이후 매일 6,000원이 추가되며,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륜차는 10일까지는 9,000원이고 최대 3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10일까지는 6만 5천원이고,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함.
- 2025년도에는 총 5,241건의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징수결정액은 587,494천원이며, 이 중 987건에 대한 269,407천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54%임.

<최근 3년간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부과·징수·체납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체납액		진도율 (C/A)	징수율 (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년	232,679	5,241	587,494	4,254	318,087	987	269,407	120%	54%
2024년	193,800	4,844	685,038	3,600	293,235	1,244	391,803	151%	43%
2023년	190,080	3,937	565,363	2,950	261,538	987	303,825	139%	47%

-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것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 법인의 폐업 및 주소이전 등으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사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인지하더라도 체납자의 경제적인 사유나 납부의식 부족으로 인한 체납이 주된 요인으로 보임.
- 그러나 최근 3년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징수율이 11% 상승하여 부과건수가 증가하였음에도 체납건수는 감소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음.
- 이는 2025년부터 서울시 전산수납시스템(SEN)을 활용해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직접 발송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송달 체계를 개선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그동안 과태료 체납의 주된 사유 중 하나는 개인의 실거주지 불일치나 법인의 폐업·주소 변경 미등록 등으로 인한 우편 송달 불능이었으며, 이로 인해 체납자가 부과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송달 체계의 개편으로 모바일 고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지 누락을 방지하고 의도치 않은 체납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한편 징수결정액은 587,494천원이나 예산현액이 232,679천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남. 예산액 편성 이후 법령의 개정으로 과태료 금액이 큰폭으로 상승하거나 부과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예산액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음.
- 다만, 2025년도 예산현액은 2024년도 징수결정액 685,038천원 및 2023년도 징수결정액 565,363천원과 비교하더라도 금액의 차이가 크며, 매년 예산편성액과 실제 부과액에는 큰 격차가 있어 왔음.

뿐만 아니라 실제 징수액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
간 예산이 과소 편성되어 온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와 같이 예산이 이러한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최
근 2~3년 세입 결산을 바탕으로 추계하여 예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미수납액 26,324천원(징수율 54%)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제2호,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
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안전도, 배출가스·소음, 불법 구조변경 등을 확인하여 이륜차 사
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실
시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이륜
자동차 소유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이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
라 정기검사 지연기간 30일까지는 2만원, 이후 2만원에 31일째부
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하며, 85일 이상인 경
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덧붙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의 예산액이 미편성 되었는데,
이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관계법령이 「대기환경보전법」
→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9724호, 2023. 9. 14. 공포, 2025. 3.
15. 시행)으로 변경되면서 2025년 예산은 2024년에 기후환경과에서
편성함에 따라 교통행정과 예산은 미편성된 것이며, 2025. 7. 27.

소관업무과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었음.

<2025년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천원, %)

구 분	예산액(A)	부과액(B)		수납액(C)		진도율 (C/A)	징수율 (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교통행정과 (2025.8월~12월)	12,880	281	5,052	201	3,385	26	67
기후환경과 (2025.1월~7월)		385	58,238	268	33,581	261	58

<최근 3년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징수·체납 현황>

(단위:천원, 기후환경과 포함)

구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체납액		진도율 (C/A)	징수율 (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년	12,880	666	63,290	469	36,966	197	26,324	120%	54%
2024년	11,300	392	30,297	296	19,026	96	11,271	168.4%	62.8%
2023년	9,000	330	24,704	265	18,180	65	6,524	202%	73.6%

- 한편 2025년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가 666건으로 전년도 부과 건수 392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5년 4월 28일 자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근거 법령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자동차관리법」으로 변경(유예기간 2025.4.28.~7.27.)되면서, 종전 배출가스 검사 위주에서 안전검사 항목까지 포함되는 등 검사 제도가 대폭 개편되었기 때문임.
- 그에 따라 소관부서도 기존 기후환경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변경되었는데, 업무의 이관 과정에서 종전부서가 그동안 미부과 상태로 남겨뒀던 검사 미이행 건들을 일괄 정리하여 부과함에 따라 2025년도 부과 건수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체납액의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기간 경과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 문자 및 일반

우편을 병행하여 발송하고, 과태료 고지 시 대상자의 현 사용본거지를 조회하여 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송달률을 높이고 있음. 또한 등기우편 부재자 및 거주불명자 등에 대해서는 전자우편·문자 및 카카오톡을 활용한 전자송달을 병행하고 있으며, 체납 발생 시에는 과세대상 차량을 우선 압류하고 미압류자에 대해서도 수시로 재산을 조회하여 예금 등 대체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제도를 안내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담보 상태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

- 나아가 2025년도에는 업무의 이관 과정에서 소관부서가 변경되면서 부과액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예외적인 상황일 수 있겠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매년 세입예산과 실제 세입액수의 차이가 큰데, 이는 전년도 부과액이나 징수액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현황 추이를 살펴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푸른도시과】

■ 공원녹지 점용료: 예산현액 801,665천원, 징수결정액 352,954천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 38조에 따라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허가 기간 동안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개별공시지가X점용면적X점용요율X(점용일/365)] 산식에 근거하여 산출함.

- 이 때 제42조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입장료·사용료·점용료와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으로 100% 구 수입임.
- 징수결정액 352,954천원이며, 수입필액 352,954천원으로 징수율이 100%이나 예산현액이 801,665천원으로 징수액과 차이가 큼.
- 이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도시공원 점용료 387,935천원 및 녹지에 관한 점용료 413,730천원을 합산하여 801,665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으나, 2025. 1. 1.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이 푸른도시과 및 정원여가과로 개편되면서 도시공원 점용료는 푸른도시과, 녹지점용료는 정원여가과에서 부과하게 되었기 때문임.

<최근 3년간 도시공원 점용료 부과·징수·체납 현황>

(단위:천 원)

구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체납액		징수율 (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년	801,665	43	352,954	43	352,954	-	-	100%
2024년	936,672	82	674,987	79	674,735	3	252	99.9%
2023년	906,422	74	779,331	74	779,331	-	-	100%

- 2025년도 도시공원 점용료 부과건수는 43건으로 징수결정액은 352,954천원이며, 징수율은 100%임. 다만, 현재 세입 예산액은 연도별 세입추계 현황 및 점용허가 대상지 현황을 검토한 후 편성하고 있으나, 편성된 세입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편차가 매년 큰 편이며, 특히 2025년도에는 예산액은 801,665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52,954천원의 약 2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다 추계 되었음.
- 추계의 특성상 세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일치하는 것은 어려우나,

연도별 도시공원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추이를 보다 면밀히 살펴 이를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임.

■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172,230천원(98.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해당연도 불법행위 자진정비를 위해 2회의 시정명령을 실시하였음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 예고 통지를 거쳐 최종 이행강제금을 처분함.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체납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체납액		징수율(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년	50,931	11	174,301	2	2,071	9	172,230	1.2%
2024년	81,338	19	40,777	11	26,009	8	14,767	63.8%
2023년	54,316	14	66,817	6	32,257	8	34,560	48.2%

-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부과건수는 2023년 14건, 2024년 19건, 2025년 11건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음에도 징수결정액은 40,777천원에서 174,301천원으로 약 4.3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위법행위 면적의 증가 및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건별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증가함에 따른 것임.
- 한편 세입 예산액은 50,931천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74,301천원으로 예산액의 약 3.4배에 달하는 큰 격차를 보임. 2025년도 세입예산은 불법행위 발생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 등

으로 해당연도 징수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최근 3개년 부과액에 보정비율 60%를 적용하여 50,931천원으로 추계한 것으로 금번과 같이 일시적으로 증가 폭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불법행위자 대부분이 생계형 거주민이거나 영세사업자여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행강제금 납부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총 11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징수는 2건에 그쳤고, 징수액은 2,071천원에 불과하여 체납액이 98.8%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함. 미수납액은 주로 1~2백만원 대의 소액부터 1천만원 대, 그리고 최대 1억 2천만원을 상회하는 고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로 분포되어 있으며, 미수납액 9건 중 1건은 행정소송 진행 중이며, 나머지 8건은 경제적 사정 등 개인 사유로 미납된 상태임.
- 매년 체납액이 발생하여 징수율이 높은 편은 아니나, 2025년도에는 징수율이 1.2%로 매우 저조함. 이는 징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나아가 근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드론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한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불법행위의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여 법 질서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의 이행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 건축이행강제금: 미수납액 81,082천원(징수율 0%)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임야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은 총 1건으로 방배동 산 109번지 임야 내 294.2㎡의 규모에 종교시설(철근콘크리트 구조)을 무단으로 축조하였고, 1·2차에 걸친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정비기간을 안내했음에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강제금 81,082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나 체납자가 자진하여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임.

<최근 3년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징수·체납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체납액		징수율 (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년	0	1	81,082	0	0	1	81,082	0%
2024년	-	-	-	-	-	-	-	-
2023년	0	1	247,942	0	0	1	247,942	0%

- 건축이행강제금의 부과 건수는 그 수가 적음에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적법한 허가 없이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은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여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벌(집행벌)로서의 성격을 가짐.
- 그러므로 법령을 위반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 인바, 원칙적인 법 집행에 따른 엄정한 징수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액을 미편성하였는데,

이는 해당 수입은 임야 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발생 시점과 징수 여부가 불확실하여 사전에 정확한 세입 예산을 편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구유재산변상금: 미수납액 13,601천원(징수율 0%)**

- 구청장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계산한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점용면적×공시지가×대부요율×점유기간×120%)을 변상금으로 부과 처분함.
- 소라어린이공원(두레마을-방배동 997-1) 내 무단거주가 확인된 세대에 대하여 변상금을 연 1회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세대에 대해 13,600,98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전체 미수납됨.

<최근 3년간 구유재산변상금 부과·징수·체납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체납액		징수율(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년	0	3	13,601	0	0	3	13,601	0%
2024년	0	2	16,734	0	0	2	16,734	0%
2023년	0	2	41,994	0	0	2	41,994	0%

- 부과된 체납액에 대하여 추가 부과예고, 등기발송 등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나, 폐문부재로 등기 반송 및 현장송달 거부 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무단점유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현재 징수된 변상금이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구유재산변상금에 대한

세입예산을 미편성한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최근 3년간 실제 수납액이 없다는 것은 현행 체납처분 절차와 징수 행정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정원여과과】

■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예산현액 199,693천원/징수결정액 125,332천원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22조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발생 및 건축물 신축 등 공사에 저촉되는 지장 가로수 제거가 필요한 경우 관리청(구청장)은 가로수 제거 신청서를 접수 받아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을 하는데, 이 때 그 비용은 재료비를 포함한 도급공사 설계비 및 수목가액으로 산정하며 원인자가 부담함.

<최근 3년간 가로수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체납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체납액		징수율 (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년	199,693	9	125,332	8	117,913	1	7,419	94%
2024년	284,847	17	399,236	17	399,236	-	-	100%
2023년	302,801	16	243,249	16	243,249	-	-	100%

- 부과 건수는 9건으로 징수결정액은 117,913천원이며, 체납액은 7,419천원으로 징수율은 94%임. 한편, 세입 예산액은 직전 3개년(2022~2024년) 부과액의 평균치를 산정한 199,693천원으로 징수결정액보다 큰 액수

가 편성되었는데, 이는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은 주로 재건축 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시 가로수목을 제거하거나, 교통사고 발생으로 가로수가 훼손되어 이를 제거하는 경우에 원인자에게 수목가액 및 도급공사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2025년도에는 재건축사업이 평년보다 감소하면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징수결정액이 부과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도시관리국

【재건축사업과】

▣ 구유재산 매각수입: 징수결정액 17,547,406천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법률 제14567호 개정되기 전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됨.

<무상양도 관련 서울시 방침>

관련근거	관련내용
2010.12.14. (행정제2부시장 방침-401호)	- 적용대상 : 개선기준(정비계획결정시 순부담률 적용)은 방침일 이후 신규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 기 결정된 정비계획은 종전 기준 적용, 조합이 소송 등 무상양도를 요구하는 경우 정비계획변경(용적률 하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이행 ※ 방배6구역의 경우 06. 3. 23.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10. 12. 23. 정비구역 지정으로 종전기준 적용 대상임

2016. 4. 7.
(행정제2부시장
방침-101호)

- 적용대상 : 무상양도 대상인 용도폐지 기반시설을 유상 매입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받은 정비사업
- 적용기준 : ①유상양도한 경우에는 무상양도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부분을 환원하는 정비계획 변경 추진 ② 사업진행상 정비계획변경이 곤란하여, 조합이 소송 방지대책을 마련(제소전 화해) 후 당초 정비계획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준 적용가능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3 \times (\text{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times \text{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div \text{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 국토계획법상 1.5 이내로 적용하여 완화할 수 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10항에 따라 1.3으로 적용함

- 이에 2016. 4. 7.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의 무상양도 개선 방침이 시달되었고, 시공사 선정 총회 시 조치계획 제출을 조건부로 2016. 7.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이후 서초구와 조합간의 제소전 화해 신청 및 협의가 진행되어 2018. 2. 화해 조서가 최종 확정되었으며, 오랜 기간의 검토 끝에 2025. 11. 구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및 유상매입금을 부과하게 된 사안임.

<방배6구역 무상양도 관련 추진 현황>

- 2016.04.07. : 무상양도 관련 처리방안 개선 방침 시달(시→구)
- 2016.07.13. : 사업시행계획인가
 - 시공사 선정 총회 시까지 서울시 무상양도 방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조치계획 제출토록 조건 부여
- 2017.05.26.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정산에 관한 제소전 화해 신청(조합→구)
 - 방배6구역 조합 시공사 선정 총회(2016.12.10.) 시 의결
- 2017.05.~2018.02. : 제소전 화해 조서 관련 협의(조합↔구)
- 2017.12.18. :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지적사항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와 용적률 재검토)
- 2018.02.21. : 제소전화해 조서 확정

- 2025.11.24. : 구유재산 매매계약서 체결(조합↔구)
- 2025.11.27. : 구유재산 유상매입금 부과(구→조합)

- 매각하려는 구유재산은 도로이며, 매각 면적은 총 6,184.6㎡로 서울시 무상양도 업무처리 방침[행정2부시장방침 ('16.4.7.)]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인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면적 중 일부(4,274.7㎡)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었기에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전체 무상양도했을 때를 전제로 용적률 추가 완화(사업시행인가 246.25% 대비 약 20%)분에 상당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으로 조합과 제소전화해를 진행하였고, 2018. 2. 21. 화해조서 확정을 통해 용도폐지되는 기존정비기반시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547,406,473원[(기존 정비기반시설 토지가액 + 용적률 인센티브 환산금액)-신설정비기반시설의 비용(토지가액+공사비)]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액 납입되었음.
- 한편, 2025년도 예산액이 미편성되었는데, 이는 제소전 화해 조서 확정 이후 구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세입 시기를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건축과】

■ 소송비용: 징수결정액 19,838천원(6,624천원+13,214천원)

-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A주식회사로부터 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반려 처분취소청구사건과 공사중지명령취소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

사 건 명	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	공사중지명령취소청구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취하일	2024.10.24. (원고가 소취하서 제출)	
소송비용	2,217,642원	4,406,970원

-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이던 건물에 대해, 허가 높이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운영지침」상 허용높이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에게 지침 위반 관련 의견조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설계변경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설계변경 반려 및 지상층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지자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
- 그러나 서울시의 조치로 이 사건 건물 신축 지역이 서울시의 조치에 따라 최초 허가 받은 높이로 건축할 수 있게 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어 원고는 소송을 종료하기 위해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가 소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서초구도 소취하에 동의함.
- 한편 해당 행정소송의 소송비용은 소를 취하한 원고가 부담함에 따라 원고로부터 각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총 6,624,612원의 징수가 결정되어 납부가 완료되었음.
- 또한 원고 B와 C가 서초구청장을 당사자로 하여 건축허가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 청구 취지는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건축허가에 대해 코오롱 스포렉스 체육시설 회원들의 의사 반영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한 건축허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체육시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허가와의 관련 여부와
원고인 체육시설 회원들에게 위 건축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
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즉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임.

- 2023. 8. 18. 1심 각하(서초구 승), 2023. 9. 21. 원고측 항소,
2024. 5. 26. 2심 기각(서초구 승), 2024. 7. 18. 원고측 상고,
2024. 9. 13. 3심에서도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서초구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이 확정되었고, 패소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13,213,794원(1인당 6,606,897원)을 부과하였고, 완납된 상태임.

■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예산액 448,576천원/징수결정액 1,378,752천원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
축주 등 시정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주어 공사의 중지를 명하
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
·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
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2025년도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은 총 241건이 부과되어 징수
결정액은 1,378,752천원인데, 이 중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이 173건(408백만원)을 차지할 정도로 위법하게 건축물을 해체, 증
축, 수선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관 부서는
현장 관리와 순찰 활동 등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단속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체납액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년	448,576	241	1,378,752	185	1,182,386	56	196,366	85.76
2024년	523,864	214	805,880	160	546,091	54	259,789	67.76
2023년	665,329	195	682,786	120	313,937	75	368,849	45.98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위 3건>

순위	소재지	부과액(원)	부과사유
1	서초동 1573-14	767,035,260	무단증축
2	반포동 1-1	52,752,580	사전입주
3	잠원동 76-4	26,182,280	무단용도변경

- 한편 체납 건수는 징수결정액은 241건에 1,378,752천원인데, 체납액은 56건으로 미수납액은 196,366천원이고 징수율은 85.8%로 전년도보다 징수결정 금액이 증가하였음에도, 체납액은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이는 실효성 높은 징수 관리를 통해 세입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지표라 할 것임.
- 다만, 편성된 예산현액 448,576천원 대비 실제 징수결정액은 1,378,752천원으로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서초동 1573-14번지 무단증축에 대해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됨. 2023년도와 같이 세입 예산액과 실제 징수액을 유사하게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도 실적과 현장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더욱 명확하고 합리적인 세입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체납 시에도 가산금이 없어 체납자들의 납부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고액의 액수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 또는 분할납부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상습 위반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가중 부과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통해 불법건축 행위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임.

【공동주택관리과】

■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430,909천원(징수율 75.9%)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무단 증·개축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반건축물의 자진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이 때 이행강제금의 20%는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으로 귀속됨(p.189, 이행강제금 참조).
-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총 2,069건 1,788,081천원이 부과되었고, 이 중 체납 건수는 총 250건이며, 체납액은 430,909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788,081천원 대비 75.9%가 징수되어 전년도와 징수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무허가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체납액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년	1,489,541	2,069	1,788,081	1,819	1,357,172	250	430,909	75.9
2024년	1,603,382	2,048	1,838,644	1,826	1,366,515	222	472,149	74.3
2023년	2,681,815	1,903	2,482,218	1,658	1,652,440	245	829,778	66.6

※ 2024년부터 건축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이행강제금은 세금 또는 과태료와 달리 납기 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아 납부 유인이 부족하고, 무허가위반건축물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 및 이행강제금 납부에 대한 저항심리 등으로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게다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납부 여력 저하와 더불어, 경기 위축 및 물가 상승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해 납부대상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체납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있으며, 압류 등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안내하여 납기 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임.
- 반복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아가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 과태료:

예산액 230,000천원/징수결정액 361,600천원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2025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 과태료 위반은 총 17건으로 무단양도 14건, 양도미신고 2건 등이 있었고, 징수결정액은 361,600천원이며, 17건 모두 자진 납부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으로 부과·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음.

<2025년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

위반사유	징수건수	징수금액	세부 위반내역
무단양도	14건	336,000	구청장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 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주택당 과태료 3,000만원(자진납부 시 2,400만원)
용도변경	1건	24,000	임대 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음 (임대주택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무단 변경) 주택당 과태료 3,000만원(자진납부 시 2,400만원)
양도미신고	2건	1,600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주택당 과태료 100만원(자진납부 시 80만원)

<최근 3년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 과태료 과징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체납액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년	230,000	17	361,600	17	361,600	0	-	100
2024년	200,000	22	332,000	22	332,000	0	0	166.0
2023년	325,000	83	652,490	67	224,700	16	427,790	69.1

- 한편 편성된 세입 예산액은 230,000천원인 반면에 징수결정액 361,600천원으로 1억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위반 과태료는 위반양태 및 위반횟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부과되며, 다른 과태료에 비해 부과 액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유와 발생 빈도는 사전 예측이 불가하여 예산추계액과 실제 징수결정액 간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부동산 정책 및 시세, 금리 상황에 따라 주택보유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일부 민간임대사업자가 본인의 유불리를 고려해 과태료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임대유기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무단으로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부동산 정책 변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부동산정보과】

■ 지적측량기준점복구비: 미수납액 11,906천원(징수율 65.1%)

-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의미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누구든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

려는 자는 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을 신청해야 하고, 이 때 지적측량기준점 망실 및 훼손에 대한 원인행위자 규명 후 재설치 비용을 부과함.

- 2025년도 지적측량기준점 복구비 부과 건수는 총 175건으로 전년도 147건 대비 28건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징수결정액 또한 25,720천원에서 34,084천원으로 증가함. 이는 관내 재건축사업의 활발한 추진에 따른 지적기준점 망실 발생과 상·하수도 및 도로 굴착 등 각종 공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주요 부과 대상은 수도·도로·난방 등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구청 소관부서 및 공공기관인 것으로 파악됨.

<2025년도 지적측량기준점 복구비 부과 내역>

구분	총계 (기준점 수)	도근점(철제) (180,400원)	보조점(황동) (683,100원)	부과금액(원) (VAT포함)
도로과(굴착복구팀)	28	27	1	5,553,900
도로과(도로계획팀)	3	3	-	541,200
도로과(도로교통시설팀)	6	6	-	1,082,400
도로과(보도관리팀)	8	8	-	1,443,200
도로과(포장관리팀)	49	49	-	8,839,600
물관리과	64	64	-	11,545,600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2	-	2	1,366,200
한국지역난방공사	2	2	-	360,80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3	1	2	1,546,600
강남수도사업소	6	6	-	1,082,400
남부도로사업소	4	4	-	721,600
계	175	170	5	34,083,500

- 한편 체납액 11,906천원은 지적측량기준점 망실 원인행위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 복구비 부과 대상인 도로과(도로계획팀 541,200원, 도로교통시설팀 1,082,400원, 보도관리팀 1,443,200원, 포장관리팀

8,839,600원)의 2025년도 관련 예산이 소진에 기인한 것으로 2026. 4. 납부 완료하였음.

- 아울러 예산액이 매년 3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비는 지적기준점의 망실 여부 및 발생 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연간 약 15~20점의 망실을 예상하고 1점당 복구비 약 20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300만원의 세입 예산을 추계한 것임.
- 다만,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시기나 대대적인 상·하수도 공사 등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관성적 편성에서 벗어나 이러한 특수 요인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한층 높여야 할 것임.

■ **소송비용: 21,610천원(17,181천원+4,429천원)**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권리자명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하여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됨.
- 해당 사건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과 관련하여 원고가 서초구청장을 당사자로하여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 원고 서초구청장은 피고가 2014. 12. 30.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2022. 9. 21. 피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그러나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 2023. 12. 11.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였고 1심 기각, 2024. 7. 5. 원고 항소장을 접수하였으나 2심 기각, 2024. 7. 18. 원고 상고했으나 3심에서 최종 기각 판결됨에 따라 서초구가 승소함.
- 이에 서초구는 본안사건(과징금부과처분취소)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사건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17,181,165원으로 결정하였으며, 피신청인(원고)측이 즉시항고 포기함에 따라 피고측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소송비용 17,181,165원이 최종 확정되었고, 납입 완료됨.

○ 원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미등기 상태인 신원동 496-6번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음.

-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소송은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같은 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행정청의 직원이나 변호사에게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본 사건은 서초구청장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된 것임.
-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요청한 토지는 6·25전쟁으로 관련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토지의 면적·소유자 등을 기록한 토지대장만 복구되고, 토지의 실제 위치와 경계를 표시하는 지적도는 복구되지 않아 현재 어느 위치의 토지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따라서 서초구

는 소유권을 확인할 대상 토지의 위치와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의 각하를 주장함.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 패소로 본안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이 신청되었고, 2024. 9. 4. 법원은 피신청인(원고)이 신청인(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4,428,736원으로 확정하였음.
- 본 소송은 국가를 피고로 한 소송이긴 하나, 서초구가 소송수행기관으로서 소송을 직접 수행하면서 변호사 착수금 등 관련 비용을 구 예산으로 부담하였음. 이후 재판 승소에 따라 법원에서 원고 부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2026. 6. 전액 완납됨.

■ 개발부담금: 징수결정액 163,826천원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토지면적 660㎡ 이상에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

- 4)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 1. 14.>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에 대한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함.

●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 개발이익(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부담률(계획입지사업* 20%, 개별입지사업** 25%)

* 계획입지사업 : 택지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 개별입지사업 : 지목변경수반사업 등

- 2025년도에는 염곡동 67-3번지에 소재한 면적 944㎡ 토지의 지목을 “종교용지”→“대”로 변경하는 지목변경수반사업 1건이 시행됨에 따라 2025. 3. 4. 총 1건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327,652,920원을 부과하였고, 2025. 9. 4. 징수 완료됨.

<최근 3년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과건수	총 부과액	구 귀속액 (징수결정액)	구 수납액	비고
2025년	1건	327,653	163,826	163,826	염곡동 67-3
2024년	-	-	-	-	부과실적 없음
2023년	1건	355,894	177,947	177,947	국·구 각 50% 귀속

- 한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세외수입 징수액은 163,826천원임.

안전건설국

【가로행정과】

▣ 소송비용: 징수결정액 28,924천원(24,511천원+4,413천원)

- 원고 G, H, J는 서초구 내곡동 333-2(2,856㎡) 중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450㎡에 대하여 2022. 9.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2024. 1. 24. 1심 기각(서초구 승),
2024. 9. 25. 2심 기각(서초구 승), 2024. 7. 18. 원고측 상고,
2024. 11. 28. 3심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서초구가 승소하였음.
이는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행정재산”이라는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이상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임.
- 따라서 서초구는 피신청인 3명을 대상으로 본안사건(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소가에 대한 변호사 보수 24,488,400원 및 인지대·송달료 23,046원으로 24,511,446원을 판결하였으며, 피신청인(원고)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 1인당 각 8,170,482원의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었으며, 전액 완납됨.
- 본 사건은 서초구 우면동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가 인접한 하천부지(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 연장을 거부당한 후, 다시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어 서초구청장을 대상으로 공유수면 점용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 원고는 서초구 우면동 191번지 외 2필지 주택에 거주하며 추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토지 인접 하천부지는 1990년부터 원고의 배우자(고인)가 최초 정원 목적으로 하천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해 왔으며, 2011년 12월 6일 배우자 사망 후 원고가 주택 및 토지를 상속받아, 2012년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점용허가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였음.
- 이후 원고가 2014년 4월 점용·사용허가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서초구청장은 같은 해 5월 사방지 및 자연재해 위험지구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선행 거부처분)하였고, 2015년경부터는 무단점용을 이유로 원상회복 요구와 함께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기 시작함.
- 원고가 2020년 9월 다시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서초구청장이 2023년 1월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2023.1.25. 공유수면(하천부지) 점용불허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고,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년 7월 원고가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 그러나 1심(2024. 9. 13.) 법원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며,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러한 후발적 사정만으로는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서초구가 승소하였음.
- 이후 원고는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4. 28.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서초구 내부 검토 결과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된 소송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소취하에 동의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됨.

- 따라서 본안사건 승소에 따라 서초구는 피신청인(원고)를 대상으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4,412,752 원으로 판결하였으며, 피신청인(원고)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소송 비용액이 확정되었으며, 완납 처리됨.

■ 시유재산변상금: 미수납액 2,344천원(징수율 82.3%)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14조는 특별시장은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도로법」·「하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도로, 하천, 구거 등 서울시에서 위임한 시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 부과하는 것으로 2025년도에는 시유지 무단점유 총 48건(도로 32건, 하천 15건, 구거 1건)에 대해 26,458,46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변상금의 50%를 구 수입으로 귀속시킴에 따라 징수결정액은 13,229천원임.

<최근 3년간 시유재산변상금 부과·징수·체납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체납액		징수율 (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년	0	48	13,229	40	10,886	8	2,344	82.3%
2024년	0	51	17,158	44	14,733	7	2,424	85.9%
2023년	0	42	12,023	40	11,655	2	368	96.9%

- 한편 시유재산변상금에 대한 예산액이 미편성 되었는데, 이는 국/시/구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은 예산액 135,284천원으로 통합하여 편성했기 때문이며, 실제 부과 시에는 각 재산별로 세목을 구분하여 세외수입징수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 **공유수면변상금: 미수납액 19,735천원(징수율 70.2%)**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구청장(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하천, 구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하는 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함.
- 공유수면변상금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하는데, 점용료·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산정함. 2025년도에는 총 54건(하천 18건, 구거 36건) 대해 66,121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이 중 46건에 대한 46,387천원은 징수가 완료되어 징수율은 70.2%임.

<최근 3년간 공유수면변상금 부과·징수·체납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체납액		징수율(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년	0	54	66,121	46	46,387	8	19,735	70.2%
2024년	0	56	66,585	48	48,246	8	18,338	72.4%
2023년	0	56	69,816	50	56,491	6	13,324	80.9%

- 공유수면변상금은 매년 징수결정액이 발생함에도 세입 예산액에 미편성되었는데, 이는 국/시/구유재산변상금에 통합하여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실제 변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각 재산별로 세목을 구분하여 세외수입징수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음.
- 다만,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징수액은 7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 비율이 매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세입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 및 관리 과정이 미온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32,445천원(징수율 26.7%)**

-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⁵⁾ 이행, 건설기계 불법주기 금지, 건설기계 등록표 가림 또는 훼손 금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건설기계사업의 개업·휴업·폐업·재개 신고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

5)

기종		연식	검사 유효기간
1. 굴착기	타이어식	-	1년
2. 로더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3. 지게차	1톤 이상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4. 덤프트럭	-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5. 기중기	-	-	1년
6. 모터그레이더	-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7. 콘크리트 믹서트럭	-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8.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9. 아스팔트살포기	-	-	1년
10. 천공기	-	-	1년

기종		연식	검사 유효기간
11. 향타 및 향발기	-	-	1년
12. 타워크레인	-	-	6개월
13.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	타이어식	20년 이하 20년 초과	1년 6개월
나. 노면파쇄기	타이어식	20년 이하 20년 초과	2년 1년
다. 노면측정장비	타이어식	20년 이하 20년 초과	2년 1년
라. 수목이식기	타이어식	20년 이하 20년 초과	2년 1년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	-	1년
바. 트럭지게차	타이어식	20년 이하 20년 초과	1년 6개월
사. 그 밖의 특수 건설기계	-	20년 이하 20년 초과	3년 1년
14. 그 밖의 건설기계	-	20년 이하 20년 초과	3년 1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9종류의 위반행위별 횟수에 따른 과태료⁶⁾가 부과됨.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미가입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7종류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48조 및 제36조에 따라 과태료⁷⁾를 부과함.

- 2025년도에는 건설기계 관련 법령 위반으로 총 81건, 44,23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위반 유형별로는 정기검사 미이행 등이 45건으로 과태료 31,577천원이 부과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 의무보험 지연가입 24건, 등록사항 변경 지연신고 7건, 불법주기·조종사면허 위반 등 기타 4건, 등록번호표 훼손·가림 1건 순으로 나타났음.

6)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단위:만원)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건설기계 정기검사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 제1호의2	10			30일 초과시 3일초과마다 10만원 가산/ 최고 300만원
건설기계사업 개·휴·폐업·재개신고 하지 않은 경우	거짓신고	법 제44조 제3항제9호	40	50	50	30일 초과시 3일초과마다 1차 1만원, 2차 2만원, 3차 3만원 가산 최고 40만원
	미신고		3	5	7	
건설기계 불법주기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12호	5	10	30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3호	50	70	10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 제1호의3	200	250	300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구분	보험종류	과태료금액 (단위:원)		
				10일 이내	10일 초과시 1일당 추가	최고금액
건설기계 의무보험 미가입	법 제48조 제3항제1호	영업용	대인1(책임)	30,000	8,000	1,000,000
			대인2(종합)	30,000	8,000	1,000,000
			대물	5,000	2,000	300,000
		자가용	대인1(책임)	10,000	4,000	600,000
			대물	5,000	2,000	300,000

<2025년도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위반유형별 부과·징수 현황>

(단위:건/천원)

위반사항	부과내역		징수내역		체납내역	
	부과	부과금액	징수	징수액	체납	체납액
계	81	44,236	59	11,791	22	32,445
등록사항의 변경 지연신고	7	1,072	7	1,072	-	-
번호판 훼손 및 가림	1	400	1	400	-	-
의무보험 지연가입	24	11,028	14	1,895	10	9,133
검사 등	45	31,577	33	8,264	12	23,312
기 타(불법주기, 조종사면허 등)	4	160	4	160	-	-

- 한편 과태료 부과 건수 81건 중 59건이 징수되어 건수 기준 실적은 약 73%에 이르나, 실제 징수액은 총 44,236천원 중 11,791천원에 그쳐 징수율은 26.7%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특히 체납액이 32,445천원에 달하고 있어 실제 징수된 과태료 건수 대비 확보되는 세입 비율의 격차가 큰데, 이는 상대적으로 고액인 과태료의 경우 징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게다가 예년에 비해 건설기계 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의 징수 부진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세입 확충을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 강화 및 적극적인 징수 대책 마련이 요구됨.

<최근 3년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체납액		징수율 (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년	16,874	81	44,236	59	11,791	22	32,445	26.7%
2024년	16,107	108	58,823	91	29,543	17	29,280	50.2%
2023년	19,830	100	32,113	81	20,567	19	11,547	64.0%

-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최근 3년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평균 부과액 28,600천원에 평균 징수율 59%를 적용하여 16,874천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16,107천원 대비 767천원(4.7%) 증액 편성한 것임.

【도로과】

■ 가로등 및 보안등 원인자부담금: 미수납액 4,360천원(징수율 20.4%)

-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구청장(도로관리청)은 재건축, 차량사고 등으로 인해 도로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이설 후 도로의 복구를 위한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2025년도에는 교통사고로 파손된 블라드 1개에 대한 원상복구비 255,000원, 차량 사고로 인한 보안등 1본의 임시조치(철거 및 설치) 비용 860,000원, 신축공사에 따른 보안등 2본 철거 및 재설치 비용 4,233,170원으로 총 3건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음.

<최근 3년간 가로등 및 보안등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체납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A)	부과액(B)		징수액(C)		체납액		징수율 (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년	6,400	3	5,475	2	1,115	1	4,360	20.4%
2024년	10,000	2	35,274	1	2,274	0	-	6.4%
2023년	11,900	16	314,928	7	21,163	0	-	6.7%

※ 2024년도 부과 2건 중 신축건물 관련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1건(33,000천원)은 세입 과목 변경에 따라 2024. 7. 1. 당초 부과분을 전액 감액한 후 '구특별,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으로 재부과함.

※ 2023년도에는 겨울철 도로공사 통제기간(Closing 11) 중 건축물 사용승인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정비비를 원인자부담금으로 우선 징수한 후, 통제기간 이후 정비시 신축 건물 관련 원인자부담금 징수액 303,273천원 중 293,765천원을 환급하였음.

- 이 중 2건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정상 징수되었으나, 1건은 법인의 재정 악화로 체납되었으며, 2026. 5. 최초 본세 4,233,170원과 가산금 126,990원을 합산한 총 4,360,160원을 납부 완료함.

보건소

【건강정책과】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73,176천원(징수율 80.5%)

-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2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가 금연시설인 공공기관의 청사, 고속버스터미널, 초·중·고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총 9,645건으로 징수결정액은 375,832천원이며, 이 중 1,391건이 체납되어 미수납액은 73,176천원으로 징수율은 80.5%임.

<최근 3년간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부과·징수·체납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체납액		징수율 (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년	424,641	9,645	375,832	8,254	302,656	1,391	73,176	80.5%
2024년	433,929	12,599	494,233	10,472	386,341	2,127	107,892	78.1%
2023년	454,809	14,779	554,845	12,034	442,374	2,241	112,471	79.7%

- 전년대비 부과건수가 △23.45% 감소하였는데, 2025. 9. 2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로 모바일 전자정부 시스템이 중단되어 현장단속이 불가하여 전년대비 과태료 부과건수가 감소함. 이후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수기단속을 실시하였으며, 2026. 7. 13. 시스템 복구가 완료됨.
- 한편 최근 3년간 징수율 추이를 살펴보면 80%를 상회하는 수준임. 이는 경제능력이 없는 10대~20대의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이 체납 발생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금연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50%감경 또는 전액 면제)받을 수 있어 단속건수 대비 징수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위생과】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28,714천원(징수율 63.0%)

- 판매 목적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하고, 식품접객업 등 영업자는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식품관련 종사자는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는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7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
- 2025년도에는 '24년 식품위생교육⁸⁾ 미수료 360건, 건강진단⁹⁾ 미실시 5건, 집단급식소의 보존식¹⁰⁾ 미보관 1건, 소비기한 경과 등 위

8)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9)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건 등 총 38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77,543천원임.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체납액		징수율 (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년	40,500	383	77,543	296	48,830	120	28,714	63.0%
2024년	36,000	343	65,103	280	49,381	63	15,722	75.9%
2023년	36,000	446	90,117	365	60,592	81	29,525	67.2%

- 편성된 세입 예산액은 40,500천원이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77,543천원으로 차이가 큰데, 이는 전년대비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안내 및 공지를 철저히 하여 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당초 예산을 낮게 편성하였으나, 교육 미이수자가 예상보다 많아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을 상회하게 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및 징수액 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별로 다소 편차는 있으나 징수결정액이 편성된 세입예산액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징수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입예산액이 실제 징수액보다 낮게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액과 실제 징수결정액이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겠으나, 최근 3년간의 부과·징수 실적과 징수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징수 가능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세입 추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10)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

으며, 향후 예산 편성 시 과거 징수실적 및 연도별 변동 추이를 충분히 반영한 현실성 있고 정확한 세입예산액을 편성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나아가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안내 및 공지를 철저히 하였음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안내 및 공지가 실질적인 교육 이수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육 대상자별 안내 및 홍보 방법을 재점검하여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15,600천원(징수율 50.6%)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함.
- 이를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 2025년도에는 ‘24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163건이며, 징수 결정액은 31,560천원임.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징수·체납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체납액		징수율 (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년	12,000	163	31,560	93	15,960	70	15,600	50.6%
2024년	12,000	162	31,479	102	17,094	60	14,385	54.3%
2023년	8,000	91	17,516	64	10,891	27	6,625	62.2%

- 한편, 편성된 세입예산액은 2024년도와 동일한 12,000천원으로 실제 징수결정액과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데, 이는 과태료 부과 규모에 대한 현실적인 추정과 반영이 미흡하여 예산액을 낮게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추후 과태료 부과 현황 분석을 통해 타당한 예산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과태료 징수율이 매년 50%를 웃도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부과된 과태료가 실제 징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실질적인 체납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의료지원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징수결정액 22,534천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를 투약¹¹⁾해서

11)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안 되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됨.

- 2025년도에는 업무외 목적 사용 1건,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3건,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7건 등 총 1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22,534천원임.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징수·체납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체납액		징수율 (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년	2,500	12	22,534	12	22,534	-	0	100%
2024년	2,500	8	23,025	8	23,025	-	0	100%
2023년	5,000	2	900	2	900	-	0	100%

- 2025년도 신규로 부과된 과징금 11건의 징수결정액은 18,000천원이고, 2024년도에 부과된 과징금 13,500천원은 3개월 간격으로 3회[1차분 2024. 9. 11. 4,500천원, 2차분 2024. 12. 11. 4,575천원(본세 4,500천원, 이자 75천원), 3차분 2025. 3. 11. 4,534천원(본세 4,500천원, 이자 34천원)]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6. 13., 2024. 2. 6., 2025. 3. 18.>

1.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분할 부과되었으며, 현재 해당 과징금은 모두 완납되어 납부가 종료된 상태임.

- 한편 본예산에 편성한 세입 예산액 2,500천원 대비 실제 부과한 과징금은 22,534천원으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남.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서울시와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 기획·합동점검 실시를 비롯하여, 검찰청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범죄 처분과 관련하여 업무 외 목적의 마약류 취급, 처방전(진료기록부) 미기재,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를 위반한 기관에 대하여 4건을 통보받음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 건수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위반내역별 부과 건수>

연번	위반내역	위반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과징금(천원)		비고
			본세	이자	
1	저장 규정 위반하여 마약 보관	법 제15조	900		서울시
2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마약류 취급내역 기한내 변경미보고	법 제32조제1항, 법 제11조	5,400		서울시
3	마약류 취급내역 거짓보고	법 제11조제1항	2,700		자체
4	마약류 사용 진료기록부 미기재, 업무 외 목적 마약류처방전 발급	법 제32조제1항, 법 제5조 제1항	4,500	34.17	검찰청
5	마약류취급내역 미보고	법 제11조제1항	450		식약처
6	마약류취급내역 미보고	법 제11조제1항	450		검찰청
7	사용기간 지난 마약류 사용	법 제38조 제2항	900		자체
8	저장시설점검부 미작성	법 제38조제3항	450		자체
9	마약류취급내역 미보고	법 제11조제1항	450		검찰청
10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투약(진료기록부 미기재)	법 제32조제1항	5,400		검찰청
11	마약류 취급내용 미보고	법 제11조제1항	450		식약처
12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기한 위반 및 저장시설 정기점검 미실시	법 제11조제1항 법 제38조제3항	450		식약처

■ **의료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5,210천원(징수율 90.3%)**

- 「의료법」을 위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보고¹²⁾하지 않거나, 구청장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신고¹³⁾하지 않고 설치·운영 경우에는 같은 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
- 2025년도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미제출 55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미신고 등 5건 등 총 60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53,640천원으로 이 중 5건이 체납되어 징수율은 90.3%임.

<최근 3년간 의료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체납액		징수율 (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년	2,500	60	53,640	55	48,430	5	5,210	90.3%
2024년	2,500	3	3,400	3	3,400	-	0	100%
2023년	2,500	5	4,000	5	4,000	-	-	100%

- 12)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12. 29.>
- 13)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②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나아가 「의료법」(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공포, 2021. 3. 30. 시행) 제45조의2의 신설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이에 2021년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제도 시행 초기 4년간('21~'24년) 미이행 의료기관에 대한 누적 과태료를 일괄하여 부과한 것이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 징수결정액이 큰 차이가 발생한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임.
- 한편 누적 과태료를 2025년도에 뒤늦게 일괄하여 부과하였는데, 이는 비급여 보고 업무가 2023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제출 방식이 변경되어 안내 통지서 미수령, 최종 제출 누락 등 행정 혼선과 민원이 발생하였음. 또한 제도 초기 단순 착오자와 고의 미제출자를 구분할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자치구의 자체 판단이 불가피하였으며, 성급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및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분쟁을 행정적 분쟁을 우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판단됨.
- 이후 제도 시행 초기의 행정 혼선과 제출 방식에 대한 착오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처분 기준 및 최종 대상자 재확인 절차가 내부적으로 정립됨에 따라, 2025년 누적 미이행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일괄하여 실시하게 된 것임.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서초구 사회조사 실시):

사고이월 44,000천원, 집행잔액 10,000천원

- 본 사업은 「통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서초구 사회환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구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통계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임.
- 2017년 제1차 사회조사를 시작으로 2019년과 2023년에 걸쳐 총 3차례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 통계의 시의성을 높이하고자 통계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20,000천원의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10,000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서초구 사회조사 실시 용역 세부 예산 집행내역>

구분	내역	금액(원)
노 무 비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7명	13,376,678
경 비	- 조사원(50명) 및 검증 수당 등 : 42,920천원 - 표본 설계, 설문 프로그램 설계, 태블릿 이용 및 통신비(50대), 보고서 제작비 등	80,919,636
일반관리비	- (노무비+경비)×3%	2,828,889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2.95989%	2,874,797
부 가 세	- 10%	10,000,000
합 계		110,000,000

- 다만, 44,000천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는 1차 추경을 통해 예산이 편성되면서 가능한 신속한 사업의 추진으로 연내 용역을 완수하고자 8월에 착수하였으나, 사회조사 문항 설계과정에서 정책 활용도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 및 문항을 검토·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약기간보다 문항 확정에 추가 기간이 소요됨.
- 이에 따라 준공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본조사 완료 후 실시하는 자료 내검·검증, 통계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후속 공정의 충분한 수행기간을 확보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신뢰성 및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잔금 지급 등을 위한 예산 일부를 사고이월한 것으로 보임.

※(당초계약) 2025.8.22~2025.12.31.→ (변경계약) 2025.8.22.~2026.3.31.

<2025년 서초구 사회조사 용역 과업개요>

- 조사기간 : 2025. 8. ~ 2025. 12. (※본조사 : 2025.12.1.~2025.12.24.)
- 조사대상 : 관내 2,000가구 (가구주 및 만 15세이상 가구원)
- 조사항목/문항수 : 12개 분야 82개 문항
 - ① 주거 ② 가구와 가족 ③ 보육 및 교육 ④ 소득과 소비 ⑤ 일자리
 - ⑥ 노후생활 ⑦ 보건 ⑧ 문화와 여가 ⑨ 교통 ⑩ 안전 및 환경
 - ⑪ 사회참여 ⑫ 공공행정
- 조사방법 : 조사원의 가구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

【세무관리과】

■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 집행잔액 117,808천원

-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 및 안정적인 세입 기반 조성을 위해 고지서·안내문 제작, 납세 편의 제공, 세정 홍보, 징수 업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577,619천원을 본예

산에 편성하였음.

- 세부 내역으로 구민 대상 세무설명회 및 세무상담 개최, 서초구 세무과 유튜브 채널 운영을 비롯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안내문 등의 인쇄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3,425천원, 모바일을 포함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388,520천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65,850천원 및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38,924천원 등이 계상되었음.

<예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내역
계	577,619,000	459,810,990	117,808,010	20.4	
사무관리비	73,425,000	59,156,680	14,268,320	19.0	세무설명회 및 상담운영 고지서·안내문·책자 제작
공공운영비	388,520,000	300,924,710	87,595,290	22.5	우편요금, 통신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00,000	5,021,940	378,060	7.0	집행잔액
특정업무경비	65,850,000	55,783,660	10,066,340	15.3	직원 세무직무수당
출연금	38,924,000	38,924,000	0	0.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자산및물품취득비	5,500,000	0	5,500,000	100.0	자동차세 환급 키오스크 설치 (미집행)

- 전년대비 10%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총 117,80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세무설명회가 목표 횟수 8회보다 1회 미개최되었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한 카카오톡 발송 신규 도입으로 고지서 제작 및 구매 등 용역 소요가 줄어들어 사무관리비 14,268천원이 불용되었음.
- 아울러 전년대비 등기우편 약 3,000건, 일반우편 약 50,000건의 발송량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모바일을 활용하여 체납 지방세 고지서를 체납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으로 송달 체계를 개선함에 따른 것

으로 이에 따라 우편발송 비용이 절감되어 공공운영비 87,595천원이
 불용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최근 3년 등기우편/일반우편 발송 건수(집행예산)>

(단위 : 건, 원)

연도	구분	단가(기본)	발송건수	집행금액	비고
2025년	일반	430	637,426	271,943,220	
	등기	2,830	4,983	13,943,540	
	합계	-	642,409	285,886,760	
2024년	일반	430	692,461	282,252,668	
	등기	2,530	8,512	59,416,300	
	합계	-	700,973	341,668,968	
2023년	일반	430	720,251	268,300,980	
	등기	2,530	8,827	64,203,130	
	합계	-	729,078	332,504,110	

- 한편 모바일 우편 알림문자 발송과 더불어 2024년도부터는 카카오톡
 고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비용은 건당 최대 110원(부가세
 포함)으로 수신 88원, 전자서명 22원이며, 발송 건수가 아닌 실제 수신
 건수 및 전자서명 건수를 기준으로 정산함.

<최근 3년 모바일우편 발송 건수(집행예산)>

(단위 : 건, 원)

연도	구분	발송건수					집행금액
		총 건수	지방세 환급	지방세 체납	세외수입 체납	자동차세	
2025년	카카오톡	406,439	8,994	278,775	118,670	-	11,582,500
	알림문자	8,014	-	-	5,151	2,863	1,011,780
	합계	414,453	8,994	278,775	123,821	2,863	12,594,280
2024년	카카오톡	660,638	-	660,638	-	-	16,317,370
	알림문자	14,640	1,450	-	9,975	3,215	1,685,150
	합계	675,278	1,450	660,638	9,975	3,215	18,002,520
2023년	카카오톡	-	-	-	-	-	-
	알림문자	41,270	5,144	30,693	2,049	3,384	4,325,920
	합계	41,270	5,144	30,693	2,049	3,384	4,325,920

- 더불어 직원의 육아휴직 등으로 정원 대비 실근무 인원이 감소하여 특정업무경비 10,066천원이 불용되었고, 자동차세 환급 키오스크 설치를 위해 신규 편성했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500천원은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세무종합시스템 연계의 어려움 등이 확인되었고, 방문 환급신청 건수도 감소하고 있어 설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함에 따라 전액 미집행되었음.

공간혁신국

【교통행정과】

■ 대중교통 환경개선: 집행잔액 130,100천원

-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승차대, 버스정보단말기(BIT), 표지판, 의자 등 편의시설물의 제작·구매,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폭염과 한파 시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리풀 쿨링·온돌의자, 이글루, 서쿨레이터, 열선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총 1,168,03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2025년도에는 마을버스 버스정보단말기(BIT) 8개소 신설 및 21개소 교체를 비롯하여 쿨링·온돌의자 14개소, 서리풀 시원이(마을버스승차대 서쿨레이터) 28개소, 서리풀 이글루 3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존 시설물(마을버스 승차대 55개, BIT 192개, 쿨링온돌의자 282개)에 대한 유지관리와 마을버스 표지판 등 편의시설물 387개에 대한 전수조사·일제정비·청소용역을 수행하였음.

<예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1,168,035,000	1,037,935,450	130,099,550	11.1
사무관리비	4,000,000	3,955,000	45,000	1.1
공공운영비	138,019,000	102,464,080	35,554,920	25.8
시책업무추진비	2,420,000	2,416,700	3,300	0.1
시설비	1,023,596,000	929,099,670	94,496,330	9.2

- 총 130,100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공공운영비 25.8%가 불용된 것은 날씨와 일조량의 영향으로 쿨링·온돌의자 300개소 등 정류소 편의시설물의 전기요금이 각각 상이함에 따라 35,555천원의 잔액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폭염 및 한파 심화와 기온 변동폭 확대에 대비하여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시설비 94,496천원의 집행잔액은 계약 낙찰차액 40,695천원을 비롯하여, 예산 절감액, 그리고 옥외 정류소 편의시설물의 긴급 보수에 대비하여 편성한 유지관리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이 감소함에 따른 유보액 28,251천원과 지출잔액 25,551천원임.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운영: 집행잔액 16,795천원(불용률 5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을 위해 32,9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용도지역 상향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서울시 규제 완화 건의와 관련 절차 협의 진행을 비롯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과 관련된 위원회 심의, 자문회의, 열람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

<예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32,900,000	16,105,350	16,794,650	51.1%
사무관리비	20,500,000	4,573,350	15,926,650	77.7%
시책업무추진비	12,400,000	11,532,000	868,000	7.0%

- 총 예산액 중 사무관리비의 77.7%가 불용되었는데, 이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와의 협의과정 지연(반대 의견 등)으로 인해 신문 광고료를 지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15,927천원이 미집행된 것이 주된 사유임.

■ 서초구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고이월 390,000천원, 집행잔액 10,000천원

- 현재 서초구청사 부지는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연접한 양재환승주차장도 합리적 관리 방안이 검토되는 등 시설별 개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검토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 연계 구상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따라 구청사, 국립외교원, 광역철도(GTX-C), 양재고등학교 등 주요 거점 도시계획시설 간 연계가 가능한 공간구상을 계획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혁신구역¹⁴⁾ 지정

14)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①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4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을 위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구청사 부지 약 23만㎡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예산현액은 4억원으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편성된 예산은 아니며, 2025. 9.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 편성되었으며, 2025. 11. 용역 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음.

※ p.243 일반예비비 지출 내역 참고

- 예비비 사용 승인 시기보다 용역 착수가 늦어진 것은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로 추진하였으나 단독응찰로 유찰되었기 때문임.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7호, 2025. 6. 27. 발령, 2025. 7. 1. 시행)에 따라 2025. 12. 31.까지 1회 유찰 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단독응찰 업체의 사업수행 '적격'으로 의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3.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도시혁신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5. 제83조의3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6. 도시혁신구역 내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3.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정비 효과
 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한편 낙찰차액 10,000천원을 제외한 전액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과업의 수행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른 것으로 2026. 1. 선금 195,000천원을 지급하였음. 그러나 한번 사고이월된 예산은 더 이상 이월할 수 없으므로 준공기한을 준수하여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나아가 서초구청사 복합개발사업에 환승센터가 포함됨에 따라, 환승센터 건립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광역교통계획 주관 부서인 서울시교통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고, 서울시에서는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서 내용은 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었음. 향후 공간재구조화계획안이 작성되면 서울시 도시공간전략과와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임.
- 아울러 2026. 8.~10.까지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¹⁵⁾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 11. 용역을 준공할 계획임.
- 덧붙여 해당 용역은 『서울시 공간혁신구역 관련 현안회의 결과』통보(“서울시 도시공간전략과-6848, 25. 7. 17.)에 따라 공공인프라과(구청사 복합개발계획 수립 및 민투법 절차 이행)와 도시계획과(공간재구조화 수립) 간에 역할이 분담되었음.

■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높이계획 재정비: 집행잔액 25,000천원(불용률 100%)

- 서울시는 2023. 7. 『서초로 지구단위계획(법원단지) 높이계획 일괄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재정비 관련』와 관련하여 서초구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우리 구는 “범원단지의 필지규모, 양호한 접도조건, 일반상업지역과 인접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높이계획을 종전 28m→40m로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서울시는 높이 변경 없이 2024. 6. 27.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통해 고도지구를 최종 폐지함.

- 이에 고도지구 폐지 이후 주변 여건과 밀도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높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초동 1702 일대의 약 113,70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높이계획을 재정비하고자 본예산 25,000천원을 편성하여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였음.
- 다만, 편성된 예산액 전액이 미집행되었는데, 이는 “서초구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재정비” 용역의 추진 과정에서 본 사업을 과업에 포함하여 수행함에 따른 것임.

■ 서초구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재정비:

사고이월 142,500천원, 집행잔액 25,000천원

- 서울시는 2024. 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을 개정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녹지생태도심, 디자인 혁신, 스마트 도시 등 혁신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해 용적률 체계를 통합 및 단순화하고, 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지원하는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미래 도시 공간 정책과 공공성 중심의 방향으로 재편함에 따라, 우리 구는 서초로, 내방역 일대, 서초동 1342 일대, 사당·이수, 아파트지구(반포·서초·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변경된 용적률

체계를 반영하기 위해 본예산에 500,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사업 추진일정>

- 2025.05.: 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회 개최
- 2025.1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서울시 실무협의
- 2026.04.: 내방역 및 서초동 1342 구역 변경 결정고시(완료)
- 2026.08.~12.: 서초로 외 4개소 주민 의견청취, 시 도건위 심의 등 절차 추진
- 2026.12.: 용역 준공

- 한편 재정비 대상 7개소 중 2개소(내방역, 서초동 1342)는 변경 결정이 사전에 완료됨에 따라 2026. 8. 서초로 외 4개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높이계획 재정비”를 포함하여 추진 중임.
- 예산현액 500,000천원 중 332,50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용역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25,000천원을 제외한 142,500천원은 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잔금 집행 등을 위해 사고이월되었음. 다만, 사고이월된 예산은 더 이상 이월할 수 없는데, 준공예정이 2026. 12. 이므로 일정이 지체되어 연내 사업이 완공되지 못해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임.

【공공인프라과】

▣ 공공건축물 리뉴얼: 명시이월 150,000천원, 집행잔액 20,636천원

- 서초구는 “서초타운 및 GTX-C 환승센터 통합개발”을 서초구청사부지 14,853.9㎡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공간혁신구역(용적률 1,200% 이상)으로 변경하여, 연면적 약 246,367㎡ 규모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2029년~2034년,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1조 4,201억 원으로 추계되었음.

-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공공건축물 리뉴얼 예산이 전년대비 719.3%가 증가한 199,1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회기반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총 사업비가 2,000억 이상인 경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 필수 대상에 해당하므로 적격성조사 수수료 130,000천원 및 적격성조사 의뢰 시 제출해야 하는 '정책적 효과 분석 보고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20,000천원을 신규로 편성함에 따른 것임.

<사업 추진일정>

- '25.04.~06.: 민간제안서 접수
- '25.07.~10.: 대상시설 적정성 사전검토(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25.11. 25. : 대상시설 적정성 민간투자심의위원회(기획예산처, 원안가결)
- '26.01.~04.: 민간제안서 사전검토 및 보완(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26.05.26. : 민간제안서 철회 및 재접수(부대사업 기간변경 등)
- '26.06.18. : 민자적격성조사 의뢰(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26.08.~'27.04.: KDI 민자적격성조사 실시

- 한편 신규 편성된 시설비 150,000천원이 전액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는 당초 2025. 12. KDI 민자 적격성조사 의뢰를 추진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예정이었으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 과정에서 복합적인 사업구조 및 부대사업 기간 등 사업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제안서를 철회·보완하여 2026. 5. 26. 재접수하였음. 이후 관련 검토를 거쳐 2026. 6. 18.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해당 비용을 명시이월한 것임.

- 더불어 정책적 효과 분석 보고서 용역은 발주를 준비 중으로 2026년 중 용역을 완료하여 KDI 민자적격성조사 과정에 제출할 예정임.

- 아울러 기타보상금 20,000천원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당초 “GTX-C 환승코어 디자인 공모전 시상금”(대상 1명: 500만원, 최우수상 2명: 200만원, 우수상 3명: 100만원, 장려상 16명: 5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이나, 심사일정이 지연됨에 따른 것임.

<GTX-C 환승코어 디자인 공모전 사업 개요>

- 공 모 명 : 양재역 GTX-C 환승코어 네이밍 &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 2025. 11. 24.(월) ~ 12. 21.(일)
- 공모방법 : 공모전 자체 웹사이트 접수 (QR코드)
- 참가자격 : 만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개인만 참여)
- 공모내용
 - 네 이 밍 : 서초가 추구하는 문화, 예술을 담은 환승코어의 명칭
 - 아이디어 : 환승코어 공간에 대한 컨셉과 수익시설 배치·수익창출 아이디어
- 공모결과 : 1,702건 접수(네이밍 1,368건 / 아이디어 334건)
- 시 상 : 총37개 작품 선정, 상금 20백만원

- 이는 디자인 공모 결과 예상보다 많은 총 1,702건이 접수됨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당초 내부심사 및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방식에서 내부심사를 거쳐 직원·주민 온라인 투표(20%)와 전문가 심사(80%)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심사절차를 강화하면서, 심사일정이 2026년까지 이어져 연내 시상금 집행이 불가했던 것으로 2026. 2. 20. 심사결과가 확정되어 2026. 4. 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음.

<GTX-C 환승코어 디자인 공모전 사업 추진일정>

- '25.11.20. : 공모전 계획 수립
- '25.11.24.~'25.12.21. : 공모전 홍보 및 접수
- '25.11.26. : 공모전 운영 및 홍보 용역 착수('25.12.24. 용역완료)
- '25.12.21.~'26.01.30. : 1차 심사(공공인프라과 직원 내부심사)
- '26.02.09.~'26.02.12. : 2차 심사(직원투표 + 전문가 심사)
- '26.02.20. : 심사결과 보고
- '26.02.20.~'26.02.25. : 예산 전용 신청 및 승인
- '26.04.10. : 상금 지급

- 디자인 공모전에 많은 참여자가 몰려 호응도가 높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그러나 GTX-C 환승코어 디자인 공모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시상금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해당연도 11월 말에 수립한 것은 시기상 다소 늦은 감이 있음.
- 설령 심사체계를 강화하지 않았더라도 사업계획 수립 및 용역 완공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연내 사업을 마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됨.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인 만큼 사업에 대한 대강의 구상은 있었을 터,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보다 조기에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을 통한 미래수요 맞춤형 공공시설 공급:**

명시이월 140,000천원, 사고이월 46,240천원, 집행잔액 30,442천원

- 재건축사업·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부채납 예상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 수요조사 및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맞춤형 기부채납 공공건축물을 기획하고자 본예산 172,430천원,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2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총 186,240천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는데, 세부사업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 구체적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예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372,430,000	155,748,210	186,240,000	30,441,790	8
사무관리비	4,800,000	3,922,420	0	877,580	18.3
공공운영비	2,300,000	2,102,400	0	197,600	8.6
시설비	365,330,000	149,723,390	186,240,000 (명시)140,000,000 (사고)46,240,000	29,366,610	8

- ▶ 미래수요 맞춤형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관내 공공시설 수요·공급분석 미비 및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적정성 검토 기준안이 부재함에 따라 ① 관내 공공시설 현황분석 및 미래수요 대응 지역필요시설 조사, ② 기부채납 예상 사업 공공기여시설 제안, ③ 기부채납 공공시설(토지, 건축물, 설치비용) 적정성 검토 기준 마련을 위해 용역비 2억원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하였음.
- 다만, 제1차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2025년 8월 1차 입찰공고를 시작하였으나 유찰되었고, 이에 건설부문 참가 자격을 완화하여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연이어 유찰되었으며, 제3차 공고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12월 5일 용역에 착수함.
- 이처럼 연이은 유찰과 재공고 및 수의계약 절차에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초 예산 편성 시기보다 용역 착수가 지연되었고, '26. 11. 준공 예정으로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잔금 등의 지출에 필요한 예산 140,000천원을 명시이월한 것임.
- ▶ 기부채납 통합시스템 운영: ① 기부채납 수요·공급 DB 통합관리, ② 기부채납 정책결정협의회 운영, ③ 기부채납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지원, ④ 기부채납 건축물 건축기획 수립 용역(방배13구역 주택 재건축: 23,265천원,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51,073천원, 내방역역세권 장기전세사업: 22,209천원, 내방역역세권 활성화사업: 68,783천원)의 시행을 위해 본예산에 172,43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이 중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기부채납 시설 건축기획 용역”의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 반영에 따른 일정 변경으로 시설비 46,240천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2026. 9. 준공 예정임.

■ GTX-C 양재정거장 환승코어 조성: 계속비이월 718,086천원

- 양재 GTX C 환승거점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 1단계 환승코어 조성을 위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용역 810,000천원, 환승코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공정률 30% 반영) 678,000천원, 수직구 지하화 설계 용역 812,000천원을 계상하였음.

〈용역별 세부 추진일정〉

	2025		2026				2027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수직구 지하화	변경설계		수직구 지하화 공사 ('25.10.~'30.10.)							
환승코어	계획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변경인가		환승코어 공사('27.01.~'30.10.)			

- 한편 국토교통부의 양재역 환승코어 조성사업 시행 승인이 2025. 4. 통보됨에 따라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면서, “양재역 환승코어 설치 관련 사전설계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기본구상 설계용역”의 계약을 2025. 8. 체결하였는데, 해당 용역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비 718,086천원을 계속비 이월 조치한 것으로 보임.

〈용역별 추진 현황〉

- '25.12.~'26.12. : GTX C #22번 수직구(청사내) 지하화 변경 설계
- '26.06.~'27.03. : 환승코어 실시설계 추진 중
 - '26.6월 : 실시설계(상세설계)를 위한 위·수탁 협약 체결(서초구-지티엑스씨)
 - '26.6월 ~ '27.3월 : 양재역 환승코어 실시설계 용역

- 2026. 8. 기준 환승코어 기본구상 용역은 완료('25.08.~'26.03.)되었으며, 현재 수직구 지하화 변경 설계 및 환승코어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음.

■ 상습정체지역 해소: 사고이월 54,966천원

- 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통데이터 구축 및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교통현황 파악을 위한 교통량 및 차량속도 수집·조사하고, 철도 도입 등을 위한 업무 추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하기 위한 본예산 89,479천원 및 용역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비비 사용승인으로 54,966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44,445천원임.

※ p.244 일반예비비 지출 내역 참고

- 2025년도에는 이수교차로 등 주요교차로 및 고속도로IC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고, 구도 44개축 154구간에 대한 차량속도를 1~12월 수집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총 5회 개최하여 6건의 안전을 심의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예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144,445,000	88,673,640	54,965,900	805,460	0.6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17,079,000	17,055,940	-	23,060	0.1
사무관리비	9,800,000	9,800,000	-	-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600,000	4,542,500	-	57,500	1.2
연구용역비	112,966,000	57,275,200	54,965,900	724,900	0.6

- 한편 연구용역비 54,966천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는 당초 “위례과천선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분석 용역”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비비의 사용승인이 2025. 11. 19. 통보됨에 따라 연 내 준공이 어려워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위례과천선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분석 용역 과업개요>

- 과업목적
 - 민자사업(최초제안자 : 대우건설)으로 추진중인 위례과천선내 선바위역 추가 경유 필요성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 협의시 근거자료 활용
⇒ 민자제안안의 경우 4호선 선바위역 미경유로 환승편의 저하
- 과업범위
 - .역사시설 기술적 검토, 공사비 산출, 타당성 조사분석(경제성 평가)
 - .철도이용 수요분석,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 등

- 예비비 편성 후 용역을 발주(공고기간: 2025.11.28.~12.09.) 하였으나, 무응찰로 유찰되었고, 이후 재공고(2026.02.03.~02.13.)하였음에도 유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해당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를 하였으며, 사업수행 ‘적격’으로 의결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여 2026. 3. 용역계약 체결 및 착수가 이루어졌음.
- 2026. 8. 기준 용역이 진행 중으로 9월 준공 예정이며, 10월부터는 제출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에 선바위역 추가 경유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임.

【푸른도시과】

■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서리풀공원 명달로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사고이월 396,811천원

- 관내 산지형공원 중 한 곳인 서리풀공원 명달로 주변에 신규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과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 4. 서울시로부터 500,000천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서초동 1497-6 일대의 서리풀 공원 신규 산책로 입구 조성 및 휴게·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위한 사업방침을 수립하여 25. 5. ~ 7.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음.
- 다만, 실시설계용역이 종료된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2025. 10. 시설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이는 9. 2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화재 발생으로 계약 시스템에 차질이 발생하여 계약에 차질이 빚어졌고, 2025. 10. 14. 계약시스템이 복구됨에 따라 2025. 10. 16.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0. 17. 착공하였음.
- 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야외운동기구 4대, 테이블 및 파고라 약 1억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기탁받았으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025. 10. 29. ~ 11. 26. 관련 절차 및 서초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되었음.

〈서리풀공원 명달로 주변 산책로 기부시설물〉

연번	시설명	수량	비고
1	앉음벽	83.2m	기부(33.4m)
2	테이블	2개소	기부
3	1인용벤치	11개소	기부
4	파고라	1조	기부
5	야외운동기구 4종	1식	기부

- 다만, 국가 서버 화재발생에 따른 계약 지연, 기부시설물 협의 및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이행, 동절기 도래로 인한 공사 중단 등에 따라 연내 사업의 완공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한 것으로 '26. 4. 준공됨.

■ **공원유지관리(명시이월 1,262,665천원)**

① **뒷벌어린이공원 정비사업(2단계)**

- 방배동 821-1번지에 위치한 뒷벌어린이공원은 주민의 이용률이 높고 다양한 여가 수요가 있는 공간임에도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단계별 전반적인 정비가 요구됨.
- 이에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뒷벌어린이공원 재정비 기본설계용역비 50,000천원 및 주민참여예산으로 뒷벌어린이공원 정비 300,000천원을 편성함. 2025. 2. 20.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2025. 3. 10. ~ 8. 29. 기본(총괄) 및 실시설계용역(1단계)을 거쳐, 2025. 9. 9. 공사 발주를 통해 2025. 9. 29. 시설공사에 착공하였고, 12. 19. 공사를 준공함에 따라 1단계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음.

□ **뒷벌어린이공원 정비사업(1단계)**

- 사업기간: 2025. 2. ~ 12.
- 사업규모: **825.0m²** (전체 면적 5,194.8m²의 **15.88%**)
- 사업내용: 게이트볼장 1개소 및 운동기구(10종) 설치, 수목 및 초화식재 등
- 소요예산: 금350백만원(주민참여예산 300, 본예산 50)
- 집행예산: 290,048,810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6,375,700원
 - 폐기물처리용역비: 12,985,900원
 - 공사비: 230,687,210원(도급비119,755,930원, 관급자재비 110,931,280원)

- 이어서 1단계 정비사업 구간(825m²)을 제외한 공원 전체 면적을 재정비하기 위해 총 1,800,000천원(특별조정교부금 500,000천원, 특별교부세 400,000천원, '26년 본예산 9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단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광장 조성, 회랑형 쉼터 설치, 순환산책로 조성 등 1단계 정비사업으로는 부족했던 주민 편의 및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보강할 계획임.
- 다만,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가 '25년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시행이 어려워 교부된 보조금 전액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음.
- 26. 01.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6. 02. ~ 06.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6. 06. ~ 07.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어, '26. 08. 기준 시설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으로 '26. 11. 준공 예정임.

2 서초정원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

- 양재동 201번지에 위치한 (舊)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생활권 정원 조성 및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주민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주민 여가공간인 '서초정원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후시설 철거 및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비 등 시설비 370,000천원 및 지원센터 인테리어에 필요한 가구 및 사무실 집기 등 구매비 3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25. 2. 28.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5. 3. 18. ~ 5. 16.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음.
- 이후 2025. 8. 1.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사업 대상지 내 집기류 반출 협의가 지연되면서 공사가 금년 5월 말까지 중지되어 연내 공사의 준공이 어려움에 따라 총 사업비 400,000천원 중 362,665천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음. 이후 2026. 6. 1.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2026. 9. 준공할 예정임.

【정원여과과】

■ 양재천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 명시이월 700,000천원, 집행잔액 3,877천원

① 양재천(영동1교 하부) 체육 및 휴게시설 정비사업

- 양재동 261-23번지 일대 양재천(영동1교 하부)에 기존의 노후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재포장하고, 유휴공간에 자전거 보관대 등 편의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을 위한 체육·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이번 정비를 통해 노후 및 파손으로 안전 우려가 있던 기존 공간을 말끔히 정비하고, 트랙을 활용해 러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확대 조성하였으며, 유휴 공간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하고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임.
- 2024. 8. 28. ~ 11. 25. 물관리과에서 “양재천·여의천 합류부 활성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이미 완료된 바 있음.
- 이후 2025. 8. 21. 행정안전부로부터 “양재천(영동1교 하부) 체육 및 휴게시설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300,000천원의 교부 결정이 통지됨에 따라 2025. 10. 29. 인라인스케이트장 재조성을 위한 시설 공사에 착공하여, 2025. 12. 19. 준공을 완료함.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폐기물 처리비 등 296,123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입찰에 따른 3,877천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음.

② 양재천 복합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

- 양재천 수영장과 연계하여 영동1교 하부 단절된 유휴부지에 가족놀이터와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둡고 삭막

한 교각 하부를 개선해 놀이·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집라인을 비롯한 그네, 네트오르기 등 체험시설과 야간 안전을 위한 라인조명 등을 도입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소통·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2025. 6. 30. 서울시로부터 “양재천 복합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700,000천원이 교부되었음.
- 앞서 2024. 8. 28. ~ 11. 25. 물관리과에서 “양재천·여의천 합류부 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수행된 바 있으며, 2025. 8. 8. ~ 10. 2. 실시설계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2025. 12. 10. 시설 공사에 착공함에 따라 연내 공사의 준공이 불가하여 특교금 700,000천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2026. 3. 31. 공사가 준공하고 사업비 694,112천원(집행잔액:5,888천원) 집행을 완료함.

■ 여의천 휴게공간 조성사업: 명시이월 543,000천원(예산전액)

- 여의천 휴게공간 조성사업은 단절된 둔치 유휴공간을 주민들이 하천에 머무르며 쉴 수 있는 친수 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양재동 261-1번지 일대 양재천(여의천교 하부)에 바테이블 등 수변경관을 보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43,000천원이며, 전액 구비 부담 없이 편성된 예산임.
- 기존 바닥 콘크리트를 철거한 뒤 데크 등으로 바닥을 재정비하고, 바테이블·평상·야외테이블·자전거 보관대 등 휴게시설을 설치해 이용 편의를 높였으며, 수국과 창포 등 다채로운 초화류를 식재하여 도심 속 정원을 조성하고자 함.

<여의천 휴게공간 조성사업 설치 시설물>

시설명	수량	총 단가
바테이블	24m	2,800천원
바테이블 의자	23개소	730천원
평상형 데크	4개소	10,100천원
야외테이블	2세트	4,000천원
자전거보관대	1개소	7,000천원

- 앞서 2024. 8. 28. ~ 11. 25. 물관리과에서 시행한 “양재천·여의천 합류부 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정에 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2025. 10. 21.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43,000천원이 교부됨에 따라, 2025. 11. 공사를 발주하고, 2025. 12. 22. 시설 공사에 착공하였음. 그러나 연내 사업의 준공 및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교부된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 처리한 것으로, 2026. 4. 20. 공사를 준공함에 따라 사업비 492,194천원(집행잔액 50,806천원)의 집행을 완료함.

도시관리국

【재건축사업과】

■ 주택재건축 공공지원: 명시이월 24,313천원, 사고이월 90,258천원, 보조금반납액 3,763천원, 집행잔액 24,624천원

-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등 공공지원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구역 지정 후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수행을

비롯하여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및 정비사업 전문가지원단 등 외부 전문가 운영, 찾아가는 재건축 정책 콘서트 개최 등의 시행을 위해 본예산 168,043천원, 전년도 이월액 90,880천원, 시비 보조금 46,905천원으로 총 예산액 305,828천원을 계상하였음.

<예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305,828,000	162,869,550	114,571,090	3,763,455	24,623,905	8.1
사무관리비	38,300,000	21,782,550	-	-	16,517,450	43.1
공공운영비	4,343,000	-	-	-	4,343,000	10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9,800,000	19,800,000	-	-	0	0
민간경상 사업보조	243,385,000	121,287,000	114,571,090	3,763,455	3,763,455	1.5

- 사무관리비의 43.1%가 불용되어 16,51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추정분담금의 경우 검증시기가 정해져 있으나 해당 조합 및 추진위에서 추정분담금 검증 요청이 없어 검증위원회를 1회만 개최하였고, 전문가지원단은 당초 계획보다 민원, 분쟁 등 발생이 줄어 총 22회만 운영하였으며,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 조사를 위한 우편발송 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공공운영비 전액이 미집행 되었음.
- 나아가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용역비는 시·구비 각 50%씩 부담하는데, 임광3차 및 반포미도2차 아파트에 대한 시비 보조금이 2025. 8.에 교부됨에 따라 임광3차 47,000천원, 반포미도2차 51,073천원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함.
- 다만, 해당 용역의 통상적인 과업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되고, 사전 행정절차 및 입찰공고 일정까지 감안할 때 해당연도 내 용역 준공이

불가하여 77,726천원(임광3차 26,653천원, 반포미도2차 전액)을 사고이월 처리한 것임.

- 임광3차는 2026. 1. 30. 반포미도2차는 2026. 2. 13.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용역의 준공으로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고, 집행 후 남은 잔액 중 시비 3,763천원을 반납하고자 함.
- 아울러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은 시비 보조금 10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수시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된 조합에 한하여 예산이 교부되며, 2025년도에는 서초구 관내 6개 조합*이 선정되어 총 46,905천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음. 다만, 당초 조합에서 계획한 전자투표·온라인총회를 적기에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의 연내 집행이 어려워져 24,313천원은 명시이월하고, 12,532천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였음.

* 반포미도1차, 방배13구역, 서초신동아, 서초진흥아파트, 방배14구역, 반포미도1차

■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 집행잔액 140,846천원(불용률 61.8%)

- 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사업 단계별 법률 상담 및 위원회 개최 지원, 우편발송·재건축 정보포털 유지관리·재건축부담금 검증 등의 행정지원, 그리고 재건축 주택건설 공사장 및 인근 건축물에 대한 안전검검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자 본예산에 227,977천원을 계상함.
- 2025년도에는 총 24회의 정비사업 법률 상담센터 운영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분양가 심사위원회 3회*, 공동주택 품질점검 2회**, 신반포27차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2025. 3. 13.) 등을 단계별 또

는 사안별 맞춤 지원을 통해 신속·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래미안트리니원(반포3주구): 2025. 9. 29., 서초신동아(아크로드서초): 2025. 9. 30., 신반포21차(오티에르 반포): 2025. 11. 28.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2025. 5. 28., 래미안원페를라(방배6구역): 2025. 10. 22.

<예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227,977,000	87,130,790	140,846,210	61.78
사무관리비	43,622,000	38,285,500	5,336,500	12.23
공공운영비	77,265,000	15,683,450	61,581,550	79.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000	2,790,000	210,000	7
연구용역비	80,000,000	15,525,400	64,474,600	80.59
시설비	24,090,000	14,846,440	9,243,560	38.37

- 총 예산액의 61.78%가 불용되었는데, 이 중 시설비는 38.37%가 불용되었는데, 이는 시·구 합동으로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면서 시비가 지출되었고, 이로 인해 당초 편성된 구비분의 일부가 미지출되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임.
- 사무관리비는 정비사업 일정 지연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지가 4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공공운영비는 61,58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였는데, 이는 정비사업 일정 지연으로 인해 등기 발송 대상지가 33개소에서 8개소로 대폭 감소하면서 등기우편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 79.7%가 불용된 것임. 또한 연구용역비는 예산의 80.59%가 불용되었는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부과 대상지가 4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하여 64,4745천원의 집행잔액

이 발생하게 된 것임.

- 불용된 대부분의 예산이 당초 예상되었던 재건축정비사업 일정 지연에 기인한 것으로 정비사업 일정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간에 지나치게 큰 편차가 발생한 것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정비사업의 여건 및 일정 등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한 현실적인 예산 추계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주택재건축 전략적 정비사업 추진: 사고이월 101,250천원, 보조금반납액 78,750천원, 집행잔액 38,246천원

- 전년대비 1322.5%가 증가한 147,66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4. 2. 16.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양재2동 374번지 및 382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노후·저층주택지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자 시·구 70:30 매칭사업으로 신규 구비분 연구용역비 135,000천원을 본 예산에 편성하였음.

〈사업추진 일정〉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 24.02.26. : 선정위원회 개최(조건부 선정)
 - 25.06.05. : 市 전문가자문회의[반대 면적 1/3 초과 구역 제외(A1, B1, B2)]
 - 25.11.03. : 관리계획수립용역 착수
 - 26.01.22. : 市 전문가 자문회의[반대 면적 1/3 초과 구역 제외(A3)]
 - 26.08월 : 관련 부서(기관) 협의 / 市 전문가 자문위원회 상정 요청
 - 26.09월 : 市 전문가자문회의
 - 26.10월 :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실시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통해 양재2동 374번지 및 38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입지, 지형, 건축물 현황, 주변 교통여건, 개발사업 현황 등),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관리계획 운영 및 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한편 용역의 추진기간은 당초 본 예산의 편성 당시부터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용역의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까지 고려하였을 때 연내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음.

<예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462,660,000	244,414,420	101,250,000	78,750,000	38,245,580	8.3
사무관리비	600,000	290,000	-	-	310,000	51.67
공공운영비	12,060,000	7,874,420	-	-	4,185,580	34.7
연구용역비	450,000,000	236,250,000	101,250,000	78,750,000	33,750,000	25

- 이에 연구용역비 중 337,500천원 중 선금 236,250천원을 기집행하였고, 잔금 101,250천원을 26년도로 사고이월 처리한 것임. 당초 준공기한은 2026. 8. 29.이었으나, 용역업체로부터 준공기한 연장 요청에 따라 2026. 12.까지 연장될 예정인 바, 한 차례 사고이월된 예산은 더 이상 이월이 불가하므로 소관부서는 연장된 준공기한 내에 사업

이 완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본 예산 편성당시 연구용역비 총 예산액은 450,000천원으로, 시·구 70:30 매칭으로 서울시로부터 시비 보조금 315,000천원을 교부받았으나, 최종 연구용역비가 337,500천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맞춰 시비로 236,250천원을 지출하고, 78,750천원은 보조금 반납 처리할 예정이며, 구비 또한 당초 예산액 135,000천원 중 101,250천원을 집행하고 33,750천원은 지출잔액으로 처리함.

【건축과】

■ 건축 인·허가 처리: 집행잔액 67,836천원(불용률 49.4%)

- 「건축법」 제27조¹⁶⁾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건축물의 건축허가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건축사 업무대행을 통해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하고 신뢰 있는 건축허가·사용승인 체제를 정착시키고자 137,247천원의 예산을 계상함.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9조에 따라 연면적 합계 2천㎡ 이하의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경우에는 건축사에게 업무를 대행하는데, 이 때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

16)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는 건축사에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한 해당 연도의 기술사의 임금단가를 준용한 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최근 3년간 업무대행 수수료 및 지급건수>

(단위: 천원)

구 분		2023	2024	2025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건수	사용승인	128건/ 54,681	102건/ 45,361	57건/ 25,771
	건축허가	85건/ 18,148	57건/ 12,678	71건/ 16,034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술사)	사용승인	432,440원	446,060원	452,720원
	건축허가	216,220원	223,030원	226,360원

- 한편 예산액의 41.7%가 불용되어 57,29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건설경기 둔화로 건축물 사용승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하여 매년 전년대비 사무관리비를 △11.6% 감액하여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사용승인 건수가 102건에서 57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임.

<예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137,247,000	79,949,470	57,297,530	41.7
사무관리비	113,747,000	74,549,470	57,297,530	43.4
업무추진비	5,400,000	5,400,000	0	0

■ **2025년 반지하주택 피난시설 설치사업: 보조금반납액 8,400천원**

- 반지하주택 침수 시 탈출 불가능한 고정식 방범창을 개폐식 방범창으로 교체 설치하여 인명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지하주택 상태조사 1단계 대상 3개소, 2단계 대상 37개소, '24. 7. 특별점검 시 지정된 긴급·중점관리대상 15개소 등 총 55개소를 대상으로 개폐식 방범창 설치에 동의 회신한 가구에 한하여 시공을 지원하고자 2025년도 6차 간주처리(2025. 5. 23.)를 통해 17,600천원을 편성하였음.
- 사업기간은 2025. 5.~12.이며, 반지하주택 지원 대상 55개소 중 소유자 및 임차인의 설치동의서를 제출 완료한 3세대에 대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총 9,200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 한편 예산의 약 48%가 미집행되어 보조금 반납액이 8,400천원으로, 이는 약 7개월간 설치 동의를 진행하였으나 추가 동의자가 없었고, 수의시담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액이 발생함에 따른 것임. 나아가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 311,280원도 함께 반납할 예정임.

【공동주택관리과】

■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68,935천원(불용률 34.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가 2024.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2025년에는 사업의 공고일 기준 서초구 소재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을 대상으로 3년의 범위에서 월세 보증

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신혼부부 31가구에는 대출 잔액의 연 2% 이내에서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청년 31가구에는 대출 잔액의 연 2%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이 때 지원 횟수는 연 1회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신혼부부	청 년
대상주택	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	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
대상자격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자 ※ 신혼부부의 세대원 직계비속으로 한정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조례」제2조제1호) -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미혼)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한편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20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25년도에는 신혼부부 39가구, 청년 41가구로 총 80가구가 지원을 신청함에 따라 131,205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34%인 68,795천원이 불용되었음.
- 이는 서초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광역단체 유사 사업의 보조적 성격으로 정부 및 타 지자체 사업과 중복수혜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지 않은 편이며, 대출 규제에 인한 서초구 전셋값 상승 영향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도시디자인과】

■ 공공디자인 인식확산(서초구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명시이월 105,000천원, 집행잔액 4,440천원

- 서초구 전역의 야간경관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분석을 통해 서초구 권역별·지역별 특징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야간경관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51,850천원을 계상하여 “서초구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였음.
- 용역의 과업범위는 시간적으로는 5년(기준년도 2025년/목표연도 2030년)이며, 주요 과업내용은 ① 서초구 전체 야간경관 현황 및 진단·분석, ②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 ③ 야간경관 중점관리구역 및 우선사업 대상지 2곳 선정(기본설계 포함), ④ 요소별 가이드라인(건축물, 도로, 공원·녹지, 미디어아트, 옥외광고물 등) ⑤ 수립 연도별 사업 로드맵 및 제도개선 등의 제시에 관한 사항임.
- 한편 해당 용역은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사업으로, 용역의 준공까지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용역의 입찰 공고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등 사전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사업을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 2025. 10. 계약체결 및 용역에 착수하여, 2025.11.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26. 7. 중간보고회를 마쳤으며, 2026. 9. 용역 준공 예정임.
- 한편 예산 편성 당시 연구용역비를 150,000천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입찰 과정에서 4,440천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최종 결정된 용역비는 145,560천원임. 다만, 준공 기간 미도래에 따라 선금 40,560천원을 제외한 105,000천원을 명시이월하였음.

【부동산정보과】

■ 주거약자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서비스: 집행잔액 5,874천원(불용률 59.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¹⁷⁾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중 관내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 중개보수 한도 내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예산은 9,900천원임.
- 2024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부동산정보과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챗봇 ‘헬로 서초구 부동산’ 채널 및 민원실 리플렛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음.
- 지원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은 서울시 「지적·토지업무 운영기준」에서 8천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자치구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우리 구는 2024년까지 1억원 이하를 적용하였으나, 주택 임대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1억 5천만원 이하로 완화(부동산정보과 자체 방침수립)하였으며, 2025. 8. 7.부터는

17)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저소득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저소득 유공자 및 그 유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저소득유공자 및 그 유족
6.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아동
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중 저소득노인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9. 「다문화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저소득다문화가족
10.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1.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차보증금에 따른 금액 제한을 해제(부동산정보과 자체 방침수립)하여 운영하였음.

- 타 자치구에 비해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액이 높으며, 2025. 8. 7. 부터는 임차보증금에 따른 금액 제한을 해제하여 지원대상을 완화하여 운영 중임에도 서울시 사업과 중복수혜자의 경우 이중 제한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근 대출 규제 여파에 따른 서초구 전셋값 상승 등의 요인으로 2024년 11건(2,317천원), 2025년 12건(3,201천원)을 지원함에 그쳐 전체 예산액의 59.33%가 불용처리 되었음.

<예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9,900,000	4,027,000	5,873,000	59.33
사무관리비	900,000	825,000	75,000	8.33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9,000,000	3,202,000	5,798,000	64.42

■ 서초부동산거래 분석 등: 집행잔액 5,314천원(불용률 48.5%)

- 관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를 홍보하고, 거래 동향 분석 및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기 위해 본예산에 10,950천원을 계상하였음.
- 2025년도에는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매뉴얼 1,000부를 제작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구지회를 통해 서초구 관내 공인중개사들에게 배포, 부동산거래신고 교육 2회 및

간담회 4회 실시, 관련 시스템 및 부동산 통계자료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 동향 분석 등을 시행하였음.

- 다만, 예산액의 48.5%가 불용되었는데, 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래신고를 하거나,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해제신고를 하는 등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여 위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2025년도에는 지급 대상 신고가 없어 기타포상금 전액이 미집행된 것이 주된 요인임.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가 없었음.

안전건설국

【안전도시과】

■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 보조금반납액 9,899천원 집행잔액 24,074천원

- 2025년도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2025. 4. 17. 국비 30,000천원을 교부받았고, 국·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구비분 30,000천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예산은 60,000천원임.
-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강남역 인근 상가 건물 내 민간화장실 87개소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조치가 취약한 화장실에 비상벨 51개, 불법촬영감지시스템(티가드) 38개, 안심가림막 15개, 안심반사경 5개 등의 범죄예방 안전시설물을 설치함. 아울러 자율방재단 및 안전보안관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와 함께 강남역 일대에서

총 3회에 걸쳐 연인원 181명이 참여한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화장실 점검 및 불법촬영 탐지카드 배부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음.

- 이어 기존(본예산) 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다가구 밀집 지역 및 어두운 산책로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위치안내판 24개, 안심반사경 23개, 슬라안심등 6개, 로고젝터 2개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함.
- 한편, 총예산액 97,940천원 중 보조금반납액 9,899천원과 집행잔액 24,074천원을 제외한 실집행액은 63,966천원으로, 예산액의 약 34.7%가 미집행되었음.
-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납액 주요 원인은 설치 예산 중 일부를 공모사업 예산으로 대체하여 충당함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구비예산 14,151천원이 절감되었고, 민간화장실 시설물 설치 시 건물주(관리인)의 부동의로 인해 당초 계획 개방화장실 87개소 대비 22개소에만 비상벨 등 109개를 설치하면서 일부 시설물을 미설치로 인해 구비집행잔액 5,320천원, 국비 보조금반납액 5,320천원이 미집행되었음.
- 또한 안전협의체 활동과 관련하여 시설물 설치 동의서 징구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당초 10회 예정이었던 활동이 12월 초 시설물 설치 완료 이후로 미뤄지면서 연말연시 대비 강남역 일대 안전점검 및 캠페인 활동을 3회 실시하는 데 그쳐, 관련 수당 지급 후 구비 집행잔액 3,086천원, 국비 보조금반납액 3,086천원이 발생한 것임.
- 공모사업을 통해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치안 인프라를 확충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할 것임.
- 그러나 예산의 상당부분이 미집행된 만큼, 향후에는 민간 시설물 설치 시 사전 동의 절차와 주민 수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일정을 현실적으로 수립하는 등 보다 철저한 예산 집행 관리와 효율적

인 사업 운영 방안 마련이 요구됨.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97,940,000	63,966,150		9,899,425	24,074,425	34.7
사무관리비	10,000,000	7,013,000		1,493,500	1,493,500	29.9
공공운영비	90,000	66,000			24,000	26.7
기타보상금	10,000,000	3,828,150		3,085,925	3,085,925	61.7
시설비	77,850,000	53,059,000		5,320,000	19,471,000	31.8

■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사고이월 47,950천원,
집행잔액 144,910천원(불용률 37.0%)**

- 서초구는 재난위험시설과 제3종시설물을 대상으로 정기·수시·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안전취약가구의 시설을 점검·정비하여 재난을 방지하고, 아울러 재해영향평가와 재난실태점검 및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재난관리능력을 강화하여 안전도시 서초를 구현하기 위해 본 예산에 369,780천원 및 시비 21,410천원[안전취약가구 지원17,410천원(2025.08.12.)과 집중안전점검 4,000천원(2025.04.21.) 간주처리]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391,190천원임.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391,190,000	197,947,750	47,950,000	382,280	144,909,970	37.0
사무관리비	44,780,000	29,259,720		382,280	15,138,000	33.8
공공운영비	65,410,000	60,609,500			4,800,500	7.3
시책추진업 무추진비	1,000,000	929,020			70,980	7

시설비	240,000,000	94,380,000	47,950,000		97,670,000	40.7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0,000	12,769,510			27,230,490	68.1

- 시설비는 “2025년 서초구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시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전년대비 200% 증가한 24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39.3%인 94,380천원만 집행되었는데, 이는 당초 내진성능평가 대상 공공건축물 16개소에 대해 예산을 추계하였으나, 구립 양재2동 새원마을 경로당의 SH 수용예정예에 따라 지진성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과업 대상이 15개소로 감소하였고, 지반조사는 국토지리원의 기존 보고서를 활용하여 별도 지반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과업범위를 변경하게 되어 집행액(과업대상 감소 12,005천원, 지반조사 미실시 34,48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입찰과정에서 29,421천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총 97,670천원이 불용되었음. 아울러 용역의 계약기간이 2025.06.02.~2026.01.27.(총 240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잔금 등의 지출에 필요한 예산 47,950천원을 사고이월 한 것임.
-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68.1%가 불용되었는데, 당초 지진옥외대피장소 30개소 신규 지정 목표로, 표지판 40개 설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규 발굴을 위한 소유자(관리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15개소(지주식 13, 부착식 2)만 신규 지진옥외대피장소 표지판을 설치함에 따라 12,770천원을 집행함에 따라 27,230천원이 불용되었고, 사무관리비는 재난관련 전문가 자문 경비, 재난대비 물품 구매, 물품 보관 창고 정비,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 수수료 등 15,13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가로행정과】

■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집행잔액 116,028천원

- 도로 내 사유지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임료 정기 지급 및 토지매입비를 지급하고자 본 예산에 789,365천원을 편성하였음.
- 토지 매입비는 2024년까지 임료 지급 대상 토지였던 방배동 789-32 및 방배동 769-12 등 9필지에 대하여, 법원의 4차 조정에 따른 강제조정 결정으로 매매대금 90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30년간 매년 3억 원씩 균등 분할 지급하게 되었으며, 이로 편성된 시설비 예산 300,000천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임료는 총 10건에 대해 307,155천원을 지출하였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66,181천원을 포함하여 총 373,337천원의 배상금을 집행함.
- 한편 집행잔액 116,02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초 15건의 토지에 대한 임료를 지급을 계획하였으나, <임료 지급 예산 편성 내역> 연번 13~17번의 토지소유자가 별도의 임료를 청구하지 않아 지급액을 확정하지 못하게 되면서 2025년에는 임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연번 18번 토지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1심 패소 판결 후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2025년 12월 상급심이 확정됨에 따라 임료 8,200만원이 미집행되었음.

<임료 지급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원)

연번	필지	예산편성	임료 지출	지급기간
		489,365,000	307,155,130	
1	방배동 778-19 외 3필지	32,042,360	39,488,310	15개월
2	염곡동 156-2	15,534,960	14,240,380	11개월
3	방배동 853-14 외 1필지	44,075,970	44,075,970	12개월
4	방배동 882-9 외 1필지	34,229,280	34,229,280	12개월
5		11,409,740	11,409,740	12개월
6		11,409,720	11,409,720	12개월
7	방배동 795-4외 2필지	27,696,880	27,696,880	12개월
8	방배동 781-14	13,069,680	11,980,540	11개월
9	반포동 701-25	70,000,000	13,278,240	2개월
10	방배동 970-8	20,772,000	20,772,000	12개월
11	방배동 814-6 외 6필지	76,127,272	76,127,270	12개월
12	방배동 750-1,2	-	2,446,800	24개월
13	반포동 577-81	3,715,200	-	
14	방배동 791-9 외 3필지	31,920,000	-	
15	방배동 815-7 외 1필지	11,279,508	-	
16	반포동 99-6	2,706,660	-	
17	잠원동 35-24 외 1필지	1,371,096	-	
18	방배동 843-9	82,000,000	-	

■ 강남대로27길(양재말죽거리근린공원) 지중화 사업:

명시이월 1,616,237천원(예산전액)

- 양재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강남대로27길 9 ~ 강남대로27길 7-25 구간, 연장 200m의 구간에 전주 6본 및 통신주 3본 철거를 포함한 공중선 지중화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구비 1,616,237천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였음.
- 그러나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한 한전의 사업승인이 지연되어 연내 사업비 지출이 불가하여 편성된 시설비를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2026. 3. 4. 사업 승인이 완료되었고, 2026. 8. 현재 기준 한전 및 통

신사에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비가 확정 되면 2026년 하반기에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 이후 한전에서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27. 10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관로를 매설하는 등의 관로공사를 시행하고, 2027. 11. ~ 2028. 5. 기간 중에 지중에 매설된 관로 내부에 전선, 통신사의 케이블을 매설하는 선로공사를 실시하여 2028. 7월경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향후 사업 추진계획>

- | | |
|------------------------|-----------------------|
| ▸ 2025. 8. ~ | 한전 및 통신사 실시설계 진행 |
| ▸ 2026. 하반기 |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비 확정 · 납부 |
| ▸ 2027. 10.경 | 공사 착공 및 관로공사 시행 |
| ▸ 2027. 11. ~ 2028. 5. | 선로공사 시행 |
| ▸ 2028. 7.경 | 사업 준공 목표 |

■ 지중화 부대공사 사업: 집행잔액 91,982천원

- ‘양재권역 상권(말죽거리)’의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부대공사로, 지중화 과정에서 전주가 철거됨에 따라 그에 부착되어 있던 보안등과 CCTV 등 필수 부대시설이 함께 제거됨. 따라서 전주에 연결되어 있던 구 자가통신망 및 보안등 케이블 부대시설을 신설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시설비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95,44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한전 시공사 자금난으로 공정이 지연되면서 연내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부대공사비로 49,590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545,850천원 중 503,880천원을 명시이월, 41,970천원을 사고이월함에 따라 2025년도 예산현액은 545,850천원임.

- 이월된 545,850천원 중 2025. 9. 부대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2025. 10. 준공금 453,868천원을 집행하였음.
- 한편 총 91,98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말죽거리시장 지중화 보안등 및 CCTV 공사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24,855천원과 공사 물량변동 등에 따른 정산금액 11,839천원, 추계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과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한 발주금액 간 단순 차액 55,259천원 등이 주된 요인임.

■ 효령로(서울고) 지중화 사업: 집행잔액 230,991천원(불용률 79.4%)

- 서울고 교차로~서초3동사거리 구간, 연장 1,200m 규모에 전주·통신주 29본 철거 및 지상기기 20대 설치 등을 포함한 공중선 지중화 공사를 추진하여 학교 주변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본 예산에 구비 1,616,237천원을 편성하였음.
- 한편 예산의 79.38%가 불용되었는데, 본 예산 편성당시 KT 등에서 산출한 개략적 공사비에 근거하여 지중화 공사비 131,000천원, 도로 굴착복구비 16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실시설계 후 60,009천원의 비용이 산출됨에 따라 230,99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2026. 8. 현재 선로공사 중이며 2027. 12.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음.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2022. 3.	협약체결
▸ 2023. 10. ~12.	관로공사 착공
▸ 2025. 9.	관로공사 준공
▸ 2025. 11. ~ 2026.8. 현재	선로공사 진행중
▸ 2027. 12.	전주철거 등 준공 목표

■ 사임당로(서이초) 지중화 사업: 명시이월 300,000천원, 집행잔액 21,222천원

- 서이초주변 ~ 무지개쇼핑센터 구간, 연장 465m 규모에 전주 27본 철거 및 지상기기 12대 설치 등을 포함한 공중선 지중화 공사를 추진하여 학교 주변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에 지중화 공사비 및 도로굴착복구비 등 총 395,000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음.
- 2023년 당초 한전에서 산출한 개략적 공사비에 근거하여 868,389천원을 납부하였으나, 실제 실시설계 완료 후 소요 비용이 증가하여 2025년 한전에 36,880천원을 추가로 납부하였고, KT에도 실시설계 완료 후 36,898천원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준공 이후 사업비 정산에 따라 총사업비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300,000천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당초 지중화 공사가 2025년 하반기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한전의 교통소통대책 용역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착공이 연기되며 굴착복구비가 미집행됨에 따른 것이며, 실제 실시설계 후 산출된 비용과의 차이 등으로 인해 21,22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2022. 3.	협약체결
▸ 2024. 1. ~ 12.	실시설계 완료
▸ 2026. 10.	시험굴착
▸ 2027. 4. ~ 6.	관로공사
▸ 2027. 7. ~2028. 6.	선로공사
▸ 2028. 12.	전주철거 등 준공 목표

■ 이면도로 지중화사업 부대공사비: 명시이월 296,123천원,

사고이월 55,164천원, 집행잔액 1,904천원

- 방배로25길(방배열린문화센터), 사평대로(서원초, 반포고), 서초대로42길(서초3동북합청사), 신반포로15길(신반포중), 서초대로74길(청소년도서관), 효령로(서울고), 신반포로47길(싸리재공원)의 한전 및 통신사의 이면도로 지중화 과정에서 전주가 철거됨에 따라 전주에 연결되어 있는 구 자가통신망 및 보안등 케이블도 철거 후 신설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400,890천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음.
- 한편 사고이월액은 총 55,164천원으로 신반포로47길 보안등 공사(34,664천원) 및 사평대로 CCTV 자가통신망 공사(20,500천원)는 착공을 하였으나 한전 및 통신사 설계변경 지연과 동절기 도래가 겹쳐 연내 준공이 어려워 이월한 것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공기 부족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이월로 진행하였음.
- 명시이월액은 총 296,123천원으로 방배로25길(111,760천원), 서초대로42길(69,430천원), 신반포로15길(65,510천원) 등 보안등 공사 3개소는 한전의 실시설계가 지연되면서 연내 착공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었고, 또한, 효령로(서울고) CCTV 자가통신망 공사(49,423천원)는 동절기 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미리 예상하여 사전에 명시이월로 처리한 것임.

■ 지상배전기기(분전함) 외함 개선 및 관리: 사고이월 159,684천원,

집행잔액 76,263천원

- 관내 보도에 설치된 지상배전기기(분전함)에 디자인 외함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 679,988천원과

전년도 사고이월액 257,304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37,292천원 중 701,345천원을 지출하였음.

- 2025년 설치한 외함 디자인은 총 3종류로 종류별 단가는 디지털사이니지형 약 35,000천원, 갤러리형 약 15,000천원, 일반형은 약 10,000천원이며, 디지털사이니지형과 갤러리형은 개소별 4,500천원의 전기공사비가 소요되며, 매월 유지 전기료는 갤러리형 약 320천원, 디지털사이니지형 약 3,100천원이 발생함.
- 서초대로에 디지털사이니지형 외함 5대와 갤러리형 외함 2대를 설치하였고, 방배로에는 갤러리형 외함 10대와 일반형 외함 4대, 서초문화예술회관 앞에는 갤러리형 외함 1대 등 총 22대의 외함을 설치하여 528,660천원의 시설비를 집행하였음.
- 다만, 해당 사업은 소요 예산이 크고 지속적인 유지비가 발생하는 반면 사업 구간이 지중화 구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 현황, 추진 위치, 세부 지출 내역, 사업 추진 효과 등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함. 나아가 2025년에 새롭게 도입한 디지털사이니지형 분전함 외함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사업 추진 효과 및 성과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도로과】

▣ 도로사면(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사고이월 42,750천원, 집행잔액 7,500천원

- 도로사면 낙석사고 발생 등 도로사면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사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서초구 관내 도로사면 82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2회, 각 사면 당 8회 총 656회의 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고자 15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해당 용역은 관내 도로사면의 순찰 및 육안점검을 통해 사면의 결함 및 기능적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과업으로, 카메라·망치 등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낙석, 균열, 배부름 등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면밀하게 조사함. 점검 과정에서 위험요인 제거 및 보수 등 정비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설물 연간단가 계약을 통해 조치하고 있음.
- 본 용역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은 도로사면 및 급경사지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용역 수행기관 또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설립 허가를 받은 전문기관으로서 다수의 급경사지 안전점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있음.
- 다만, 당초 연내 사업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완료가 어려워짐에 따라, 잔금 집행 등을 위해 42,750천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2026년 1월에 용역을 준공하였음.

■ 관내 보도육교 보행환경 개선사업: 명시이월 480,000천원, 집행잔액 6,160천원

- 관내 노후된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 여건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보행 편의를 높이 고자 아쿠아아트 보도육교 등 총 17개소를 대상으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880,000천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음.
- 2025. 3. 12.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25. 4. 9.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880,000천원을 통보받았음. 그러나 예산이 교부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25. 10. 1. 특교금 용도변경 대상사업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당초 보도육교 4개소만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개선 방법을 변경하면서 사업 대상지를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 등 총 17개소로 대폭 확대함에 따른 것임.

- 사업 대상지 확대에 따라 총 사업비 880,000천원 및 사업규모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논슬립 설치에 459,000천원(54천원×8,516m)이 소요되며, 보도육교 정비 등 시설 개선은 보도육교 정비 20,000천원(250천원×800m²), 데크 설치 203,700천원(350천원×582m²), 기타 부대공 17,300천원(1식)으로 구성됨.
- 한편 특교금 용도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2025년 10월 착공하여 논슬립 7,405m를 2025년 12월 설치 완료하였고, 393,840천원을 지출하였음. 그러나 480,000천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는 공사 준공까지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2026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남은 시설비 집행을 위해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이월한 것임.

■ 방배카페골목 특색있는 보행로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고이월 47,500천원, 집행잔액 2,500천원

- 방배카페골목(방배동 792-3~방배동 751-1) 시대적 변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방문객이 줄고 상권이 위축된 상태임. 이에 따라 노후 보도블록 교체 및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을 요구한 상인회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조속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카페골목의 보행로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였음.

- 다만, 해당 용역은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사업으로,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등 사전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연내 사업을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보도 기본구상 디자인(안) 관련 부서 협의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5. 11. 착수되었으며, 연내 완공이 불가함에 따라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2,500천원을 제외한 47,500천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음. 이후 '26. 3. 31. 용역이 준공되어 사업비 지출을 완료하였음.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됨에 따라 공사에 정확한 물량과 총사업비 확정되었으므로 향후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공사비 편성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 센트럴시티 보도육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고이월 114,447천원, 집행잔액 15,553천원

- 센트럴시티 보도육교(2004년) 및 아쿠아아트 보도육교(2002년)는 일 평균 교통량이 8만대를 초과하는 주간선도로(사평대로 및 남부순환로) 상에 설치된 시설물로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사항 등을 조사하고 보수·보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3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음.
- '25. 9. 사업 시행을 위한 내부방침을 수립하고, 용역에 착공하였음. 당초 연내 용역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센트럴시티

· 아쿠아아트보도육교는 특수교(비대칭사장교)인 관계로 일반교량 대비 안전성 평가 산정을 위한 구조해석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26. 4.까지 수행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연내 준공이 불가함에 따라 낙찰차액 15,553천원을 제외한 114,447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6. 3. 31. 용역이 준공되어 사업비 지출을 완료하였음.

■ 조명시설물 운영관리: 집행잔액 229,722천원

- 관내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차도 등 도로기전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 공공요금 납부 및 유지보수용 자재를 구매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지하보·차도 및 승강기와 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고자 본 예산에 2,334,000천원을 계상하였음.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차	디자인육교	언더패스	분수대	승강기
12,272등	11,090등	10개소	3개소	2개소	2개소	12대 (8개소)

- 2025년도에는 보안등 전기설비 안전점검 용역비 33,455천원, 서초보금자리 지하차도 외 3개소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비 6,274천원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지출하였고, 도로기전시설물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1,338,370천원, 2025년 보도육교 승강기 용역 및 유지보수비 51,276천원, 관내 보도육교 경관조명 용역 및 유지보수비 34,480천원 등의 공공운영비를 집행하였으며, 도로기전시설물 유지보수 자재 구매를 위한 재료비 576,071천원을 포함하여 총 지출액은 2,104,278천원임.

<예산 세부 집행내역>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계	2,334,000,000	2,104,277,670	229,722,330	불용률 9.84%
사무관리비	50,000,000	46,208,250	3,791,750	낙찰차액: 1,139,280원 집행잔액: 2,652,470원
공공운영비	1,681,000,000	1,456,452,750	224,547,250	낙찰차액: 4,601,000원 집행잔액: 219,946,250원
재료비	603,000,000	601,616,670	1,383,330	낙찰차액: 1,052,100원 집행잔액: 331,230원

- 다만, 공공운영비 224,547천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당초 전기요금 인상을 예상하여 2025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10%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154,26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LED 등기구 100%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20,530천원, 서초보급자리 외 1개소 승강기 교체에 따른 유지관리비 절감 20,000천원, 그리고 아쿠아아트육교 및 지하차도 노후 펌프 등 시설물 교체에 따른 유지관리비 절감25,153천원 등이 시설물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가 절감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 서초문화벨트 내 노후 도로조명 개선(특교금): 사고이월 194,386천원

- 서초문화벨트 내 노후 도로조명(경관조명)을 정비하여, 문화벨트의 상징성을 높이고, 야간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하고자 반포대로(고속터미널~예술의전당) 구간에 가로등 238본 개량, 특화조명 10개소 및 문구조명 50개소 등을 설치하고자 총사업비 980,000천원을 편성하였음.
- 당초 '25. 04. 서울시로부터 서초문화벨트 내 노후 도로조명 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5,000천원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받

아 '25. 05. 1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25. 07. 31. 완수하였음.

- 25. 9. 30. 시설공사 시행을 위한 시설비 특별조정교부금 955,000천원의 교부가 결정되어, 10월에 공사에 신속하게 착공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내사업 완료가 어려워 공사 기성 준공 등 785,274천원 지출 후 잔금 28,521천원 및 물품구매 165,865천원 등에 필요한 잔액 194,386천원을 사고이월한 것이며, 집행잔액은 도로굴착 구간이 감소하여 이전비(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가 감액된 것임.
- '26. 2. 문화관광과 관광팀 외 5개팀과 문구조명 및 특화조명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6. 3. 문구조명과 특화조명을 구매한 후 '26. 5. 공사를 준공하고 문구조명 및 특화조명의 설치를 완료하였음.

■ 우면1구름다리 승강기 교체: 명시이월 410,000천원(예산잔액)

- 우면1구름다리 보도육교(우면동 713번지)의 노후된 승강기를 교체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보행안전을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승강기 2대 교체 및 승강기 내부 CCTV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410,000천원을 편성함.
- 다만, 편성된 예산액 전액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가 25.12.24. 결정되면서 해당연도에 사업진행 및 예산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교부받은 사업예산 410,000천원을 명시이월 처리함.
- '26. 3.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승강기 및 CCTV 등의 자재를 구매하였으며, '26. 4. 우면1구름다리 보도육교 내 승강기 2대의 교체 공사 및 시설물 공사에 착공하여, '26. 6. 공사를 준공하였음.

<예산 세부 집행내역>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계	410,000,000	371,492,240	38,507,760	불용률 9.39%
승강기 교체		197,832,750		
CCTV		22,994,410		
감리용역		17,760,000		
전기공사		47,947,000		
시설물 정비		82,530,000		
기타		2,428,080		

■ 방배동1555 등 6필지 도로부지 매입: 명시이월 546,279천원

-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는 총 25필지로, 2020. 6. 토지보상 절차를 시작하여 현재 12필지 보상완료, 1필지 보상불가, 1필지 기부채납, 5필지 보상제외(과천주암지구) 후 남은 보상 재추진 6필지(원지동 393-11, 내곡동 산12-653, 내곡동 산12-765, 방배동 1652, 방배동 1555, 방배동 1489)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자 본 예산에 2,321,375천원을 편성하였음.
- 2025. 1. 10. 원지동 393-11번지 1인에게 1,634,900원의 보상액을 지급하였고, 내곡동 산12-653, 내곡동 산12-765 3필지에 대하여 최종 2인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고, 2025. 10. 31. 방배동 1489에 대한 보상 절차가 완료되었음. 또한 방배동 1652(지분 2/3) 중, 지분 1/3 부분은 2025. 11. 7. 보상이 완료되었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25필지 보상 현황>

(2025. 12. 기준)

위 치	편입 면적(m ²)	추진현황(상세)	보상액(단위:원)	비고
25필지	2,695		4,413,313,940	
방배동 1958-1	110	보상완료('21~'22)(9인) *참고 : 행정소송 진행 중('23)	2,266,325,140	보상완료
원지동 393-11	1	보상완료('25)(1인)	1,634,900	보상완료
원지동 382-2	202	공부 불일치(1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소실	-	보상불가
원지동 393-7	9	보상완료('22)(1인)	9,225,000	보상완료
원지동 385-2	7	보상완료('22)(1인)	6,545,000	보상완료
원지동 386-22	11	보상완료('23)(1인)	51,260,000	보상완료
원지동 385-4	15	보상완료('23)(1인)	22,275,000	보상완료
내곡동 산12-769	355	보상완료('23)(9인)	1,861,200	보상완료
내곡동 산12-766	59	보상완료('23)(9인)	153,180	보상완료
내곡동 산12-770	508	보상완료('23)(9인)	3,922,850	보상완료
내곡동 산12-653	19	보상완료('23)(1인) 보상완료('25)(1인)	100,420	보상완료
내곡동 산12-765	184	보상완료('23)(33인) 보상완료('25)(2인)	34,457,850	보상완료
방배동 1655	86	보상완료('21)	1,218,591,330	보상완료
방배동 1652	93	보상완료('22)(5인) 보상완료(25)(6인), 수용재결예정(26)(1인)	377,378,500	취득 중
방배동 1643	53	보상완료('22)(2인) 보상완료('23)(1인)	454,113,610	보상완료
방배동 1555	17	수용재결예정('26)(1인)	-	취득 중
방배동 1489	96	보상완료('25)(6인)	2,316,799,980	보상완료
방배동 1843	10	보상완료('23)(1인)	82,830,000	보상완료
방배동 3150	6	보상완료('23)(1인)	114,900,000	보상완료
양재동 산75-2	171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검토 중 *과천주암지구	-	보상제외
양재동 584-1	3			
양재동 584-4	260			
양재동 산74	256			
양재동 산75-1	96			
양재동 224	68	기부채납 협의완료(25.6.28. 준공 예정)	-	기부채납

○ 구체적으로는 내곡동 산12-633~산12-654 등 2개소와 원지동 382-2~신원동 192-110 도로개설공사는 수용재결 손실보상액 결정에 따라 수

용재결금 및 공탁금을 지출하였으며, 방배동 1344-5~1489 도로개설 공사 역시 손실보상금 등을 지출하여 방배동 1489번지는 2025년 10월 협의취득을 완료함에 따라 1,775,095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남은 예산 546,279천원을 명시이월함.

<세부 지출내역>		
연번	적요	보상액(단위:원)
1	수용재결금(공탁) 지출(내곡동, 원지동 도로개설공사)	3,319,940
2	방배동 1344-5~1489 도로개설공사 등기이전 수수료 지출	90,000
3	방배동 1344-5~1489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금 지출(협의취득-방배동 1489, 이을규 외 4인)	1,158,400,000
4	방배동 1344-5~1489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금 지출(협의취득-방배동 1489, 주식회사 씨플로우)	208,766,170
5	방배동 1344-5~1489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금 지출(협의취득-방배동 1652, 유○○ 외 4명)	303,389,270
6	방배동 1344-5~1489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금 지출(협의취득-방배동 1652, 유○○)	101,129,750
합 계		1,775,095,130

- 한편 토지보상이 미완료된 방배동 1652(지분 1/3) 및 방배동 1555 2필지는 명시이월된 546,279천원과 2026년도 본예산 3,497,539천원 활용하여 2026년 7월 수용재결 보상 절차를 최종 완료하였음.

■ 제설 대책 업무: 명시이월 40,700천원, 보조금반납액 1,595천원, 집행잔액 180,959천원

- 겨울철 기습적인 강설이나 폭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여 구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비 1,297,591천원, 서초구 제1차 추경 306,000천원, 시비 100,000천원, 특별조정교부금 374,000천원으로 총 사업비는 2,077,591천원임.
- 이동식 염수살포장치 임차를 비롯해 제설장비 유지관리, 제설제·제

설함 등 제설 자재와 제설장비(제설제 살포기, 제설제 절단기 등)를 구매하고, 취약구간 경고표지판 설치 및 노후 제설장비 수리 등을 통해 강설이나 폭설 시 서초구 주요 간선도로 13개 노선(42.1km), 보조간선도로 17개 노선(29.2km)을 비롯한 관내 이면도로, 보도, 육교 등에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함.

<예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비고(천원)
계	2,077,591,000	1,854,336,600	40,700,000	1,595,150	180,959,250	8.7	낙찰차액 14,802 유보액 88,769 집행잔액 78,983
사무관리비	227,190,000 ('25년 본예산 197,750,000원 '24년 사고이월 29,440,000원)	157,815,690	40,700,000 (명시이월)		28,674,310	12.62	낙찰차액 1,423 유보액 13,842 집행잔액 13,409
공공운영비	511,293,000	423,734,870			87,558,130	17.12	낙찰차액 2,173 유보액 26,620 집행잔액 58,765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600,000	2,412,000			188,000	7.23	유보액 182 집행잔액 6
재료비	918,508,000 ('25년 본예산 687,508,000원 '25년 구비추경 160,000,000원 '25년 시보조금 71,000,000원)	862,432,360			56,075,640	6.11	낙찰차액 7,951 유보액 48,125
시설비	45,000,000 ('25년 시보조금 29,000,000원 '25년 시특교금 29,000,000원)	40,910,000		1,595,150	2,494,850	9.1	낙찰차액 2,155 집행잔액 1,935
자산및물품 취득비	373,000,000 ('25년 구비추경 15,000,000원 '25년 시특교금 358,000,000원)	367,031,680			5,968,320	1.6	낙찰차액 1,100 집행잔액 4,868

- 한편 사무관리비 40,700천원이 이월되었는데, 해당 사업은 매년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2개 연도에 걸쳐 시

행되는 특성상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이듬해 초까지 지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음. 따라서 겨울철 기습적인 강설이나 폭설 시 주요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및 급경사지 등 제설 취약구간에 염수용액을 신속하게 살포하여 도로 결빙을 예방하고, 교통마비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동식 염수살포장치 용역의 명시이월은 매년 반복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음.

■ **제설대책 민간 용역: 명시이월 1,402,568천원, 사고이월 255,000천원**

- 겨울철 기습적인 강설이나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차량 통행 및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주요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이면도로, 보도 등을 대상으로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근무(보강~3단계) 근무 및 제설작업 시행하기 위한 사업임.
-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현장 인력 인건비와 기계 및 굴삭기 등 상차장비 임차비를 포함한 총 사업예산은 1,657,568천원이며, 예산현액은 [‘24년 명시이월예산(885,840천원) + ‘25년 본예산(950,688천원, 명시이월) + ‘25년 추경예산(266,880,000원, 명시이월) + 市-특교금(255,000천원, 사고이월) + 市-보조금(200,000천원, 명시이월)]을 합한 2,558,408천원임.
- 2025년에는 겨울철 기상 상황 악화 시 즉각 대비하기 위해 9월 22일 제설작업 용역 시행 및 명시이월 계획 방침을 수립하고, 같은 해 11월 11일 ‘25/’26년 제설작업 용역에 착공하여 2026년 3월 31일 준공함. ‘25/’26년 제설 대책 기간의 총 적설량은 11.8cm(1일 최대 적설량 5.3cm)이며, 총 21회(보강 12회, 1단계 6회, 2단계 3회)의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음.

<예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률
계	2,558,408,000	900,840,000	1,657,568,000	0
제설대책 민간용역 (시설비)	1,672,568,000 (‘25년 본예산 950,688,000원 ‘25년 추경예산 266,880,000원 ‘25년 市보조금 200,000,000원 ‘25년 市특교금 255,000,000원)	15,000,000	1,657,568,000 (명시이월) 1,402,568,000 (사고이월) 255,000,000	0
제설대책 민간용역 (시설비)	685,840,000 (‘24년 명시이월)	685,840,000	0	0
제설대책 민간용역 -경상보조금 (시설비)	200,000,000 (‘24년 명시이월)	200,000,000	0	0

- 2025년 9월 22일 제설작업 용역 시행 및 명시이월 계획 방침을 수립을 수립하고, 같은 해 11월 11일 ‘25/’26년 제설작업 용역에 착공하여 2026년 3월 31일 준공함. ‘25/’26년 제설 대책 기간의 총 적설량은 11.8cm(1일 최대 적설량 5.3cm)이며, 총 21회(보강 12회, 1단계 6회, 2단계 3회)의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음.
- 해당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명시이월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는 “제설 대책 업무”와 동일하게 제설대책 기간이 매년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2개 연도에 걸쳐 시행되므로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이듬해에 지출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의 특성상 매년 민간용역 시설비를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임.

■ **열선 설치공사: 명시이월 840,000천원, 사고이월 5,335천원**

- 도로열선 중·장기 계획에 따른 경사도가 심한 고갯길에 대하여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한 차량통행시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열선 설치를 추진하고자 편성되는 예산으로 2025년도에는 경사도가 심한 제설취약구간 8개소를 선정하여 열선을 설치하고자 총 3,276,714천원(구비 1,168,014천원, 주민참여예산 108,700천원, 특교세 800,000천원, 특교금 1,2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사업 추진현황>

구분	계	동광로 도로열선 설치공사	서초대로51길30 등 2개소 도로열선 설치공사	원터2길 등 2개소 도로열선 설치공사	효령로46길 등 3개소 도로열선 설치공사
사업기간	-	’25.02.28. : ’25년 도로열선 설치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 결과 보고 ’25.03.17. : 동광로 등 8개소 열선 설치 추진계획 방침 ’25.03. : 공사발주 ’25.04. : 공사계약 및 착공 ’25.09.24. : 공사준공(동광로 등 8개소 도로열선 설치공사)			
규모	L=842m, 2차로	L=232m, 2차로	L=140m, 2차로	L=240m, 2차로	L=230m, 1~2차로
사업비 (천원)	3,276,714	887,207	720,472	920,742	748,293
위치	-	동광로 (방배동 1-138 ~ 797-9)	서초대로51길30 (서초동 1699-2~1699-7), 서초대로51길9 (서초동 1694-14)	원터2길 (원지동 377-1~419-15), 남부순환로339길 (서초동 1422-1~1436-9)	효령로46길 (서초동 1466-18~1466-7) 명달로4길 (서초동 1471-19~1467-65) 강남대로99길 (잠원동 23-1~23-4)

- 경사도가 심한 제설취약구간 동광로 등 8개소 도로열선 설치공사는

25. 9. 24. 준공되었음. 다만, 명시이월액 840,000천원은 해당 공사와 별개로 남부순환로297나길 도로열선 설치를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25. 12. 24. 교부 통보됨에 따라 연내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의 이월 처리가 불가피함에 따른 것임.

- 아울러, 사고이월액 5,335천원은 자동제설장비 증가 및 장비별 개별 운영에 따른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하면서 발생하였음. 2025. 12. 9.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 및 자료 확보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 완료시 점이 2026년 3월로 예정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며, 2026. 3. 31. 자동염수살포장치 13개소에 대한 1단계 구축을 완료하였음. 2026. 8. 현재 도로열선 31개소를 포함한 통합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을 검토 중에 있음.

<자동염수살포장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과업개요>

- 목 적: 자동제설장비(도로열선·자동염수살포장치) 각 설치업체별 시스템으로 조작 및 운영하고 있어 자체 통합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 사업내용: 자동염수살포장치(13개)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총예산액: 5,335천원('25년 구비 본예산, 사고이월)
- 과업기간: '25. 12. 22. ~ '26. 3. 31.
- 과업범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원격제어기능 제공, 데이터 저장 및 분석시스템 구축, 장애·알림 및 보안기능 강화

<예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4,118,700,000	3,272,570,980	845,335,000	794,020	0.02
열선 설치공사 (시설비)	2,008,014,000 ('25년 본예산 1,168,014,000원	1,162,442,960	845,335,000 ('25년 특교금 840,000,000원	236,040	0.01

	'25년 특교금 840,000,000원)		'25년 본예산 5,335,000원)		
열선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1,986,000	1,428,020	0	557,980	28.1
신중초등학교 통학로 열선 설치공사(시설비)	108,700,000	108,700,000	0	0	0
열선 설치공사 (시설비)	2,000,000,000 (‘24년 명시이월)	2,000,000,000	0	0	0

■ 도로열선설치(강남대로39길): 명시이월 210,000천원(예산전액)

- 양재역 인근 강남대로39길(서초동 1361-11~1360-31번지) 급경사로에 겨울철 폭설 및 결빙으로 인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장 57m(폭 6~8m) 규모의 2차로 도로열선을 설치하고자 21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25.10.01. 서울시로부터 도로열선설치(강남대로39길)에 필요한 특별조정교부금 210,000천원을 교부받았으나, 열선 설치 사업 추진에는 최소 3개월의 소요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26년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음. 2026. 4. 24.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26. 7. 13. 준공하여 사업비 집행을 완료함.

【물관리과】

■ 수방대책 운영: 사고이월 100,000천원, 집행잔액 56,026천원

- 수해예방 사전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에 462,978천원 및 전년도에서 사고이월된 시설비 136,397천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599,375천원임.
-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2.5톤 빗물받이 흡입 준설차

량을 투입하여 수방 업무를 추진하고,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수방 모래함 등 수방 자재 확보, 우기 전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수해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였음.

<예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599,374,500	443,349,000	100,000,000	56,025,500	9.35
사무관리비	97,878,000	59,399,040	-	37,478,960	38.29
공공운영비	67,700,000	58,450,760	-	9,249,240	13.66
시책업무추진비	8,400,000	8,400,000	-	-	0.00
재료비	40,000,000	39,967,700	-	32,300	0.08
시설비	385,396,500	277,131,500	100,000,000	8,265,000	2.14

○ 총 56,026천원의 예산이 불용된 주요 원인은 전년에 비해 집중호우와 강우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본부요원의 강우 시 일직 및 숙직 횟수가 줄고, 동 주민센터 수방근무요원의 급식비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우·대설·태풍 정보 발효 등 국지적인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상황(비상 2·3단계)이 드물어 단계별 급식비 집행액이 줄어들면서, 사무관리비 37,479천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보임. 또한 빗물배수 및 우수저류조 가동 빈도가 줄어들어 저류조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이 감소하여 공공운영비 9,24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25년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은 2025. 3. 28.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공기부족 등으로 연내 완료가 불가하여 잔금 등의 집행에 필요한 100,000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26. 3. 31. 준공완료함. 사업기간 중 물막이판 2,037개소와 역지변 83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 중 단독주택 3가구, 공동주택 4가구 등 총 7가구에 물막이판 5개소와 역지변 6개소를 설치함에 따른 집행액은 3,420천원임. 아울러 단독주택 등에 대한 자기부담금 10%는 공사 준공 시 고지서를 발급하여 세입 처리하였음.

■ **악취없는 맑은 서초만들기: 사고이월 4,581천원, 집행잔액 104,929천원**

- 하수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악취 저감 집중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하수악취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탈취시설 소모품 교체 및 유지관리비,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 예산 783,751천원과 2024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500,000천원('24. 12. 27.), 2024년 하반기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 500,000천원('24. 12. 27.)을 합한 총 1,783,751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음.

<예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1,783,751,000	1,674,196,900	4,580,750	44.000	104,929,350	5.88
사무관리비	4,500,000	4,456,000	-	44,000	-	0.98
공공운영비	127,920,000	92,602,770	-	-	35,317,230	27.61
시설비	1,650,831,000	1,576,638,130	4,580,750	-	69,612,120	4.22

- 2025년 6월에는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2025년 12월까지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총 82대 설치를 완료하였음. 한편 2025년 3월 착공한 반포천(반포4동) 악취저감시설 설치 공사는 배수구 설치 등 시공 품질 확보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동절기 동안 공사를 일시 중단함에 따라, 미집행된 공사비 4,580,750원을 사고이월 처리한 것으로 이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2026년 4월 최종 완공하였음.
- 아울러 총 104,92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반포천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전기요금 등 탈취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5,317천원이 불용되었고,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사업이 당초 8개소에서 1개소의 동의서 취하로 7개소로 축소되었고, 입찰로 인한 계약 낙찰차액 46,006천원 등으로 시설비 69,612천원이 불용됨에 따른 것임.

■ 30년 도래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 명시이월 6,470,762천원

- 도로함몰의 주요원인인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하고자 지름 300~1200mm 크기의 하수관 중 노후화가 심하거나 파손 범위가 넓은 연장 8.5km 하수관로는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일부 파손되었거나 문제가 생긴 677곳은 부분적인 결함 부위를 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예산은 7,543,000천원임.
- 한편 해당 사업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2025. 9. 교부됨에 따라 신속하게 하수관로 정비예산 배부 및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2025. 11. 공사를 발주하여, 2025. 12. 공사를 착공하고 1,072,238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 따라서 회계연도 내 사업의 완공이 불가함에 따라 지출 후 남은 예산 6,470,762천원을 명시이월 처리한 것으로 2026. 12. 준공 예정임.

■ 방배로 270 주변 외 2개소 원형관로 보강공사: 명시이월 1,000,000천원

- 방배로270 주변 외 2개소(방배로 264-2, 방배동 17-2)의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하고자 연장 450m 구간에 지름 800~1,000mm 크기의 원형관로를 보강공사를 시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예산은 1,000,000천원임.
- 해당 사업은 서초구 관내 노후불량 원형관로 정비공사를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2025. 10. 교부됨에 따라 지체 없이 원형관로 정비예산 배부 및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2025. 11. 공사를 발주 하였음.
- 한편 편성된 예산액 전액을 이월하였었는데, 이는 2025. 12. 8.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12월 중순에 실착공하였으나, 회계연도 내 기성금 지급이 가능한 수준까지 공정이 진행되지 않아 예산액을 모두 명시이월처리 하였으며, 2026년 3월에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을 최종 완료하였음.

■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고이월 3,135,094천원, 보조금반납액 16,252천원, 집행잔액 260,257천원

- 서초구 관내 지방하천 5개소 및 소하천 7개소의 효율적인 하천 관리로 수해를 예방하고 치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본예산 3,424,919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1,829,191천원을 합산하여 총 15,254,110천원의 예산현액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① 2025년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사고이월 269,262천원

- 매년 연간단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월에 공사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에 착공하여 아스팔트 포장 45a, 호안블록 설치 600m², 가시설 철거 등을 시행하였음.
- 다만, 여의천 데크 조성 사업 및 세곡천 내 장비 진입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당초 2025. 12. 31.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겨울철 강설에 따른 시설물(도로표지병, 데크 등) 및 산책로 파손 민원처리로 준공기한이 연기됨에 따라 시설비 269,262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26년 4월 공사가 준공되어 이월된 예산의 집행을 완료함.

<2025년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4,725,000,190	4,195,481,650	269,261,700	260,256,840	5.51
공공운영비	437,956,000	313,286,790	-	124,669,210	28.4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900,000	3,900,000	-	-	0.00
시설비	4,278,081,190	3,873,231,860	269,261,700	135,587,630	3.17
시설부대비	5,063,000	5,063,000	-	-	0.00

② 새원천 재해예방 개선복구 사업:

- 2022. 8. 집중호우 당시 새원천 상류 산지부 산사태로 발생한 토석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원지동 및 신원동 일대에 호안 붕괴,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반복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하천 정비 1.76km, 교량 재가설 9개소, 낙차공 재가설

9개소, 야계사방 0.2km 등을 포함한 개선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에 2023. 1. 실시설계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11월 준공됨에 따라 즉시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2024. 2. 공사에 착공하였음.

- 예산현액은 시설비 10,529,110천원이며, 이 중 재해예방 개선복구 공사비 7,241,969천원 및 토지보상비 405,055천원이 지출되었음. 한편 시설 공사가 2026. 12. 31. 준공 예정이고, 토지보상이 종료되지 않음에 따라 남은 예산 중 보조금반납금 16,208천원 및 집행잔액 45천원을 제외한 2,865,832천원을 명시이월 처리한 것임.

■ 우면천·형촌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 사고이월 99,221천원, 집행잔액 1,659천원

- 「소하천정비법」 제6조(18)에 따라 관리청(구청장)은 하천 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025년도 에는 관내 7개 소하천 중 우면천 및 형촌천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

- 18)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19. 12. 10.>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 수계별(水系別) 소하천망(小河川網)의 구성
 3. 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4. 소하천등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관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관리청인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라 2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2025년 2월 “우면천 형촌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에 착수하였고, 이어 2025년 5월에는 “우면천 형촌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여, 2025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측량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음.
- 한편 해당 용역 계약 체결 당시부터 “우면천 형촌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의 준공예정일은 2026. 1. 16, “우면천 형촌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당초 2026. 5. 22.로 완공기한이 설정되어 있어 당초부터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게다가 2025년 5월에 착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사전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중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용역 준공일자가 더 연기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총 99,461천원이 집행되었고, 준공 이후 잔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시설비 99,220천원을 사고이월하였음. 다만, 사고이월된 예산은 더 이상 이월이 불가하므로, 소관부서는 용역의 공정률을 철저히 관리하고, 연내 준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연내 용역의 미완공으로 인해 이월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반포천 둔치 산책로 정비 사업: 명시이월 200,000천원(예산전액)

- 반포동 1324 및 1340번지 인근 반포천 둔치의 산책로의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연장 1,570m, 폭 6m 규모의 산책로를 재정비하고자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00,000천원 교부됨.

- 다만, 특별조정교부금이 2025. 12월말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의 집행이 불가하여 교부금 전액을 명시이월하였고,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6. 2. 부터는 현장 확인을 통해 산책로 노후도 및 적합한 자재 등을 검토·준비하였음.
- 반포천 둔치 노후된 산책로의 낡은 표면을 깎아내고 아스콘 등으로 재포장하는 공정을 통해 오래되어 갈라지고, 파손된 산책로 표면을 평탄하게 정비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을 통한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명시이월액 200,000천원으로 산책로 절삭 및 포장(94a×1,800천원/a)과 폐기물 처리비(1식 = 22,000천원)를 집행할 계획임. 한편, 2월 현장 확인 및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쳤으나 아스콘 수급 불안정 및 여름철 집중호우 등의 사유로 실제 공사 착공은 8월로 다소 지연되었음.

보건소

【건강정책과】

■ 내곡보건지소 건립: 보조금반납액 600,000천원(예산전액)

-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하고 저소득층과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 주민들의 공공의료기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신원동 225번지) 1층에 내곡보건지소를 건립을 추진하고자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내곡보건지소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여 서울시 보건지소 설립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이어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보건지소 설립 최종계획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2024년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선

정됨에 따라 시비 6억 원(시설비 529,900천원, 자산취득비 70,100천원)의 예산을 교부받았음.

- 한편, 보조금 교부 당시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이 건립되지 않아 해당 연도에 사업의 추진이 불가하여 시비보조금 이월에 대한 서울시의 승인[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8117(2025. 3. 18.)]을 받아 계속비이월 처리하였음.
- 그러나 사업부지인 서초구 신원동 225번지 일대가 2024. 11. 서리풀 1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면서,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건립 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어 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 제1차 및 제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부처(보건복지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납하는 것이 결정되었음.
- 따라서 내곡보건지소의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가 부재하여 사업기간 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시비 보조금과 그간 발생한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반납 조치할 계획임.

■ 금연관리: 사고이월 115,749천원, 집행잔액 132,358천원

- 본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금연 정책을 통해 '스마트 금연도시'를 구축하고, 금연구역 및 흡연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단속·계도 및 홍보를 통해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아울러 상생형 분연 정책의 일환으로 흡연시설을 설치하고 환경정비를 위한 청소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본예산 552,944천원과 2024년 사고이월액 98,867천원을 합한 총 651,811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음.
- 세부 내용으로는 '서초 에어 흡연' 및 '서초 AI 흡연 제로' 등 첨단

흡연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연 및 흡연 구역 QR코드 안내를 확대하고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여 금연관련 제도를 적극 알리고, 금연지도단속원, 서초금연코칭단, 금연지도원을 투입하여 흡연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예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651,810,600	403,703,760	115,749,000	132,357,840	20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127,815,000	119,509,020	0	8,305,980	6.5
사무관리비	93,913,000	86,718,770	0	7,194,230	7.7
공공운영비	22,024,000	14,732,150	0	7,291,850	33.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40,000	2,240,000	0	0	0
기타보상금	62,100,000	62,100,000	0	0	0
시설비	341,466,600	116,467,500	115,749,000	109,250,100	32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52,000	1,936,320	0	315,680	14

- 총 132,35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였으며, 시설비 집행잔액은 109,250천원으로 불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당초 개방형 제연·흡연시설 2대의 신규 설치를 위해 예산 21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꽃마을1소공원’은 도시디자인과의 세대융합 공공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흡연부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보완하였고, ‘강남빌딩 앞 공공보도’에는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인 ‘서초 에어 흡연’ 1개소만 설치하게 되었음.
- 흡연시설은 주민 반대가 심한 기피시설로 그 특성상 설치 예정지 선정에 장기간의 검토가 소요되어 최종 1개소(‘강남빌딩 앞 공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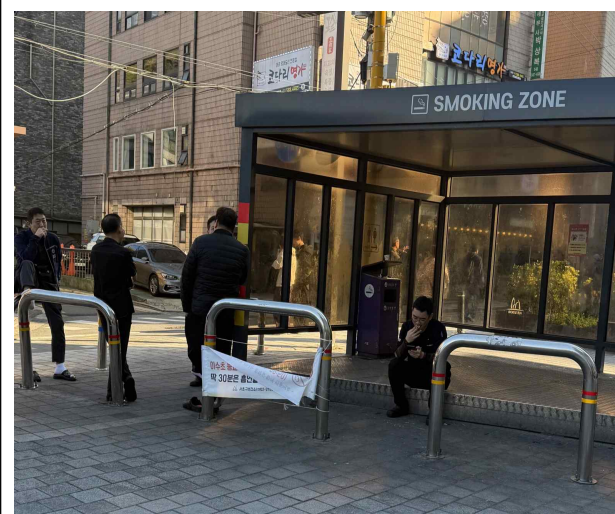
도)만 설치하게 된 것이 큰 요인이며, 아울러 '서초 에어 흡연' 지장 물 긴급 복구에 대비하여 확보했던 예산이 실제 임시 이전 등의 긴급 상황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아 미집행됨에 따른 것임.

- 한편 금번 신규로 설치된 '서초 에어 흡연' 시설은 에어커튼과 제연·정화장치를 통해 담배연기와 냄새의 외부 확산을 줄이도록 설계한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임. 가로 2m, 세로 7.2m, 높이 3.4m 20명이 동시 이용가능한 규모로, 3면에는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외부로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막고, 지붕에는 회오리 방식의 제연 정화장치 4대를 장착하여 내부 연기를 정화한 뒤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단순히 벽을 없앤 개방형 구조가 아니라 개방감과 냄새 차단을 동시에 구현한 시설임.
- 따라서 기존에 제연·정화 기능이 없던 일반 개방형 흡연시설에서 발생하던 냄새와 유해물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번 신규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여 도입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른 '서초 에어 흡연' 시설의 1개소당 설치비는 108,249천원이며,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일반 개방형 제연흡연시설의 추계예산 107,500원(시설비+전기인입 공사비)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어 당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보임.





개방형 흡연시설



- 더불어 시설비 115,749천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는 진흥아파트 사거리 강남빌딩 앞 흡연시설 설치 건으로 동절기 흡연시설 제작에 필요한 자재 수급이 불안정하였고 동절기 도로굴착통제 ('25.11.24.~'26.2.2.) 기간과 겹쳐 정상적인 굴착공사가 불가하여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부득이하게 흡연시설 물품구매 및 전기 인입공사 예산을 이월하였고, 2026. 6. 공사의 준공으로 사업비 집행을 완료함.

- 금번 설치된 장소는 흡연자와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등이 공존할 수 있고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 설치 관련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선정된 것임. 그러나 흡연시설은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인 만큼 향후 주거지 인근 등 거주민이 많은 지역에 설치 시에는 사전에 인근 주민 수요조사 및 충분한 동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서초 에어 흡연’ 설치·운영 현황 >

연번	위 치	설치일
1	(구)스타벅스 강남삼성타운점 앞(서초대로78길 24, 서초2동)	'25.1.10.
2	(구)금성상가 앞 (서초대로78길 56, 서초2동)	'25.3.21.
3	에이프로스퀘어 앞(서초대로77길 55, 서초4동)	'25.3.21.
4	진흥아파트사거리 강남빌딩 앞(서초대로 396, 서초2동)	'26.6.21

■ 서초구 건강장수센터 운영: 명시이월 83,000천원(예산전액)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 의료·건강분야 통합돌봄 서비스 실행 거점기관으로서 재가 통합돌봄 대상자의 중증화를 예방하고 건강돌봄 연속 체계를 강화하고자 65세 이상 통합돌봄 대상자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다학제팀(의사, 간호사, 운동사, 치위생사)이 3개월간 찾아가는 구강관리 서비스, 퇴원환자 통합지원 연계사업, 집중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함.
- 다만,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2,800천원이며, 시비 보조금 83,000천원이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의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한 것임.

- 한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6. 3. 27.부터 내곡동 느티나무쉼터 4층에 서초구 건강장수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구비분 예산액 49,800천원은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되었음.

■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보조금반납액 77,823천원

- 에이즈(HIV) 및 성매개감염병(AIDS) 예방을 위해 홍보, 검사, 고위험군 대상 예방관리,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검진 활성화로 신규감염자 발견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며, 본예산은 162,960천원(국 80,000천원, 시 82,000천원, 구 960천원)과 2025. 8 간추처리를 통해 국·시비가 각 32,944천원씩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총 228,848천원임.
- 2025년 관내 등록 관리된 에이즈(HIV) 및 성매개감염병(AIDS) 환자는 196명이며, HIV/AIDS 진료비 지원은 총 748건으로 148,06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연간 3회의 HIV/AIDS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음.

<최근 3년간 HIV/AIDS 등록환자 수, 진료비 지원 건수 및 지출액>

연도	HIV/AIDS 등록환자 수	예산액(원)	진료비 지원 건수	지출액(원)
2023년	188명	185,000,000	732건	142,830,030
2024년	193명	225,888,000	720건	143,179,450
2025년	196명	225,888,000	748건	148,064,950

- 다만, 77,823천원의 보조금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에이즈(HIV) 및 성매개감염병(AIDS) 감염인의 진료비 신청건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금이 해마다

증가(2022년 155,314천원 → 2023년 185,000천원 → 2024년 225,888천원)하고 있어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국·시비 각 38,912천원을 반납하고자 함.

<예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계	228,848,000 국) 112,944,000 시) 114,944,000 구) 960,000	149,559,530 국) 74,032,480 시) 75,032,470 구) 494,580	77,823,050 국) 38,911,520 시) 38,911,530	1,465,420	65%	
사무관리비	2,000,000 시) 2,000,000	1,000,000 시) 1,000,000	-	1,000,000	50% (실집행률 100%)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2,000천원→1,000천원)
공공운영비	960,000	494,580	-	465,420	52%	
사회보장적 수혜금	225,888,000 국) 112,944,000 시) 112,944,000	148,064,950 국) 74,032,480 시) 74,032,470	77,823,050 국) 38,911,520 시) 38,911,530	-	66%	

【건강관리과】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30,575천원(불용률 38.0%)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치료·관리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여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의 90%를 지원함.
- 한편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97,000천원(기29,100 시33,950 구33,950)이 었으나,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 변경으로 구비 △16,450천원을 감액하면서 예산현액은 80,550천원임.

- 감액된 △16,450천원은 같은 단위사업 내에서 '2025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부족분 5,883천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의 확정내시(증액)에 따른 구비 매칭 부족분 10,617천원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
- 2025년 관내 99명의 고위험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는데, 당초 사업 추진 과정에서 '25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예산액이 50,000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음. 이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에 해당하는 신청자 99명에게 지원을 완료한 후 정산한 결과, 보조금반납금 46,410원과 실집행잔액 71,400원만이 발생하여 실제 집행률은 99%임.

예산과목	예산액 (확정내시)	집행액 (실집행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실집행잔액)	집행률 (실집행률)	불용률
의료 및 회복비	80,550,000 (50,000,000)	49,928,600 (49,928,600)	46,410	30,574,990 (71,400)	62 (99.9)	38 (0.1)

■ 난청 조기진단: 집행잔액 6,962천원(불용률 60.5%)

- 선천성 난청의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를 통한 언어·지능 발달 장애를 예방하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 최소화하고자 가구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및 만 12세 미만의 영유아 중 보청기 처방을 받은 환아를 대상으로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의 보청기를 개당 135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 한편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15,000천원(기4,500 시5,250 구5,250)이 었으나,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구비 △3,500천원

을 감액하면서 예산현액은 11,500천원임.

- 감액된 △3,500천원은 같은 단위산업 내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의 확정내시(증액)에 따른 구비 매칭 부족분 3,500천원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
- 2025년도에는 난청검사비 2건, 보청기 1건을 지원하여 3,681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매년 난청검사비 및 보청기를 지원받는 영유아가 많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함. 그러나 확정내시 변경으로 예산액이 5,000천원으로 감액 편성됨에 따라 실제 불용률은 26.4%임.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액 (확정내시)	집행액 (실집행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실집행잔액)	집행률 (실집행률)	불용률
의료 및 회복비	11,500,000 (5,000,000)	3,680,950 (3,680,950)	857,380	6,961,670 (1,319,050)	39.5 (73.6)	60.5 (26.4)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보조금반납액 409,158천원, 집행잔액 102,718천원

- 코로나19 감염시 위·중증으로의 이행을 방지하고 서초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LP.8.1백신-화이자, 모더나)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부터 백신 구매 방식이 전액 국고부담에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매칭사업으로 변경되었음.
- 당초 본 예산은 2,641,043천원(국 885,266, 시 1,032,810, 구 722,967)을 계상하였으나, 보조금 매칭 비율에 맞춰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구비 예산 부족분 309,843천원을 증액하여 경정액은 2,950,886천원이 되었음.
- 그러나 25. 6. 20. 백신구매 단가가 화이자 73,340원→65,500원, 모더나 65,900원→56,300원으로 인하되고, 시행비는 19,61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기존 예산 대비 98.6% 수준으로 감액한다는 서울시의 '2025년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사업'의 내시가 변경되어 통보됨. 이에 따라 통보된 예산액이 서초구 예산과 상이하여 확정내시액 2,911,809천원을 매칭비율로 재산정하여 국 873,539천원, 시 1,019,135천원, 구 1,019,135천원으로 변경함.

(단위 : 천원)

구분	본예산 (2,641,043)	제1차 추경 (2,950,886)	내시변경 (2,911,809)
기 (30%)	885,266	885,266	873,539
시 (35%)	1,032,810	1,032,810	1,019,135
구 (35%)	722,967	1,032,810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분 추가편성	1,019,135

- 이후 정책사업의 범위 내에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부족분의 추가 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2025. 10. 14. 1건, 2025. 11. 19. 2건 2025. 12. 10. 2건의 예산을 전용하였고, 이로 인해 156,678천원이 감액되어 실제 예산현액은 2,755,131천원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예산 전용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예산현액 (변경 후)	전용 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비 (307-01)	2,890,427	96,219		2,794,208	2025.12.10	신청자 증가로 '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매칭 구비분 부족 예산 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환사업)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3)	2,259,353		96,219	2,355,572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비 (307-01)	2,933,011	19,833		2,913,178	2025.11.1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관련, 보조금 확정내시 증가로 구비 매칭분 부족 예산 확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 및 회복비	80,167		19,833	100,000		

의료비 지원	(307-01)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비 (307-01)	2,937,211	4,200		2,933,011	2025.11.19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관련, 보조금 확정내시 증가로 구비 매칭분 부족 예산 확보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201-01)	16,060		4,200	20,260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비 (307-01)	2,950,886	13,675		2,937,211	2025.10.1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분 예산확보
임신사전건강 관리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	247,186		13,675	260,861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비 (307-01)	2,913,178	22,751		2,890,427	2025.12.10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분 예산확보
임신사전건강 관리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	327,727		22,751	350,478		

○ 한편, '25-'26절기(2025.10.15.~2026.6.30.)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치는 약 44%였으나, 백신 안정성에 대한 불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고 있어 실제 접종률이 전년대비 7.8%가 29.9%에 그치면서 보조금반납금 국·시비 보조금반납금 409,158천원 및 실집행잔액 63,641천원(결산서상: 102,718천원)이 발생하였음.

<65세 이상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단위 : 명, %)

'25-'26절기 (2025.10.15.~2026.6.30.)			'24-'25절기 (2024.10.11.~2025.6.30.)			비고
접종대상자	접종자수	접종률	접종대상자	접종자수	접종률	전년 대비 접종률 7.8% 감소
71,361	21,316	29.9	67,501	25,451	37.7	

■ **서초구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 사업: 명시이월 212,000천원**

- 본 사업은 만 18세 이상 서초구민 및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령
대별 특성을 반영한 체격 및 체력 측정을 실시하고,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건강관리 시설로 서초구민
체육센터 2층(서초구 사평대로 55)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액 시비
보조 사업임.
- 다만, '25.11.04. 서울시에 '체력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제출서류 및 신청
서'를 제출하고, '25.11.26.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연내 사업의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처리한 것임.
- 이후 '25.12. 서초구보건소는 서초구민체육센터(YMCA)와 서초구 서
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위탁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공간조
성 및 시스템 점검 등 사전 준비를 거쳐, '26.01.07. '서초구 서울체
력9988 체력인증센터'를 정식 개소하였음.
- 체력인증센터는 체력 인증, 운동 처방 및 건강 증진 지원 등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체력 측정 서비스는 인증형과 체험형으
로 이원화하여 제공하는데, 요일별로 월, 화, 수, 금요일은 30명(체
험형 10명, 인증형 20명)이며, 목요일은 36명(체험형 10명, 인증형
20명, 야간 6명)까지 예약이 가능함.

구 분	체 험 형	인 증 형
인 증 서	발급 불가	발급
측정항목	체격 2종 (혈압, 신장 및 체중)	체격 3종 (혈압, 신장 및 체중, 체성분)
	체력 2종 (근력, 심폐지구력)	체력 6종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민첩성, 순발력, 유연성)
소요시간	20분	40분

- 공식적인 체력검정 인증서 발급이 필요한 주민은 '인증형', 본인의 체력 상태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희망하는 주민은 '체험형'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2026. 6. 기준 체험형 307명, 인증형 1,161명이 이용하였음.
- 명시이월된 사업비 명시이월 212,000천원 중 2026년 8월 기준 175,941천원이 지출되어 약 82.9%가 집행된 상태임.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304,594천원(불용률 40.1%)

- 본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연령 및 소득 기준에 제한 없이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총 8회(회당 최소 50분)의 심리상담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함.
- 2025년에는 893명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971명의 구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함에 따라, 사업 목표 달성률은 109%임.
-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본 예산에 당초 마음투자 지원금 위탁사업비 835,875천원(국비 437,250천원, 시비 218,625천원, 구비 180,000천원)과 인건비 39,126천원을 합한 875,001천원의 예산을 계상함.
- 그러나 25년 4월에 1차 확정내시 변경이 통보되면서 위탁사업비 확정내시액이 720,000천원으로 감액되었고, 추가경정예산에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예산액은 759,126천원(위탁사업비 720,000천원+인건비 39,126천원)으로 변경되었음.
- 이후 25년 7월에 2차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위탁사업비가 419,000천

원으로 추가 감액 조정되면서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국비 209,500천원, 시비 104,750천원, 구비 104,750천원으로 재산정되었으며, 인건비 39,126천원을 합산한 최종 예산현액은 458,126천원임.

- 한편 결산서에 따르면 집행잔액 304,594천원이 발생함에 따라 불용률이 40.1%이나, 이는 확정내시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출된 것으로, 실제 사업비에 전액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후 정산한 결과 실집행잔액은 35,747천원이며, 인건비 잔액 3,594천원을 합산한 실집행잔액을 기준으로 한 불용률은 8.59%임.

<예산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액 (확정내시)	집행액 (실집행액)	집행잔액 (실집행잔액)	집행률 (실집행률)	불용률	비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9,126,000	35,532,490	3,593,510	90.8	9.2	구 10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20,000,000 (419,000,000)	419,000,000 (383,253,000)	301,000,000 (35,747,000)	58.2 (91.5)	41.8 (8.5)	국 50 시 25 구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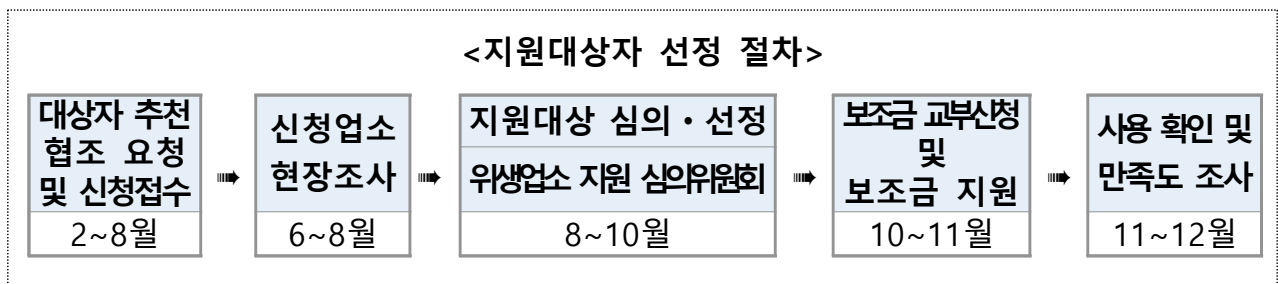
【위생과】

■ 스마트식당 만들기 지원: 집행잔액 30,000천원(불용률 42.9%)

- 소규모 음식점에 스마트기기[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를 지원하여 조리과 결제과를 분리함으로써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위해 요소를 사전 차단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외식환경 조성하고자 주문·결제용 키오스크 구입 시 배리어프리 솔루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34호, 2021. 7. 27. 공포, 2023. 1. 28. 시행) 제15조제3항이 신설되면서 무

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당초 구비 30,000천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서울시 '2025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25. 3. 25.)되어 시비 40,000천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총 소요예산은 70,000천원임.



- 2025년도에는 서초구 관내 소규모 음식점 16개소에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사용자 만족도 4.3점(5점 만점)임.
- 한편 지원 대상을 약자 해당 여부에 따라 시비와 구비로 이분화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실제 지원을 받은 16개소 모두 시비 지원 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집행된 예산 39,680천원은 전액 시비로 지출되었음. 따라서 시비 보조금반납액은 320천원이며, 보조금 이자발생액 727,280원을 포함하여 반납할 예정임.

<시비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	내역	당초집행 계획액	집행내역	집행액	잔액
합계		40,000,000		39,680,000	320,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위생물품 구매	5,350,000	바리스타 앞치마 : 2,508,000원 위생 마스크 세트 : 2,842,000원	5,350,000	0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스마트기기 업체 간담회	650,000	간담회 6회	650,000	0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찾아가는 맞춤교육 활동비	2,000,000	찾아가는 맞춤교육 활동비 : 50,000원(1일) X 8명 X 5회 = 2,000,000원	2,000,000	0
일반보전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솔루션 비용 지원	32,000,000	솔루션 비용 : 1,980,000 X 16개소	31,680,000	320,000

- 반면에 구비는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는 약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의 경우 사업 신청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영업환경 변화로 소규모 음식점의 키오스크 도입 의지가 낮았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기기 호환 문제 등의 사유로 취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편성된 예산 30,000천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음. 향후 장애인 접근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소규모 업소로만 대상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을 휴게음식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의료지원과】

■ 암환자 의료비 지원(전환사업): 보조금반납액 50,728천원, 집행잔액 27,315천원

-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 치료율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117,000천원 구비 63,000천원을 편성하여 총 180,000천원을 계상하였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 분	성인암			소아암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폐 암	
대상암종	모든암	5대암 (위,간,대장,유방,자궁)	폐 암	모든암
지원기준	당연 선정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은 암환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자	· 의료급여 : 당연선정 · 건강보험 : 2021년 6월까지 진단받은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 : 당연선정 · 건강보험 : 소득 · 재산 조사
지원기간	연속 최대 3년			18세 미만 연속
지원금액	· 본인 부담금 3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 급여:최대 200만원	· 건강보험 : 급여 200만원 · 의료급여 : 본인 부담금 300만원(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 백혈병 : 최대3,000만원 · 기 타 : 최대 2,000만원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7,500원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 예산액 대비 56.6%에 해당하는 101,957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조금반납액 50,728천원과 집행잔액 27,315천원이 발생하였음.
- 이는 2021. 6. 30.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5대암(위암 · 간암 · 대장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고, 2021. 7. 1. 이후 신규로 국가암검진을 받아 암을 진단받은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원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임.

<최근 3년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역>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인원(명)	금액(천원)	인원(명)	금액(천원)	인원(명)	금액(천원)
총 계		78	159,985	83	125,161	59	101,957
성인	건강보험	27(34.6%)	20,357	11(13.2%)	8,830	2(3.4%)	2,513
	의료급여	45(57.7%)	53,006	68(82%)	107,260	54(91.5%)	81,698
소아암		6(7.7%)	86,622	4(4.8%)	9,071	3(5.1%)	17,746

- 한편, 소아암 환자는 국가암검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진료 후 진단 받은 만 18세 미만 암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자 수 또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따라서 지원 대상 기준 변경에 따른 수혜 인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집행률이 높지 않은 것이며, 아울러 본 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의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교부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자율적으로 최근 몇 년간의 수요 추이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예산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구조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함.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 특별회계 세외수입 주요 검토사항

도시관리국

【건축안전특별회계-건축과】

▣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741,992천원/ 환급액 2,265천원

- 건축안전특별회계 이행강제금 특별회계 세입은 별도로 부과·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20% 이내를 재원으로 하며, 건축과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공동주택관리과의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세입 예산의 20%를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산출함.

<위법건축물·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체납 현황>

(단위:천원)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축안전 특별회계	484,529	-	741,992	-	739,727	-	2,265	99.7
위법 건축물	448,576	241	1,378,752	185	1,182,386	56	196,366	86
무허가 건축물	1,489,541	2,069	1,788,081	1,819	1,357,172	250	430,909	75.9

- 한편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은 2023년도까지 일반회계로부터 이행강제금 예산징수액의 20%를 전입 받아 편성하였으나, 2024년도부터는 직접 징수 방식으로 변경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시 20%를 특별

회계로 직접 징수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함에 따라 전년대비 특별회계 이행강제금 세입이 증가한 것임.

-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모와 직접 연동되어 증감하는 구조로, 특히 2025년도 세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서초동 1573-14번지 건축허가(증축-추인)에 따른 고액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인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환급액 2,264,94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2025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처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이행강제금 요율 및 시가표준액 산정 오류로 인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과다 부과된 총 6건(2023년-2건, 2024년-2건, 2025년-2건)이 확인되었음.
- 이에 감사 결과에 따른 이행강제금 전체 과오납액 15,907,610원 중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으로 귀속되었던 부분에 해당하는 2,264,940원을 환급 조치한 것임.

안전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주차관리과】

▣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1,366,060천원(징수율 75.1%)

-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 차를 정차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승용 및 4t 이하 화물은 40,000원(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승합 및 4t 초과 화물은 50,000원(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를 감경함.

<2025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결산>

구 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손처분		미수납액		징수율 (%)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계	606,345	30,087,321,663	138,791	5,425,096,540	34,350	2,072,959,920	433,204	22,589,265,203	24.9
현년도	137,891	5,488,926,250	113,111	4,122,866,240	0	0	24,780	1,366,060,010	75.1
과년도	468,454	24,598,395,413	25,680	1,302,230,300	34,350	2,072,959,920	408,424	21,223,205,193	13.7

<연도별 현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구 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손처분		미수납액		징수율 (%)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2025	137,891	5,488,926,250	113,111	4,122,866,240	0	0	24,780	1,366,060,010	75.1
2024	150,562	5,952,789,750	118,399	4,285,740,280	9	417,120	32,154	1,666,632,350	72.0
2023	134,519	5,601,285,620	109,569	4,284,404,240	11	557,920	24,939	1,316,323,460	76.5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구 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손처분		미수납액		징수율 (%)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2025	468,454	24,598,395,413	25,680	1,302,230,300	34,350	2,072,959,920	408,424	21,223,205,193	13.7
2024	508,940	26,784,896,843	24,112	1,287,854,130	48,104	2,520,825,530	436,724	22,976,217,183	14.2
2023	554,077	29,407,102,003	23,930	1,303,515,900	45,816	2,619,540,630	484,331	25,484,045,473	13.3

- 2025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총 137,891건이 부과되어 징수결정액은 5,488,926천원이며, 이 중 24,780건에 대한 1,366,060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함에 따라 최종 징수율은 75.1%임. 한편 최근 3년간 해당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을 살펴보면 '23년도 76.5%, '24년도 72.0%로 매년 70%를 웃도는 수준에 정체되어 있음.

- 아울러 90년대부터 누적된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율 역시 해마다 15%를 밑돌며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결손처분액은 매년 2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행정청)는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자의 행방불명, 파산선고 또는 무재산 등으로 과태료의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 다만, 과태료의 5년 소멸시효¹⁹⁾는 ① 납부고지, ② 독촉, ③ 교부청구, ④ 압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중단되며, 결손처분을 한 후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

1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고 체납처분이 가능함.

-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부과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데다,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압류가 등재되더라도 실제 차량 운행에는 즉각적인 지장 없고,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결손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과태료 체납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적극 실시하여 담보 상태인 징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도시관리국

【건축안전특별회계-건축과】

■ 건축 안전센터 운영: 집행잔액 282,960천원(불용률 95.7%)

-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착공신고,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등 건축허가에서 유지관리까지 전단계에 걸쳐 기술적인 사항을 확인·검토 및 점검을 시행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우리 구도 날로 대형화·복잡화되는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 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는 295,781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282,961천원이 미집행되어 불용률이 95.7%에 달함.

〈건축 안전센터 운영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율(%)
건축 안전센터 운영	계	295,781	12,820	282,961	95.7
	사무관리비	7,000	5,715	1,285	18.4
	공공운영비	7,600	4,315	3,285	43.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2,790	210	7
	일반예비비	11,351	-	11,351	10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66,830	-	266,830	100

- 이는 건축 안전센터 운영 예산의 미집행액 대부분이 예비비인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일반회계와 별개로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

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음.

- 따라서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체 예산액 1,148,540천원 중 1% 이내의 11,351천원의 일반예비비를 편성하고, 그 밖에 다른 사업비를 편성한 후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남은 금액 266,830천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특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시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자금임. 특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재해와 재난의 발생으로 노후 건축물이나 공사장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 및 보강 공사 등을 실시하여 긴급 복구 조치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됨.
- 그러므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재난의 특성상 집행 사유가 없어 지출하지 못한 것은 불가피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모든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므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과다 편성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판단됨.
- 다만, 매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반복적으로 불용되어 잉여금으로 남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관내 노후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나 기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

사고이월 18,098천원, 보조금반납액 12,902천원, 집행잔액 15,078천원

- 관내 민간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점검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93,209천원의 예산을 추계하였는데, 이 중 대부분이 시설비로 편성되었음.

<세부 사업별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

세부사업명	실적	예산집행내역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848개소	365,000x2명x200일=146,000천원
공사장 및 건축물안전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	3개소	179,000x1명x3일=537천원 (※ 1일 1개소)

- 세부 사업별 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노후도·구조·용도 등을 검토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건축사 등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균열 등 안전취약 요소를 육안으로 확인함.
- 점검 후 그 결과[우수(A)·양호(B)·보통(C)·미흡(D)·불량(E)]를 점검표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공문 회신하고, 점검결과 취약등급[미흡(D)·불량(E)]으로 판단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 추가 조치 안내하여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각 50% 매칭사업임.
- “공사장 및 건축물안전점검-찾아가는 안전점검”은 구민이 점검을 요청하는 시설물 중 노후도,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데, 당

초 안전 점검 시설물 약 24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추계하였으나, 실제 요청된 건축물 중 요건**에 부합한 3개소만 점검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2·3종 건축물 등은 점검대상에서 제외함.

-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 운영”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상시점검단을 운영하는 사업임.
- 2025년도 보조금은 총 13,428천원으로, 점검수당은 1일 358천원(2024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건설부문 특급기술자 기준 준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1차에는 1일 3개소 점검을 기준으로 10,382천원을 교부받았고, 2차는 예산 불용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균등 교부함에 따라 3,046천원을 교부받았음.
- 이에 공사장 안전점검을 위해 서울시 보조금으로 추진한 사업 중 ‘25년 점검 대상 선정 방식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 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12,903천원은 보조금 반납처리 할 예정임.
- 또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홈페이지 용역”의 시행 중 ‘25. 9. 29. 사업방침을 수립하였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IRM(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접속 불가 및 서울시 신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해당연도 과업 완공이 불가하여 잔금 지급 등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 18,098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안전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주차관리과】

■ 그린파킹(담장허물기) 운영: 보조금반납액 27,000천원, 집행잔액 32,590천원

- 그린파킹(담장허물기) 사업은 심화되는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담장허물기 신청 가옥을 대상으로 사유지 내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바닥 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관내 신규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임.
- 시·구비 각 50%씩 부담하는 매칭사업(시예산 교부액에 따라 유동적)으로 가옥당 지원금액은 10,000천원이며, 평균 공사비는 약 15,000~20,000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로 부담함.
- 또한 담장허물기 사업에 참여한 주택(조사기준 최근 5년)을 대상으로 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를 기간제근로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해당 사업 지역의 골목길 환경 개선 및 방법 안전을 강화하고자 무인 자가방범 CCTV 18대를 설치하여 주차 공간 질서를 유지·관리하고자, 총 100,30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	집행률	불용률
계	100,309,000	40,718,860	27,000,000	32,590,140	67.5	32.5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2,993,000	1,884,640	0	1,108,360	63.0	37.0
공공운영비	5,616,000	4,934,220	0	681,780	87.9	12.1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700,000	600,000	0	100,000	85.7	14.3
시설비	91,000,000	33,300,000	27,000,000	30,700,000	66.3	33.7

- 그러나 집행잔액이 32,590천원과 보조금반납금이 27,000천원이 발생하여 미집행된 예산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함. 이는 그린파킹(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중 가옥당 지원금액이 전년 대비 30% 감소함에 따라 신청자의 자부담이 증가하면서 당초 10가옥 중 7가옥이 사업 참여를 취소하였고, 최종 3가옥에 대해서만 담장허물기 공사를 실시하면서 30,700천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는 전체 집행잔액의 94.2%를 차지하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 그 밖에 담장허물기 참여 가옥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담장허물기 기능 유지 실태 점검이 조기에 완료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이 단축(23일→18일)되어 인건비 37.0%가 불용된 것임.
- 더불어 신청자의 사업 참여 취소로 시비 보조금 시설비도 대부분 미지출 되었고, 당초 시비 보조금 교부액 또한 63,000천원→50,400천원으로 감액 내시됨에 따라 보조금반납금 270,000천원이 발생하게 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사후 관리 및 실태조사 결과, 대상 가옥 총 45가옥 중 43가옥이 정상적으로 주차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가옥은 건축물 멸실 등으로 확인되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번 조성된 주차공간은 안정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주택가 내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민원 해소를 위해 본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함. 다만, 공사 시 자부담금이 클 경우 지원자가 급감하여 본 사업이 주택가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획기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그러나 일단 주차공간이 한 번 조성되면 그 기능을 유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향후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할 것임.

■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전환사업): 계속비이월 7,751,769천원

- 양재동 261-22(영동2교 남단)에 위치한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신축하여 다세대주택과 상가 등이 혼재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하 1~2층에 주차공간 151면을 건립하고, 지상 1층에 책심터 및 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4,850,963천원임.

<예산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비고(이월액)
계	14,850,963,510	7,099,123,470	70,800	99.99	0.0005	7,751,769,240
업무추진비	1,000,000	929,200	70,800	93	7	0
시설비	13,627,541,510	6,370,414,670	0	100	0	7,257,126,840
감리비	1,176,678,000	700,000,000	0	100	0	476,678,000
시설부대비	45,744,000	27,779,600	0	100	0	17,964,400

- 2020. 9.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설계과정에서 市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공사규모 변경 등으로 설계용역 준공이 지연되었고, 건축협의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및 발주 관련 서류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착공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공사비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계속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2025. 5.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예산현액의 약 50%를 집행하였음.

<사업추진 현황>

- 2020.09.: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계획 수립
- 2020.1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구)투자심사
- 2021.08.: 신축변경계획 수립 [지하1층 주차장 및 지상카페,간이도서관 조성]

- 2022.01.: 설계용역 착수(당시 계획: 2024. 12. 31. 준공)
- 2023.07.: 신축 변경계획 수립 [규모변경:지하1층 → 지하2층]
- 2023.10.: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재심의[결과:조건부가결]
- 2024.02.: 양재천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24.04.~10.: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 2025.01.: 설계용역 완수
- 2025.04.: 건축협의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5.05.: 공사 착공 [준공예정일: 2027.09.]
- 2025.09.~2026.02.: 지하 흙막이 공종 시행
- 2026.03.~현재: 터파기 및 가시설 공종 진행 중

○ 한편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나,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이며, 그 이상 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계속비 집행 상황>

(단위: 천원)

년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2025	6,474,750	8,376,214	14,850,964	7,099,123	7,751,769	70,800
2024	3,028,146	6,098,373	9,126,519	750,226	8,376,214	79,000
2023	2,805,637	3,315,111	6,120,748	21,804	6,098,373	571,400
2022	2,973,192	948,440	3,921,632	606,309	3,315,111	211,700
2021	968,000		968,000	19,560	948,440	

○ 2026. 8. 기준 터파기 및 가시설 공종을 진행 중이며, 2027. 9. 준공 예정으로 공사 대금의 잔금 지급의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속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연장의 필요성이 있어 보임. 아울러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이 상당 기간 지연된 만큼 향후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구룡 공영주차장 신축(전환사업): 계속비이월 15,202,606천원**

■ **구룡 공영주차장 생활SOC복합화 사업(전환사업): 계속비이월 23,510천원**

- 양재동 301-6(구룡 공영주차장) 외 2필지에 연면적 9,792.62㎡의 규모로 노후화된 구룡공영주차장을 복합시설로 건설하여 지하1층~4층은 주차공간 163면을 건립하고, 지상1층~4층에는 서리풀노리학교, 느티나무쉼터, 인공지능육성센터, 도서관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2025년도 구룡 공영주차장 신축예산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비고(이월액)
계	18,562,034,330	3,359,375,630	52,130	99.99	0.0003	15,202,606,570
시설비	17,111,440,390	2,413,427,830 *래미콘 수수료 포함	△18,270			14,698,030,830
감리비	1,329,806,400	945,018,200	0	100	0	384,788,200
시설부대비	119,787,540	0	0	100	0	119,787,540
업무추진비	1,000,000	929,600	70,400	93	7	0

<계속비 집행 상황>

(단위: 천원)

년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2025	1,000	18,561,034	18,562,034	3,359,376	15,202,607	52
2024	12,022,827	7,394,686	19,417,513	856,429	18,561,034	50
2023	3,654,803	5,281,581	8,936,384	1,541,424	7,394,686	273
2022	5,342,055	845,238	6,187,293	905,041	5,281,581	671
2021	1,266,957		1,266,957	421,719	845,238	

- 구룡 공영주차장 신축 사업의 예산현액은 18,562,034천원으로 이 중 시설비와 감리비 일부를 집행하고 15,202,606천원을 계속비 이월하였는데, 이는 당초 신축 계획 수립 당시 구룡 공영주차장은 2025년 10월 준공예정이었으나 기존 시공사(대한중건)의 책임사유(장비대금 미지급, 법정관리지정 등)로 2025년 3월 공사가 중단되었고, 같은 해 5월 새로운 시공사(정오종합건설)를 선정하여 재착공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지연되면서 공사가 완공되지 못해 사업예산을 이월한 것임.

〈사업추진 현황〉

- 2021.03. : 구룡공영주차장 신축계획 수립
- 2021.09.~2022.09.: 설계용역 착공 및 준공
- 2023.06.30. : 공사착공
- 2023.11.~2025.02.: 시공사 재정난 등 공사중지 3회, 법정관리 지정
- 2025.03.05. : 계약해지 통보
- 2025.05.30. : 건축공사 계약 및 재착공(착공일로부터 25개월)
- 2025.06.~12. : 지하 흙막이 공종 시행
- 2026.05 : 지하 토공사 시행
- 2026.07~ : 구조물 기초공사 진행

- 한편 구룡공영주차장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2022년 시행된 매칭사업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 구비 6억 원을 편성하였음.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 89조에 따라 국비 보조금은 예산은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므로 교부받은 국비 3억 원을 포함하여 2024년까지의 시설비 집행분 609,382천원을 정산하였으며, 발생한 집행잔액 23,510,110원은 2025년 국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이월처리 한 것임.

<구룡 공영주차장 생활SOC복합화 사업예산 집행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비고(이월액)
계	632,891,890	609,381,780	0	100	0	23,510,110
시설비	632,891,890	609,381,780	0	100	0	23,510,110

<계속비 집행 상황>

(단위: 천원)

년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2025		632,892	632,892	609,382	23,510	
2024		1,200,000	1,200,000	567,108	632,892	
2023	600,000	600,000	1,200,000		1,200,000	
2022	600,000		600,000		600,000	

- 구룡 공영주차장 신축 공사는 시공사의 책임사유로 시공사 변경 1회, 공사가 3회(※ 1차 중지-2023. 11. 21.~2024. 1. 16./2차 중지-2024. 6. 11.~6. 12./3차 중지-2024. 7. 1.~2025. 3. 5.) 중지 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전체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졌음. 시공사의 일방적 유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공사 지연으로 구 행정력 낭비를 비롯하여 주민 피해 등 업무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전(前)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및 대응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신규 시공사를 선정하여 구조물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말 기준 공정률은 약 40%정도로 2027. 6. 준공 예정이므로 향후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소관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될 것이며, 재착공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도 공사 지연 관련 귀

책사유를 명확히 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명시이월 555,300천원, 집행잔액 296,040천원

- 본 사업은 관내 공영주차장 34개소(주차구획 2,824면)를 대상으로 시설 정비 및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관제기 설치, 시설물 보수·유지관리, 주차구획선 및 안내표지판 정비와 함께 전기·소방설비의 정기 및 수시 점검 수수료를 지급하고 또한, 스마트 주차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추진,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및 영상감시장치(CCTV)의 유지보수와 노후 부품 교체를 실시를 비롯하여 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온비드 전자입찰 낙찰수수료 및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등 주차장 시설과 운영 전반에 필요한 예산 3,239,336천원을 편성하였음.

<예산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명시이월
계	3,239,336,000	2,387,996,480	296,039,520	74	9	555,300,000
사무관리비	344,090,000	208,687,500	135,402,500	61	39	-
공공운영비	29,262,000	15,741,730	13,520,270	54	46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0,000	3,254,800	245,200	93	7	-
전산개발비	793,400,000	221,856,000	16,244,000	28	2	555,300,000
민간위탁금	119,084,000	107,834,840	11,249,160	91	9	-
시설비	1,950,000,000	1,830,621,610	119,378,390	94	6	-

- 한편 스마트 주차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기간이 당초 2026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어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급금 221,856천원을 제외한 555,300천원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파악됨.

<스마트 주차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과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0. 20. ~ 2026. 07. 16.
- 예산편성내역 : 793,400천원
 - 전산개발비(개발용역) : 693,300천원
 - 전산개발비(감리용역) : 100,100천원
 - *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가 5억 이상인 경우 감리 용역 필요
- 사업내용
 - 주차장별 서로 다른 관제 프로그램(12기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관제 프로그램 개발
 - 서초구 주차포털 구축 및 통합관제 운영(영상·차량출입정보·결제내역 등 각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 실시간 주차 정보 제공 및 결제 수단 다양화, 웹할인(위탁주차장 대상 온라인 주차요금 할인 처리기능) 및 정기권 신청 간편화 서비스 제공 등
- 준공일 : 2026. 7. 16.

- 아울러 총 296,040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세목별 세부 사유를 살펴보면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은 총 135,402,500원으로 전기·소방안전관리대행,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위험성평가 용역 등 각종 계약의 집행 과정에서 11,649천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업체의 안전관리 업무 이행 및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자체 관제체계 구축으로 기존 대행용역을 대체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화재예방 통합관제' 예산 68,000천원을 미집행하였음. 이에 더해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안내로 현수막

제작비를 절감하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및 위수탁 연장계약 체결로 온비드 수수료 등을 절감으로 잔액 123,753천원이 발생한 것임.

- 그 밖에 공공운영비는 공영주차장 통신·전기 요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후 13,520,2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 추진 업무협의 후 245,200원이 남은 것임.

전산개발비는 2026년까지 추진되는 스마트 통합관제 주차정보시스템 사업의 2025년 10월 선급금 지급 및 명시이월금 555,300천원을 제외한 16,244,000원이 불용되었고, 민간위탁금은 양재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청소, 재활용폐기물 수집대행 용역 등의 계약 과정에서 11,249,16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 역시 공영주차장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등 각종 공사·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19,378,390원이 발생함에 따른 것임.

■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계속비이월 3,838,325천원

- 반포동 90-7번지에 위치한 서래마을 공영주차장(대지면적 1,182㎡, 연면적 3,025.08㎡)에 대해 지하3층~지상1층 규모로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71면,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장 환경 조성하고자 시행 중에 있음.
- 2024. 9.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5. 9. 설계용역을 준공하였음. 이어 2025. 10. 시설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2026. 8. 기준으로 현재 공사 마무리 작업과 병행하여 최종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전기, 소방 등 각종 필증 발급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행정절차

및 사용승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준공 후 개관할 예정임.

- 2024년도 본예산에 1,904,441천원, 2025년도 본예산에 2,545,580천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4,450,021천원임. 24년에는 설계용역비 선금 73,700천원을 지급하였고, 25년에는 설계용역비 잔금 97,996천원 및 환경개선공사 발주에 따른 건축·기계 공사비 선금금 440,000천원을 지급하여 537,996천원의 시설비를 집행하였음.

<계속비 집행 상황>

(단위: 천원)

년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2025	2,545,580	1,830,741	4,376,321	537,996	3,838,325	
2024	1,904,441		1,904,441	73,700	1,830,741	

■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사고이월 19,998천원,

보조금반납액 5,456천원, 집행잔액 54,404천원(불용률 41.6%)

-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 및 기능유지 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을 통한 유희 주차장 신규 발굴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30,781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	불용률	사고이월
계	130,781,000	50,923,290		54,404,085	41.6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281,000	16,465,040		3,815,960	18.8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700,000	567,500		132,500	18.9	
민간경상사업보조(경상)	4,800,000	300,000	2,250,000	2,250,000	46.9	
시설비(자본)	105,000,000	33,590,750	3,205,620	48,205,625	45.9	19,998,000원

-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관내 건축물 연면적별 약 10,000여개의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용도변경을 단속하고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
- 다만,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조기에 완료(7.5개월→ 6개월)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 단축으로 인건비 18.8%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 또한 시비 매칭사업으로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유희주차공간으로 개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서울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계획』(서울시 주차계획과)에 따라 주차운영 수익을 보전해주거나, 부설 주차장의 개방 시간 및 주차구획에 따라 시설공사를 시행함. 2025년에는 5개소 31면의 주차구획 확보를 목표로 하였으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한 기존 사업지(방배브라운빌)의 협약종료 및 신규신청 미발생으로 인해 집행이 축소되었고, 아울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시비보조금 교부액이 당초 신청액 52,500,000원에서 32,400,000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예산의 41.6%가 불용되었음.
- 나아가 사고이월금 19,998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협약을 체결한 방배씨티아파트 계약업체 선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지연으로 주차관제시스템 제작 및 공사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한 것임. 시설개선 공사는 2026년 1월 9일 착공해 2026년 2월 4일 준공 완료되었으며, 약정을 통해 1개소에 5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였고, 협약 기간은 24개월임.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신청 현황〉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가구수	2개소	2개소	-개소	3개소	1개소	3개소
면 수	22면	16면	-면	28면	5면	25면

- 한편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은 제도의 취지와 달리 매년 참여율이 저조하여 사업비의 불용률이 높은 편임. 따라서 신청률 저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거주자우선주차 설치 및 관리: 집행잔액 89,195천원(불용률 14.2%)

- 관내 18개동에 배정된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및 시설물 관리, 부정주차 차량 단속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주차구획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598,689천원, 제1차 추경을 통해 28,758천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627,447천원임.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및 배정 현황〉

(2026.8월 기준)

동 구획수	서초1	서초2	서초3	서초4	잠원	반포1	반포3	반포4	방·본	방배1	방배2	방배3	방배4	양재1	양재2
4,130	514	184	374	4	142	191	9	138	280	160	236	209	428	617	644

- 세부 사업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 사용 및 배정 안내 홍보, 구획선 및 안내판 설치·관리, 부정주차 단속 및 주차요금 부과·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임대 및 서버·DB 암호화 유지보수 등을 시행함.
- 2025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구획선 도색 등을 위한 시설비 155,700천원을 비롯하여 신규사업으로 "AI 부정주차 단속시스템 설

치비“ 71,400천원을 편성하여, 서초3동에 15대, 방배4동에 59대의 AI 부정주차 단속기를 설치·운영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 신형 표지판 설치비“ 155,430천원을 확보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표지판 281개를 설치 완료함.

※ 거주자우선주차 신형 표지판 단가 및 설치대수

연번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합계				146,519,580	
1	700*900 벽부식	82	377,905	30,988,176	제경비 포함
2	700*900 부착식	173	582,262	100,731,253	
3	700*900 지주식	26	569,236	14,800,151	

- 한편 총 89,19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AI 부정주차 단속기 임차료로 36,630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12,210천원만 집행되었는데, 이는 우리 구의 여건에 적합한 AI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및 제안요청서 사전 검토 등의 필수적인 절차 이행에 당초 계획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실질적인 임차기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임.

<예산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계	627,447,000	538,251,840	89,195,160	85.8	14.2
사무관리비	101,492,000	72,624,660	28,867,340	71.6	28.4
공공운영비	88,227,000	70,368,170	17,859,830	79.8	20.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000	1,395,000	105,000	93	7
배상금등	2,000,000	141,300	1,858,700	7.1	92.9
시설비	345,900,000	310,279,450	35,620,550	89.7	10.3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328,000	83,443,260	4,884,740	94.5	5.5

- 아울러 배상금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차량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회계연도 내에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시설비는 AI 부정주차 단속기 74대 설치비로 32,560천원을 추계하였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해당 장비의 설치비를 공급 업체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예산이 미집행됨에 따라 설치비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임.

■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용역: 집행잔액 171,973천원(불용률 16.1%)

-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근로자의 노무관리를 전문 업체에 용역 위탁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 18명과 구청 3명을 포함한 총 21명의 파견근로자가 거주자우선주차 정기 및 수시 신청 접수와 배정 안내, 주차구획 신설·삭제 및 도색 등 민원 접수·응대, 사용요금 및 부정주차 요금 고지서 우편 발송, 그리고 부정주차 단속·순찰 및 운영 지원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예산현액은 1,068,289천원을 편성하였으나, 171,973천원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이는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140,310천원의 발생으로 실제약금액은 927,979천원으로 낮아졌으며,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금 정산으로 연말에 31,663천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특히 60세 이상 근로자가 다수 파견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27,859천원이 감액된 것이 주된 사유임.

■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 집행잔액 322,370천원(불용률 20.8%)**

-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 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하고자 단속 인력 운용, 단속용 CCTV 설치 및 운용, 기타 단속 차량 및 장비 운영을 비롯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황색 실·점선) 및 교통안전표지 신설·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용 및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548,626천원임.

<사업추진 현황>

구분	세부내용
인력	- 총 55명 · 일반직: 8명 민원처리, 단속원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및 CCTV 관리, 시민신고 처리 등 업무총괄) · 현장·민원 등 업무지원 인력: 47명 (불법주정차단속 32명, 전화상담 9명, CCTV 영상자료 확인·대사 3명, 시민신고·의견진술 3명) 등
단속장비	- 단속차량 6대, 스마트폰 12대, 무인단속 CCTV 500대, 견인차량 2대, 견인대행업체 2곳
심의위원회 운영	-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 2025년도 48회 개최(13,959건 심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제7조에 따라 매월 2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수시 회의 개최 가능
시설물 신설 및 관리	- 주정차금지선 신설 및 재도색 : 95건 - 주정차금지 표지판 등 신설 및 정비 : 117건

- 총 322,370천원의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발생하였는데, 예산과목별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차량 부착형(이동식) CCTV 단속 시행 및 고정형 CCTV 단속 건수 증가에 대응하고자 기간제근로자 2명의 채

용을 위한 인건비 75,351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연간 최대 인력 운용 수요와 사업 운영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12개월분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사업 운영 및 근무 계획을 조정한 결과 10개월만 근무하게 되면서 27,48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예산 세부집행 내역>

(단위: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1,548,626,000	1,226,255,810	322,370,190	20.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5,351,000	47,865,610	27,485,390	36.5
사 무 관 리 비	83,240,000	77,502,170	5,737,830	6.9
공 공 운 영 비	723,708,000	497,858,770	225,849,230	31.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600,000	7,067,200	532,800	7.0
포 상 금	30,000,000	30,000,000	0	0.0
시 설 비	574,250,000	514,027,060	60,222,940	10.5
감 리 비	31,500,000	29,925,000	1,575,000	5.0
시 설 부 대 비	977,000	810,000	167,000	17.1
자산및물품취득비	22,000,000	21,200,000	800,000	3.6

- 공공운영비는 예산액의 31.2%가 불용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우편요금, 단속차량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의 실제 소요액이 예상보다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특히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에 우편 발송량이 줄어들고, 전기 단속차량 3대 도입에 따라 기존 휘발유 차량의 운행이 감소하여 수리비와 유류비가 절감되면서 실제 지출액이 줄어들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또한 주정차 금지선 신설 및 재도색과 주정차 금지 표지판 공사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을 합하여 총 60,222천원의 시설비가 미집행되었음.

■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및 견인대행업체 관리: 집행잔액 96,466천원**

- 보행 및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 및 견인하여 주민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견인차량보관소의 기간제 근로자 6명의 인건비,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그리고 견인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견인 대행비를 포함하여 총 423,005천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사업 현황>

사 업	상 호	주 소	직원	견인차수
견인업체	(주)서초특수운수	서초구 청계산로 217	1	1
	(주)씨큐산업	서초구 마방로2길 15-8	1	1

사 업	위 치	주차규모	운영시간	운영주체
견인보관소	원지동361-1 (청계산 입구)	40면	연중무휴 (24시간)	서초구 (2021.1. 직영 전환)

<예산 세부 집행내역>

(단위: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366,788,000	270,321,980	96,466,020	26.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3,930,000	219,363,770	4,566,230	2.0
사 무 관 리 비	13,818,000	12,637,000	1,181,000	8.5
공 공 운 영 비	15,000,000	6,551,210	8,448,790	56.3
배 상 금 등	840,000	0	840,000	100.0
민 사 간 업 위 탁 비	113,200,000	31,770,000	81,430,000	71.9

- 예산현액 대비 총 26.3%의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견인차량보관소 직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6명의 인건비 및 4대 보험 등을 최종

정산 과정에서 일부 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사무관리비는 견인차량 보관소 환경 정비 및 사무용품 등을 구매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더불어, 입·출차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을 포함하여 총 1,18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한편 배상금의 경우 현장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착오로 인한 견인료 및 보관료 환불 등의 배상 소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착오 단속 등의 배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편성된 예산 전액이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임.

<최근 3년간 견인실적>

구분	2025년(578건)		2024년(1,154건)		2023년(987건)	
	서초특수	씨큐산업	서초특수	씨큐산업	서초특수	씨큐산업
건수	323	255	660	494	554	433

<민간위탁사업비 예산액 및 집행잔액>

년도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5	113,200,000	31,770,000	81,430,000	71.9
2024	113,900,000	64,240,000	49,660,000	43.6
2023	154,055,000	55,217,000	98,838,000	64.1

- 아울러 견인대행업체에 견인대행료²⁰⁾로 지급하는 민간위탁사업비의 71.9%가 불용되었는데, 이는 CCTV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한 주민 신고가 활성화됨에 따라 차량 견인 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81,430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구조적 수요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용률을 낮출 필요가 있음.

20)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라 산정함.

■ 교통법규 위반(주정차등) 단속 CCTV 운영:

사고이월 72,138천원, 집행잔액 264,156천원

-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의 설치 및 관리를 통해 주차 단속 민원을 해소하고,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이설, PC 서버·전광판·표지판 등 장비 유지보수를 비롯해 CCTV 운영 전기요금 및 신규 수전비 등 공공 시설물 관리 비용을 집행하고, 아울러 CCTV 및 서초 스마트허브센터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함께 지능형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867,296천원을 계상하였음.

<사업 추진현황>

(단위 : 개소 / 2025.12.31.기준)

연도(년)	합계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이전
총설치대수	493	17	10	18	36	57	21	18	316
자체 설치	362	13	10	6	32	49	14	6	231
기부 채납	131	4	0	12	4	8	7	12	85

<예산 세부 집행내역>

(단위: 원 /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률
계	1,867,296,000	1,531,002,280	264,156,220	72,137,500	14.1
사무관리비	900,476,000	673,842,870	226,633,130	0	25.2
공공운영비	104,820,000	96,214,470	8,605,530	0	8.2
전산개발비	150,000,000	72,137,500	5,725,000	72,137,500	3.8
시설비	712,000,000	688,807,440	23,192,560	0	3.3

- 불법주정차 CCTV의 유지보수는 서초25시센터(스마트도시과)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버 17대, 모니터 4대, KVM(하나의 키보드와 마우스로 두 대 이상의 PC를 선택·전환하며 제어하는 장치)로 구성된 관제시스템 1개소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함.
- 한편 총 264,15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226,633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이는 불법주정차 CCTV의 유지보수(스마트도시과) 예산 편성 당시 소프트웨어 주정차 프로그램 유지보수 라이선스 단가를 8,500천원으로 반영하여 878,168천원을 추계하였으나, 계약 과정에서 실제 적용단가가 5,000천원으로 낮아져 용역비를 704,681천원으로 발주하였고, 이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으로 실제 계약금액이 655,825천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173,48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임.
- 아울러 전산개발비 72,138천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인공지능(AI)형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해 디자인 분석·설계, 플랫폼 개발, 교육 및 테스트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산개발비 150,000천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음. 그러나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용역착수가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2026년 2월까지 연장(25. 9. 8. ~ '26. 2. 28.) 됨에 따라 용역비 잔금을 사고이월하게 된 것임.
- 해당 사업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용역 수행 기간이 약 5개월로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해당연도 내에 준공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특히 예산 편성 전 서울시와 충분

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협의 과정을 감안 하더라도 용역 착수까지 9개월이 소요된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임.

- * 인공지능(AI)형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고정형 및 이동형 CCTV를 통해 수집된 불법주차 현황 데이터를 연계·구축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효율적인 단속 지시를 내리는 서초형 지능형 단속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단속 현황, 현장 영상, 위치별 민원 현황, 단속 차량 위치 등의 정보 파악 가능

■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집행잔액 7,679,118천원(불용률 100%)

- 해당 예산은 서초구 관내 공영주차장 건립의 필요시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되는 내부 유보자금으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당장 사용하지 않는 재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향후 주차장 확충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적립한 예산임.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으로 인한 세출의 용도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지출 금액이 없어 집행된 예산이 없는 것임.
- 한편 주차장특별회계의 적립금 편성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질의 (2020. 8. 4.)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상 적립금(706-03) 편성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음.

기 금 분 야

1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별 수입 결산 검토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징수결정액은 144,254,848,459원으로 수입계획 현액 143,662,168,000원 대비 592,680,459원이 증가하였음.
- 그러나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수입계획현액 1,178,896,000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1,771,578,530원으로 △592,682,53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당시 금리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나, 만기 후 정기예금을 재예치하면서 적용금리가 4%→3%대로 인하됨에 따라 이자 수입이 감소한 것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징수결정액은 4,930,633,827원으로 수입계획 현액 4,954,567,000원 대비 △23,933,173원이 감소하였음.
-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수입계획현액이 100,605,000원으로 실제수납액 75,741,310원 대비 △24,863,690원이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임. 당초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당시의 적용 금리로 추계하였으나, 만기 후 정기예금을 재예치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이자 수입이 감소한 것임.

공간혁신국

【도시계획과-옥외광고발전기금】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실제수납액은 3,024,918,103원으로 수입계획현액 2,885,561,000원 대비 139,357,103원이 증가하였음.
- “공유재산임대료”: 수입계획현액 316,472,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323,751,600원으로 7,279,6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에는 2024년 LED 전자게시대 1년차 위탁사용료(316,472,730원)를 토대로 편성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전자게시대 위탁사용료 연납금액(316,472,730원)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이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음.
 ※ LED 전자게시대 위탁사용료는 5년간(2024년~2029년) 총 위탁사용료를 연납 부과하되, 2~5차년도 부과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하여 부과함.
- “기타수수료”: 수입계획현액 70,000,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85,033,200원으로 15,033,2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입계획 추계 당시 최근 3년(2022년~2024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건수에 따른 수수료 수입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것으로, 2025년 들어 종전에 비해 예상치보다 허가·신고 건수와 세입 규모가 증가함에 따른 것임.

<최근 3년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징수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예 산	결 산	예 산	결 산	예 산	결 산
기타수수료	55,000	61,850	70,000	57,205	70,000	67,329

<기타수수료 수입 세부내역>

(단위: 건, 천원)

구분	연장		신규		변경		전자게시대	
허가건수/금액	227	50,033	107	5,184	64	28,016	12	1,800

- “그외수입”: 수입계획현액 110,000,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330,000,000원으로 220,000,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6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형식의 지원금 수입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당초 2026년 지출될 사업비로 2026년 수입으로 예상하였으나, 지방재정공제회에서 2025. 12. 24. 조기 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2025년도 세입으로 편성된 것임.
- “과태료”: 수입계획현액 100,100,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14,385,700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85,714,300원)하였는데, 이는 최근 3개년(2022년~2024년) 연평균 부과·징수액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나, 2025년도에는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비중을 줄이고 현장 정비 및 자진정비 명령 위주로 제도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제도를 통해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와 협조를 유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준법의식을 고취할 수 있겠으나, 위법행위의 시정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단속과 병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관부서는 명확하고 공정한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

(2025.12.31. 기준, 단위:천원)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체납액(B-C)		진도율 (B/A)(%)	징수율 (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100,100	134	112,570	121	100,192	13	12,378	112.5	89.0
2024	100,100	143	121,557	116	54,812	27	66,745	54.8	45.1
2025	100,100	33	14,385	33	14,385	-	-	14.4	100

<과태료 수입 세부내역>

(단위: 천원)

연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	36	23,982	33	14,182	3	9,800	59%

-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수입의 실제수납액은 22,050,850원으로 수입계획현액 30,000,000원 대비 7,949,150원이 감소하였음. 한편 최근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과 2024년에는 체납액 납부에 따른 수입이 없었고, 2025년에는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계획 대비 수치상으로는 수입계획현액 대비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지속적인 독촉고지와 재산 압류,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를 통해 장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긍정적이라 할 것임.
- 다만,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까지 미납된 체납액은 차기 회계연도에 세무관리과로 이관됨. 그러나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일반·특별회계와는 별도의 회계로 운영되므로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 업무를 전담하는 세무 부서에 비해 전문성과 인력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세무관리과와의 협업을 통해 과년도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공공인프라과-청사건립기금】

- 청사건립기금은 수입계획현액 129,120,264,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8,919,768,143원으로 200,495,857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이자수입이 수입계획현액 5,003,187,000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4,793,475,590원

으로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임.

- 청사건립기금은 공금예금 및 정기예금에 예치해 왔으며, 이자액 증대를 위해 공금예금(금리 2.02%)에 적립되어 있는 이자를 매달 인출하여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재예치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운용수립계획 수립 시점상의 금리 예측과 실제 해당연도 금리와의 차이가 발생하여 수입계획현액 대비 감소한 것으로 정기예금은 변동이율이나 2025년도 정기예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2024~2025년 정기예금 이율 변동 내역>

해당년월	정기예금이율(12개월 이상)	해당년월	정기예금이율(12개월 이상)
'24.01월	4.63%	'25.01월	3.98%
'24.02월	4.47%	'25.02월	3.85%
'24.03월	4.29%	'25.03월	3.71%
'24.04월	4.25%	'25.04월	3.47%
'24.05월	4.22%	'25.05월	3.47%
'24.06월	4.17%	'25.06월	3.33%
'24.07월	4.19%	'25.07월	3.17%
'24.08월	4.15%	'25.08월	3.17%
'24.09월	4.05%	'25.09월	3.14%
'24.10월	3.99%	'25.10월	3.15%
'24.11월	4.03%	'25.11월	3.20%
'24.12월	4.00%	'25.12월	3.44%

안전건설국

【도로과-도로굴착복구기금】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수입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치금 회수를 제외한 2025년 수입금액은 8,597,130천원이며, 이 중 이자수입이 541,926천원, 원인자부담금이 8,055,204천원임.

- “**공공예금 이자수입**”: 수입계획현액 400,000,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541,926,010원으로 35.5% 증가하였는데, 이는 당초 25년 금리인하 기조에 맞춰 정기예금 금리를 약 3.1% 내외 정도로 예상하여 계획하였으나, 25년 상반기에는 3.62~3.76% 및 25년 하반기에는 2.99~3.15% 정도의 정기예금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25년 상반기 예금이자 수입이 계획치를 상회하게 된 것임.
- “**부담금**”: 굴착공사 시행자(유관기관, 법인, 개인 등)가 굴착 후 관리청(서초구 도로과)에서 굴착구간 복구 및 복구도로의 사후관리 명목으로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말함.
 - 수입계획현액 9,760,816,000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8,055,204,470원으로 약 17.5% 감소하였음. 이는 최근 3개년의 수입액과 25년 굴착공사 물량을 추정하여 수입계획 현액을 계획하였으나, 유관기관 등 매년 굴착 신청자의 내부 여건 변화로 인해 당초 수립한 기금운용 수입계획과 실제 사업수요(굴착허가신청 물량) 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최근 3년간 도로굴착복구비용 납부액>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상반기)
징수액(백만원)	8,126	12,114	8,055	3,938
건수(건)	2,643	2,349	2,882	1,773
연장(m)	43,856	69,171	83,330	42,177
면적(m²)	63,767	109,828	109,588	73,390

※ 2024년도 징수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사유는 전기·통신관로 지중화 등 대규모 공사가 집중되어 복구비(평삭포장비 포함) 납부액이 증가하였음.

- 2025년도에는 예상과 달리 대규모 굴착허가 신청 물량이 감소하여 도로굴착복구비용 수입이 감소하였음.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사전 협의를 거쳐 실제 수요를 충실히 반영함으

로써, 계획과 실제수납액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부담금-환급액”: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에게 도로굴착허가를 신청하면, 구청장이 지하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가 완료되면 허가증이 교부되어 도로굴착공사가 시행되는 구조임.
- 한편 부담금 수납총액 중 339,739,890원의 환급액 발생하였는데, 이는 굴착공사의 시행자가 도로굴착을 위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내부 실정 등으로 공사를 취소 또는 축소함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를 환급 처리하게 되어 발생한 금액임.

보건소

【위생과-식품진흥기금】

-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당초 수입계획에는 미수립 되었으나, 관내 외식업 영업주를 대상으로 영업장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융자사업(금리 연 2%,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은 2년 거치 종료 후 분기 말부터 균등분할 상환이 시작되면서 40,140,000원이 수납되었고,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융자실행일이 속한 분기 말부터 원금에 대한 이자가 상환되면서 2,745,419원이 수납되면서 실제수납액이 발생한 것임.

<민간융자금 및 이자 회수 수입 세부내역>

연번	대출액	대출일	'25년 회수액	
			대출원금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대출이자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	50,000	'23.09.21.	8,400,000	587,000
2	30,000	'23.09.21.	30,000,000	28,0007
3	20,000	'23.11.09.	1,740,000	240,000
4	23,000	'24.05.16.	-	276,000
5	50,000	'24.05.23.	-	600,000
6	39,000	'25.04.17.	-	331,000
7	50,000	'25.04.17.	-	424,000
계			40,140,000	2,745,000

- 다만, 저금리 융자사업은 대출요건 및 상환시기가 고지되어 있고, 대출 금액과 대출일자가 명확하므로 언제부터 얼마의 원금과 이자가 상환될 것인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별 지출 결산 검토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지출계획현액은 143,662,168,000천원이거나 실제 지출액은 144,254,848,459원으로 592,680,459천원이 증가하였음.

- 한편 예수금 이자 상환액은 지출계획현액 393,800,000원으로 추계되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74,537,300원인데, 이는 2023년 및 2024년 예수금 약 190억원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GTX-C 노선편입 토지 매각대금으로 예수금 수입 23억원을 상환한 것이 주된 요인임.
- 다만, 일반회계 자금 운용을 위한 예수금 조기상환 요청에 따라 이자를 재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예수금 이자 상환액이 지출계획현액 보다 감소하였음..

공간혁신국

【도시계획과-옥외광고발전기금】

- “기타보상금”: 지출계획현액 90,720,000원 대비 실제 지출액은 42,617,800원으로 계획의 53%인 48,102,200원이 미집행 되었음.
- 기타보상금은 65세 이상 관내 주민이 벽보와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올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 참여형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지급 기준은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 2,000원·축자형 1,000원, 벽보 및 전단지는 장당 20원이며, 1인당 월 최대 100,000원까지 지급함.
- 2025년에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계도로 벽보, 전단지 수량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 참여 인원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실제 지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최근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정비 건수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추세임.

<최근 3년간 보상금 지급내역 및 보상금액>

연도별	구분	정비건수 (건)	참여인원 (명)	예산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2023	합계	6,357,482	964	122,507	63,575	58,932
	구비(기금)			85,260	26,328	58,932
	시비(일반회계)			37,247	37,247	0
2024	합계	4,309,875	995	121,200	86,198	35,002
	구비(기금)			90,720	55,718	35,002
	시비(일반회계)			30,480	30,480	0
2025	합계	3,681,205	853	121,920	73,817	48,103
	구비(기금)			90,720	42,617	48,103
	시비(일반회계)			31,200	31,200	0

<2025년도 월별 보상금 지급 내역 및 지출 세부내역>

해당월	수거건수	보상금액(원)	해당월	수거건수	보상금액(원)
1월	344,800	6,896,000	7월	310,924	6,248,000
2월	310,750	6,215,000	8월	292,917	5,876,000
3월	324,310	6,496,000	9월	266,418	5,348,000
4월	331,151	6,633,800	10월	295,319	5,926,000
5월	324,260	6,495,000	11월	303,918	6,098,000
6월	317,214	6,360,000	12월	259,224	5,226,000
			합계	3,681,205	73,817,800

○ “민간위탁금”: 지출계획현액 235,750,000원 대비 실제 지출액은 185,100,800원으로 50,649,200원이 미집행되었음.

- 이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의 수행을 위해 210,000,000원의 지출액을 편성하였으나,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25,042,000원 발생 및 보용역 설계변경(보험료)으로 11,968,000원이 절감되었고, 총 179,532,00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5.5%임.

- ‘불법 광고물 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해 당초 35톤을 수거·처리할 것으로 예상하여 15,750,000원의 지출액을 편성하였으나, 지속적인 계도 활동으로 2025년도에는 실제 폐기물 물량이 22.7톤으로 감소하여 5,569천원이 지출되면서 10,181,000원이 미지출되어 집행률은 35.4%임.

- ‘불법 고정 광고물 정비용역’을 시행하고자 10,000,000원의 지출액을 편성하였으나, 풍수해 등 긴급상황을 대비한 불법 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을 미실시함에 따라 예산 전액이 미지출되었음. 이는 불법 간판 일제조사 및 정비대상 확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실시하고, 관내 순찰 및 민원 접수를 통해 확인된 위험·노후 간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함에 따른 것임.

안전건설국

【안전도시과-재난관리기금】

- “사무관리비”: 지출계획현액 171,669,000원 대비 실제 지출액이 86,596,000원으로 약 50%가 미지출되었음.

<사무관리비 지출 세부내역>

연번	지출내용	지출금액(원)
합 계		86,596,000
1	• 취약계층(독거노인)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매 - 손선풍기 및 아이스링 1,200개	26,334,000
2	• 취약계층(현업근로자)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매 - 모자 500개, 쿨토시 및 스카프 300개, 포도당분말 800개	13,224,000
3	• 폭염피해 예방 물품 구매 - 무더위쉼터 폭염피해 예방 생수 20,000병	5,238,000
4	• 폭염피해 구호용 생수 구매 - 폭염피해 예방 서리풀원두막 샘물(생수) 110,000병	41,800,000

- 이는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폭염·한파·화재 등 ‘재난 대비 및 대응 구호물품 구입’ 목적에 필요한 예산으로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폭염 대응 특별교부세 21,000천원, 서울시 특별

조정교부금 7,360천원, 한파 대응 특별교부세 10,000천원을 포함한 총 38,360천원이 교부됨에 따라 재난 대비 및 대응 구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선제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지출 요인이 해소되어 예산이 절감됨.

<폭염·한파 대응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

연번	교부내역	교부금액(원)	집행액(원)	집행내역
합 계		38,360,000	36,822,200	
1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폭염)	21,000,000	19,897,700	•취약계층 냉감이불(236개) 구매 8,260,000 •서리풀원두막샘물 홍보물 구매 1,584,000 •서리풀양산대여기(19대) 임차료 2,988,700 •서리풀양산(450개) 제작 구매 7,065,000
2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폭염)	7,360,000	7,360,000	•무더위쉼터 생수(2,800병) 구매 1,064,000 •무더위쉼터 배너 등 홍보물 구매 2,354,000 •무더위쉼터 구급·방역물품 구매 2,846,000 •무더위쉼터 통합표지판 구매 1,096,000
3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한파)	10,000,000	9,564,500	•한파 대비 핫팩(17,390개) 구매 9,564,500

- 이와 별개로, 2025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난취약시설·해빙기·화재예방 등에 대한 점검·자문에 따른 경비 지출을 위해 ‘안전 점검 경비 및 전문가 수당 5,000,000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7월 여름철 폭염 심화 및 주민 민원 제언 등을 반영하여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서리풀원두막 샘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생수 등 구매 비용 66,669,000원을 긴급히 추가 편성 및 집행하게 되었음. 따라서 예산현액이 당초 1억원에서 171,669,000원으로 변경된 것임.

○ “시설비”: 지출계획현액 3,167,002,000원 대비 실제지출액은 2,094,576,140원으로 1,072,425,86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재난 대응 긴급복구 사업비 (704,002,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유사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지출되었고, ② 물관리과 ‘2025년도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사업의 사고이월로 343,808,660원이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편성된 것이 주요 사유임.

<시설비 지출 세부내역>

연번	지출내용	지출금액(원)
합 계		2,094,576,140
1	2025년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	40,531,900
2	2025년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연간단가)	600,000,000
3	2025년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연간단가)	556,031,740
4	2025년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소하천 준설	250,000,000
5	2025년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연간단가)	600,000,000
6	지반침하 우려구간 공동조사 특별점검 용역	48,012,500

- “다음연도 이월액”: 물관리과의 ‘2025년도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지출원인행위액 9억원)’ 관련 여름수해대비 침수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2026년 3월말까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 실시가 요구되는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556,191,340원을 지출 후 남은 343,808,660원을 사고이월한 것임.

【도로과-도로굴착복구기금】

- “사무관리비”: 지출계획현액 10,000,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4,350,000원으로 56.5%가 미지출되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연간 2회(상·하반기) 개최하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2025년도에는 대면심의에서 서면심으로 모두 대체함에 따라 지도 및 책자 제작비용 등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임.
- 서면심으로 대체한 사유는 지반 침하 및 땅꺼짐 사고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어 심의 기간을 단축하여 노후된 상하수관로 등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필요에 따라서 도로관리 수시심의가 추가로 개최될 여지가 있어 예산을 확보하였음.
-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는 지출계획현액 9,889,320,000원 중 9,291,479,490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부대비는 지출계획현액 46,447,000원 중 36,429,310원을 지출함에 따라 시설비 597,840,510원과 시설부대비 10,017,690원이 미지출되어 총 미집행액은 607,858,200원임.
- 이와 같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미지출 사유는 공사 3건 및 용역 2건의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531,191천원과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76,667천원임.

[주요 공사(용역) 낙찰차액 현황**]

- 2025년 이면도로 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 226,867천원
- 2025년 간선도로 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 219,419천원
- 2025년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연간단가) : 32,079천원
- 2025년 굴착복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52,480천원
- 2025년 굴착복구 공사에 대한 건설재해예방 용역 : 346천원

【위생과-식품진흥기금】

- “식품진흥기금사업”은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외식업 영업주에게 역량 개발 교육 및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외식업 경쟁력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세부 사업으로 “서초구 외식업경영 아카데미”는 관내 외식업 영업주의 경영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신 외식업 경영 트렌드와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음식문화개선 체험교육 지원”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서초구지회에서 전국 우수 음식점의 음식문화 성공 사례 및 우수 영업장을 벤치마킹하는 체험교육을 통해 관내 외식업 영업주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외식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한편 해당사업의 사무관리비가 지출계획현액은 22,99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8,723,700원으로 약 37.9%만 지출되었음. 이는 “서초구 외식업경영 아카데미 사업”을 (주)우아한형제들(배민아카데미)과 2025. 6. 12. 서초구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관내 외식업주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상호 개발 및 추진, 교육비 공동분담, SNS 등을 활용한 홍보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공동으로 분담하게 되면서 사무관리비 미지출액이 발생한 것임.

<식품진흥기금사업 지출 세부내역>

(2025. 12.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지출 계획액	지출액	사용내역	비고
서초구 외식업경영 아카데미 (사무관리비)	22,991	8,723 (37.9%)	- 강사수당 : 5,550천원 - 운영비(수료증, 사무용품, 테이블용역 등) : 2,183천원 - 홍보비(현수막, 포스터 등) : 990천원 - 교육자료 : 72천원	(주)우아한형제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비 공동분담 (예산절감)
음식문화개선 체험교육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10,000	10,000 (100%)	- 식비 : 7,100천원 - 대관료 : 400천원 - 버스운임 : 2,200천원 - 강사료 : 300천원	

3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 검토

안전건설국

【안전도시과-재난관리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나,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2025년도에는 총 4번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주요 변경사유는 다음과 같음.
- 방재사업 추진 재료비(사업부서-도로과): '24.11.26.~11.28. 이례적인 폭설이 발생하여 제설제 확보량 26%를 조기에 소진함에 따라 제설제 확보를 위해 추가 구매에 필요한 재료비 177,700,000원을 편성하

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임.

-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편성된 예산으로 염화칼슘 526ton을 구매하여 152,375,810원을 지출함.

○ 기타보상금(사업부서-안전도시과): “폭염 재난 대응 폭염피해 예방 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타보상금 13,331,000원을 편성하여 여름철 폭염 재난에 대비하여 온열질환 예방 목적으로 야외 활동 중인 주민에게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여 야외 활동 중인 폭염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서초구 자율방재단 소집’ 긴급 추진자율방재단 활동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였음.

- 2025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편성된 금액으로 자율방재단 활동수당은 5개소×42일×3시간×2명×10,580원(일반직공무원 9급 시간외수당 단가를 적용)의 산출근거에 따라 계상되었으며, 기타소득 원천징수액 등을 포함하여 총 10,441,240원이 지출되었음.

○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사업부서-정원여가과):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시 재난관리기금과 구 재난관리기금을 3:7로 부담하기 위해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구비분 23,230,000원을 편성하였음.

-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편성된 금액으로 비닐하우스 35건 및 농작물 대파대 25건 등 피해 농가 36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총 32,230천원(구비 23,230 시비 9,000)의 금액 중 농작물 지원에 7,937천원, 비닐하우스 지원에 24,293천원을 집행하였음.

○ 시설비:① 지반침하 우려구간 공동조사 특별점검 용역(사업부서-물관리과):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대형 지하굴착공사장 등 우선 점검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조사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 사고 발

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유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규모 공사장 주변 침하 우려 구간 공동 조사를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시·구비 각 50%로 재원을 부담하고자 구비분으로 시설비 66,000,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2025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편성된 금액으로 48,012,500원을 지출하였음.

② '25년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사업부서-물관리과):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 시행 중 당초 계획물량을 초과한 다수의 공동이 발견되어 설계변경 반영 후 집중 점검 및 긴급복구를 시행하고자 시설비 47,000,000원을 증액하였음.(2025년 제4차 변경)

- 2025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편성되었으며, 40,531,900원을 지출하였음.

③ '25년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사업부서-물관리과): '25.7.16.~7.20. 집중호우 이후 침수 피해 우려와 「서울시 소규모 상가 건물 지원 계획」 시행에 따라 지하주택 및 상가 건물에 대한 물막이판 설치 수요가 증가하여 시·구비 각 50%로 재원을 부담하기 위해 당초 예산 500,000,000원 → 900,000,000원으로 변경하였음.

- 2025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편성된 금액으로 지출원인 행위액 900,000,000원 중 556,031,740원을 지출하고, 343,808,660원을 사고이월함.

③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소하천 준설(사업부서-물관리과): 관내 소하천 4개소(우면천, 형촌천, 원지천, 안골천)에 퇴적된 토사, 퇴적물 등을 긴급 준설하여 침수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구비 각 50%로 재원을 부담하고자 구비분 250,000,000원의 시설비를

증액하여 편성함. 2025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편성되었으며, 전액 지출하였음.

○ 자산취득비(사업부서-물관리과): '24. 11. 26.~11. 28. 이례적인 폭설이 발생하여 이면도로용 제설장비(1.5m² 살포기) 15개를 구매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150,720,000원(10,048천원 ×15대)을 편성하였음.

-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편성되었으며, 당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재된 모래살포기의 조달단가인 대당 10,048천원을 기준으로 15대 구매비 150,72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후 실제 구매 시에는 장비의 유지관리 및 운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기식 장비 등 필요한 규격조건을 제시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와 계약하여 대당 8,900천원으로 총 133,500천원을 집행하여 17,220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보건소

【위생과-식품진흥기금】

○ 식품진흥기금은 서울시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방법 및 외식업경영아카데미 사업 추진 방법변경을 위한 통계목 변경 등으로 2025년도에는 총 3번의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주요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민간위탁금: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에는 민간위탁금을 22,000,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제2차 식품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예산의 통계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금 △22,000,000원을 감액하고, 사

무관리비 20,000,000원을 증액하였음.

- 이는 2024년까지는 본 사업을 외부기관에 민간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외식업 전문기관인 (주)우아한형제들(배민아카데미)과의 현장 중심의 교육 콘텐츠와 외식업 분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최신 외식업 트렌드를 신속하게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직접 추진 함에 따라 예산의 지출을 위해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한 것임.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

1 일반예비비 지출내역

-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집행한 예비비에 대해, 지출 집행 후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법적 절차임.
- 2025회계연도 일반예비비 지출은 총 11건이며, 이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예비비 지출은 8건임.

【기획예산과】

▣ 소송배상금: 2건

<가로행정과-322,991천원>

- 원고 8인 소유의 사유지(방배동 843-9, 591.5㎡)가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원고들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4. 10. 8.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음.
- 서초구가 항소하였으나 2025. 5. 28. 2심 재판부는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도로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이후 소송대리인의 법적 검토 결과 상고심에서 추가 증거 제출이 어렵고, 유사사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총 538,494,857원의 판결금 지급이 결정됨.

- 그러다 당시 기획예산과 소송배상금 예산 잔액 215,504,039원으로
는 판결금 전액의 지급이 불가하고, 지급 지연 시 추가 이자 부담
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안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을 위해 부족 금액 322,990,818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한 것임.

<지방소득세과-4,003천원>

- 원고가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의제배당 신고누락 사유로 과세된 종
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반포세무서장
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 법원이 피고들이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 4,002,676원임을 확
정하였고,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된 2025. 7. 당시 기획예산과 소송
배상금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비로 4,003,000원을 집행하였음.

【재무과】

■ 기탁차입금 이자상환: 104,121천원

- 2025년 주 수입원인 재산세가 8월 이후 유입됨에 따라 5~9월 일
반회계 부족자금 수급을 위하여 구금고에서 87일(2025.7.1.~9.25.)
간 차입한 249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104,121
천원 사용한 것임.

<일시차입현황>

(단위 : 원)

기준원금	시작일	종료일	일수	이율	이자금액	비 고
합 계			87		104,120,381	
10,400,000,000	2025-07-01	2025-07-15	15	3.27%	13,975,890	(7. 1.)104억원 차입
24,900,000,000	2025-07-16	2025-08-07	23	3.27%	51,307,643	(7.16.)145억원 차입
19,500,000,000	2025-08-08	2025-08-20	13	3.27%	22,710,821	(8. 8.) 54억원 상환
5,000,000,000	2025-08-21	2025-09-25	36	3.27%	16,126,027	(8.21.)145억원 상환 (9.26.) 50억원 상환

【교통행정과】

■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모범운전자) 기타보상금: 45,210천원

- 서초·방배경찰서 관할 주요 교차로의 꼬리물기 및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모범운전자를 배치하여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관내 주요 혼잡지점 21개소에 계도활동 운영을 위해 341,320천원을 편성하였음.
- 당초 예산 편성 시 하절기 및 동절기에는 방학·휴가기간 등에 따른 교통량 감소와 고령인 근무자의 인력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운영하도록 편성하였으나, 서초구의 도로교통 여건상 터미널 및 주요 IC 등 상습 교통혼잡 구간이 많고 지속적인 교통관리 필요성이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연말까지 필수지점 7개소**에 한해 모범운전자를 축소 배치하여 계도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었음.
**서초(4개소) : 청계산입구삼거리, 염곡사거리, 강남터미널고가사거리, 트럭터미널앞삼거리
방배(3개소) : 전원마을, 사당역, 남태령지구대 유턴지역
- 이에 부족예산 56,410천원 중 11,200천원은 부서 내 가용예산으로 전용하고, 나머지 45,210천원은 예비비를 사용하였음.

【도시계획과】

■ 서초구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시설비): 지출결정액 400,000,000원, 사고이월 390,000,000원

-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2024.7.1.)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되었고, 대상지의 국한된 개발계획 제시를 넘어 공간혁신구역 제도의 취지 고려, 양재역 일대의 공간재편을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됨.

※ p.108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참고

- 이에 서울시 의견을 반영하여 2026년 이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을 목표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필요한 시설비 4억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임.

【공공인프라과】

■ 상습정체지역 해소 연구용역비: 54,966천원

- 위례과천선 민자 제안안에서 선바위역이 제외됨에 따라 4호선 환승 편의 저하 및 정부과천청사역 단독 환승에 따른 불합리성이 우려됨. 이에 선바위역 경유를 통해 4호선 접근성을 강화하고 기존 과천대로 등 도로 포화 상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히 “위례과천선 내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시행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 협의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이에 연구용역비 54,966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임.

※ p.118 일반예비비 지출 내역 참고

【건강관리과】

■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7,070천원

- 출산율 반등으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하고, 서울시 유사 사업의 폐지로 환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본예산 1,004,325천원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 315,150천원을 통해 1,311명의 출생아 가정에 지원을 완료하였음.
- 그러나 2025. 10. 26.~12. 10.까지의 신청자에 대한 미지급건 189건이 발생함에 따라 부족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여 연내 지급을 마무리하고자 예비비를 207,070천원을 지출한 것임.

【의료지원과】

■ 2025년 설 연휴기간 문여는 병의원·약국 지원: 53,450천원

- 설 연휴기간 경증 환자의 응급실 쏠림 현상을 막고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설 명절 전후 3일간 운영비 지급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비 지원을 위한 구비 확보 협조를 요청함.
- 시·구비 각 50% 매칭사업으로 설 연휴 기간 구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자 연휴 기간 중 운영한 병·의원 및 약국에 시비와 구비를 재원으로 운영비를 지급하였으며, 이 중 구비분 53,450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음.

<사업 추진내역>

- 지원대상 : 설 연휴 중 1.28.(화) ~ 1.30.(목) 운영 병의원 및 약국
- 병·의원 95개, 약국 179개
- 설 연휴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 결과

(단위: 개소)

구 분	계	1/28(화)	1/29(수)	1/30(목)
총계	274	112	58	104
병원	7	2	2	3
의원	88	37	16	35
약국	179	73	40	66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내역

- 2025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25년도 본 예산에 400,000,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음.

4. 종합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바, 지방의회는 심의하고 의결한 세입·세출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행정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었는지, 구민의 삶이 향상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함.
- 아울러 결산의 승인을 통해 전년도 결산 승인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개선권고사항 등이 충실하게 반영·시정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단순한 사후 확인을 과정이 아닌 예산 집행의 오류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예산 집행에 대한 사후 통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예산액 1조 1,471억 2,053만 4천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991억 1,179만 7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2,462억 3,233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8.1%인 930억 9,898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1,830억 5,715만 1천원, 특별회계는 631억 7,518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1조 2,710억 9,894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8.6%인 1,991억 4,128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조 1,103억 3,307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4.8%인 2,207억 7,291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742억 5,737만 9천원으로, 2024년도 보다 5.3%인 37억 3,397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다음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8,019억 7,387만 9천원으로 징수율 95.5%이며,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1조 2,088억 1,018만 5천원의 66.3%를 차지하고, 세출결산액(지출액)은 2,632억 5,800만 2천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결산액 1조 850억 8,450만 2천원의 24.3%를 차지함.
- 일반회계 세입결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구 전체 세외수입 2,186억 2,947만 6천원의 87.9%에 해당하는 1,922억 8,39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3억 864만 4천원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진도율)은 113.6%로 전년도 대비 63.9%p,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징수율)은 23.3%p 상승하였음. 반면에 미수납액(체납액)은 275억 5,664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률은 12.4%로 전년도 대비 △21.7%p 감소하였음.
- 예산 대비 높은 수납 실적을 달성하며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진도율과 징수율이 동반 상승하고, 체납액이 감소한 점은 고무적이라 할 것임. 향후에도 세입 기반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 관리를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임.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지출액)은 2,632억 5,800만 2천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결산액의 24%를 차지하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지출액)은 248억 6,319만 3천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결산액의 98%를 차지함.
- 일반회계 집행잔액(불용액)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총 111억 5,940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이며, 2024년도 불용률 28.4%보다

△24.7%p 감소하였고, 집행률은 86.5%로 전년도 60.2%보다 26.3%p 증가하였음.

- 전년 대비 불용률이 낮아지고 예산 집행률이 상승한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임. 앞으로도 이러한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편,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부서(과)에 편성되어 있는 기본경비는 행정사무의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으로 부서별 인원 수에 비례하여 산출됨. 이 중 주무부서는 해당 국 전체를 대표하여 사무관리비 공통경비, 급식비, 국내여비(출장비) 등을 통합 편성하고 있는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불용률이 10% 미만인 부서가 있는 반면 30%를 웃도는 부서도 확인되는 등 부서별 편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주무부서의 공통 기본경비는 국 전체의 원활한 행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필수 예산이나, 일부 부서의 높은 불용률은 예산 수요 추계의 정확성이 다소 미흡했음을 의미하므로, 향후 소요 예측을 보다 면밀히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618억 1,907만 2천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입결산액 622억 8,876만 2천원의 99.2%를 차지함. 특히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99.8%인데, 이는 특별회계의 세입이 일반회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모에 연동되어 증감하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함.
- 반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율은 71.0%로 전년대비 3.6%p 증가하였

으나, 세외수입은 41.4%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특성상 부과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실제 차량 운행에는 즉각적인 지장이 없으며,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결손처분이 가능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징수율 제고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성실 납부자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변호관 영치 활동과,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집중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지출액)은 248억 6,319만 3천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결산액 252억 4,857만 4천원의 98.5%를 차지하며, 불용률은 건축안전특별회계 27.4%로 전년도 28.9% 대비 △1.5%p 감소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16.4%로서 전년도 24.7% 대비 △8.3%p 감소하였음.
-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예비 지출 총 8건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소송 판결금, 꼬리물기 계도활동,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긴급 용역, 산모신생아 지원 등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사업 위주로 집행된 것으로 보임.
- 향후에는 외부 정책 변동이나 반복 수요에 대해 추경 및 본예산 단계에서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여 예비비 의존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임.
- 2025회계연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반의 예산 집행 현황을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불용률이 감소하고 집행률이 상승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그리고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요에 대한 본예산 편성 정확성 제고 등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의회는 결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집행된 예산을 세밀하게 분석·평가하고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개선권고사항 등의 결산감사 의견을 다음연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야 함. 이를 통해 반복적인 예산 편성 오류와 불용 예산을 방지하고, 집행부의 책임성 있는 재정 운용과 건전한 예산 집행을 유도하는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첨부자료(별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행정복지위원회·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행정복지위원회·재정건설위원회 소관)
3.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참고자료
 - 세외수입 과별, 세목별 결산현황(일반회계)
 - 세부사업별 세출집행잔액 현황(일반회계)
 - 세부사업별 세출집행잔액 현황(특별회계)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 「지방재정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0조
 - 「지방회계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 제1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